

KOREA ECONOMIC RESEARCH INSTITUTE

정책연구 2014-13

2014년도 세법개정안 평가와 시사점

조경엽 · 유진성 · 윤상호 · 황상현 · 허원제 · 김영신



정책연구 14-13

2014. 12.

2014년도 세법개정안 평가와 시사점

조경엽 · 유진성 · 윤상호 · 황상현 · 허원제 · 김영신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미국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주요 연구분야는 재정학, 거시경제, 자원·환경경제학 등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 국회예산정책처에 재직하였으며 현재 한국경제연구원에 재직 중이다.

주요 저서 및 논문으로는 『성공한 복지와 실패한 복지』(공저, 2013), 『2013 정책리스크 쟁점과 평가』(공저, 2013),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평가와 시사점』(공저, 2010) 『일본의 잃어버린 20년과 한국에의 시사점』(공저, 2013),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정책과제』(공저, 2011), 『국가채무관리 어떻게 해야 하나』(공저, 2011), “Allocation and banking in Korea permits trading”(Resources Policy, 2009), “A dynamic general equilibrium analysis on fostering a hydrogen economy in Korea”(Energy Economics, 2009),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을 위한 KERI-CGE 모형 개발 연구』(공저, 2009), 『촛불시위의 사회적 비용』(공저, 2008), “상속세의 경제적 파급효과: 세대중복형 모형을 이용한 분석”(공공경제, 2007), “2003~2005년 세제개편 평가: 동태적 CGE 모형을 이용한 효율성과 형평성 평가를 중심으로”(공공경제, 2006) 등이 있다.

유진성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서강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워싱턴대학교(University of Washington)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며, 주요 연구 분야는 노동경제, 응용미시, 복지 등이다. 주요 저서로는 『반값등록금의 영향과 정치경제학』(2014), 『독일 근로연계 복지제도의 특징과 시사점』(2014), 『주요국의 상속·증여세 최근 동향 및 시사점』(공저, 2013), 『박근혜정부 복지정책의 비용추정 및 경제적 효과 분석』(공저, 2013), 『2013년도 세법개정안 평가』(공저, 2013), 『개인 세부담 평가분석 모형』(공저, 2013), 『복지공약 비용추정 및 시사점』(공저, 2012), 『무상복지의 소득재분배 효과』(공저, 2013), 『성공한 복지와 실패한 복지』(공저, 2013), 『빈곤가구의 빈곤탈출 요인분석과 시사점』(2014, 공저) 등이 있다.

윤상호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George Mason University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이후 Heritage재단의 사회과학펠로우(Social Science Fellow), Chapman University(Argyros School of Business & Economics)의 연구조교수, 한국보험연구원 고령화연구실 연구위원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으로 재직하고 있다. 연구분야는 시제간선택, 공공선택, 종교경제학, 응용미시 등이다.

황상현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미국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고 산업연구원에 재직하였다. 주요 연구분야는 응용이론, 재정학, 환경경제학이며 주요 저서 및 논문으로는 『소득세제의 소득재분배 효과 분석 및 시사점』(공저, 2013), 『개인세부담 평가분석 모형』(공저, 2013), 『계열사 출자에 따른 과세에 대한 논의 및 영향분석 연구』(공저, 2012), 『세수입의 한계비용과 재정건전성에 대한 시사점: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중심으로』(2011), “Economic Growth and Renewable Resource: Specialization of Clean Activities”(자원·환경경제연구, 2012), “재벌세 도입에 대한 논의와 정책 모의실험(simulation)”(공저, 규제연구, 2012) 등이 있다.

허원제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서강대학교에서 경제학 학사 2년 수료 후 미국 피츠버그대학교(University of Pittsburgh)에서 경제학 학사 및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SK경영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을 거쳐 현재 한국경제연구원(KERI) 연구위원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미국 피츠버그 대학교 경제학과 및 행정·외교대학원(GSPIA), 성균관대학교 글로벌경제학과에서 Lecturer를 역임한 바 있다. 주요 연구분야는 비교경제, 경제체제 전환, 응용미시 및 미시계량이다. 최근 연구문헌으로는 『해외 지방재정 위기의 주요 원인과 우리나라 지방재정에 관한 고찰』(2012), 『일본의 “잃어버린 20년”과 한국에의 시사점』(공저, 2012), 『근로연계 복지제도의 구축』(공저, 2013), 『2013년도 세법개정안 평가』(공저, 2013), 『복지지출 증대와 지방재정 악화의 인과관계 연구』(2013), 『주요국의 상속·증여세 최근 동향 및 시사점』(공저, 2013),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한국경제의 과제』(공저, 2013), 『국가부채의 재구성과 국제비교』(공저, 2014), 『지역구 선심성 예산배분의 경제적 비합리성: 특별교부세를 중심으로』(공저, 2014), 『빈곤가구의 빈곤탈출 요인분석과 시사점』(공저, 2014) 등이 있다.

김영신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미국 조지메이슨대학(George Mason University)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국무총리실 정부업무평가위원회 민간 전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연구 분야는 규제, 공공선택, 재정, 응용미시 등이다. 주요 저서 및 연구논문으로는 “국민연금의 주주권 강화에 따른 지대추구행위 가능성에 대한 고찰”(공저/경영컨설팅연구, 2014), “An Analysis On the Interaction of Trade and FDI Between S, Korea and India”(공저/ Seoul Journal of Economics, 2014), “기업 간 수익성 양극화와 정부규제”(공저/제도와경제, 2013), 『지역구 선심성 예산배분의 경제적 비합리성: 특별교부세를 중심으로』(공저, 2014), 『경제자유 관점에서 본 경제성장과 제도개혁』(공저, 2014), 『국가부채의 재구성과 국제비교』(공저, 2014), 『주요국의 상속·증여세 최근 동향 및 시사점』(공저, 2013), “Public Choice and the Modern Welfare State”(공저/The Elgar Companion to Public Choice, Edward Elgar Publishing, 2014), 『공기업 부채 증가의 문제점 및 시사점 - 지속가능성의 관점에서』(2012), “Managing Anti-Circumvention Technology for Digital Content”(공저/Journal of Information Privacy and Security, 2008), 『부유할수록 깨끗하다: 21세기 환경문제의 해법』(공역, 2003) 등이 있다.

2014년도 세법개정안 평가와 시사점

1판1쇄 인쇄 | 2014년 12월 05일

1판1쇄 발행 | 2014년 12월 09일

발행처 | 한국경제연구원

발행인 | 권태신

편집인 | 권태신

등록번호 | 제318-1982-000003호

(150-75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24 전경련회관 45층
전화 02-3771-0001(대표), 02-3771-0060(직통) | 팩스 02-785-0270~3
www.keri.org

© 한국경제연구원, 2014

ISBN 978-89-8031-705-9

10,000원

이 도서의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시도서목록(CIP)은 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템 홈페이지(<http://seoji.nl.go.kr>)와 국가자료공동목록시스템(<http://www.nl.go.kr/kolisnet>)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CIP제어번호: CIP2014036043)

CONTENTS

요 약	9
제1장 서론	37
1. 경제진단과 세법개정안의 주요 내용	37
2. 총평	39
제2장 가계소득 증대세제	47
1.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 도입 목적과 주요내용	47
2.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안	50
제3장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71
1. 개편내용	71
2. 평가	72
3. 정책건의	75
제4장 기업승계 및 창업지원	77
1. 개요	77
2. 평가 및 개선방안	78
3. 기업승계를 위한 중장기 세제개편방향	84
제5장 민생안정	89
1. 개정 배경	89
2. 주요 개정 내용	89
3. 문제점 및 개선 방향	93
4. 민생부문 개정안 총평	97
제6장 공평(公平)과세	99
1. 개정 배경	99
2. 총평	99
3. 세부 개정안 평가 -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를 중심으로	101
4. 개선 방향	107
제7장 세제 합리화	111
1. 배경설명	111
2. 총평	112
3. 각평	114
참고문헌	116

[표 1-1] 실질 경제성장률	37
[표 1-2] 국민총소득 대비 부문별 소득 비중, 한국 및 OECD 평균	38
[표 1-3] 한국과 OECD 국가의 가계소득 요인 비교, 총 GNI 대비 비중	41
[표 1-4] 사내유보금의 투자비중	43
[표 1-5] 비금융업 상장사의 총자산 대비 현금성자산 비율 국제비교	43
[표 2-1] 근로소득 증대세제 신설(조특법 신설)	48
[표 2-2] 배당소득 증대세제 신설(조특법 신설)	49
[표 2-3] 기업소득 환류세제 신설(법인법 신설)	50
[표 2-4] 근로소득 증대세제 적용 예시	53
[표 2-5] 배당성향 국제비교(2013년)	54
[표 2-6] 소득분위별 소비지출과 배당소득 간 상관관계(2013년)	57
[표 2-7] 배당과 양도차익 간 세부담 차이	58
[표 2-8] 재무상태표와 주요 계정항목	59
[표 2-9] 비금융업 상장사의 총자산 대비 현금성자산 비율 국제비교	64
[표 2-10] 비금융업 상장기업의 유보금과 유형별 자산 간 상관관계 분석 결과	66
[표 2-11] 유보금 증가가 유형별 자산 증가에 미치는 영향	67
[표 2-12] 기업소득 환류세제 신설에 따른 산업별 세부담	68
[표 3-1] 개정안 반영 후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를 변화	71
[표 3-2] 대기업: 1,000억 원 투자 시 공제금액 및 고용인원	73
[표 3-3] 고용투자세액공제 기업규모별 구성	75
[표 3-4] 노동수요 탄력성	76
[표 3-5] 고투세 강화에 따른 전년 대비 2012년도 추가공제 및 고용증가	76
[표 4-1] 가업상속공제제도 관련 주요 개정안 내용	78
[표 4-2] 가업 사전증여 및 창업지원 확대 관련 주요 개정안 내용	78
[표 4-3] 가업상속공제 주요 내용 개정 연혁	79
[표 4-4] 중견기업 매출 현황	79
[표 4-5] 중소 제조업체의 기업연령	81
[표 4-6] 한국과 독일의 주요 가업상속세제 차이	82
[표 4-7] 현재 세목별 연부연납 기간 구분	84
[표 4-8] 상속·증여세의 경제적 효과	86
[표 4-9] 국세 세목별 구성비	87
[표 4-10] OECD 회원국 상속세율과 소득세율 비교	88
[표 5-1] 서민층의 재형저축 요건 완화	90
[표 5-2] 상속·증여세 공제액 조정	90
[표 5-3]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 우대공제를	91
[표 5-4] 세액공제대상 퇴직연금 납입한도 확대	92
[표 5-5] 퇴직소득 과세방식 개선	92
[표 5-6] 연금소득세액 산정방식 변경	93
[표 6-1] ①의 경우 국내모회사의 세액공제 한도액	104
[표 6-2] ②의 경우 국내모회사의 세액공제 한도액	105
[표 6-3] 한국·미국·일본의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대상 자회사 범위 비교	107
[표 6-4] 한국·미국·일본의 외국납부세액 이중과세 방지 방법 비교	107

[그림 1-1] 경제성장률 기여도	37
[그림 1-2] 중기 성장률 전망	40
[그림 2-1] 가계소득 증대세제의 목적	47
[그림 2-2] 실질임금, 생산성 추이와 생산성 대비 실질임금의 국제비교	51
[그림 2-3] 임금증가의 물가 상승 및 GDP 상쇄 효과	52
[그림 2-4] 비금융업 상장기업의 배당성향 추이	54
[그림 2-5] 배당소득에 대한 명목 소득세율의 국제비교(2014년)	55
[그림 2-6] 배당소득 분포(2013년)	56
[그림 2-7] 비금융업 상장기업의 자본금, 유보금, 자본 및 이익잉여금, 유보율 추이	61
[그림 2-8] 비금융업 상장기업의 총자산 대비 유형별 자산비율	63
[그림 2-9] 비금융업 상장기업의 유보금과 유형별 자산 간 상관관계	65
[그림 3-1] 설비투자기업의 고용 추이	72
[그림 4-1] 가업상속공제한도 적정수준 조사	82
[그림 4-2] 가업승계 시 주된 어려움 조사	85
[그림 4-3] 가업상속·증여세가 기업경영에 미치는 영향 조사	86
[그림 5-1] 은행권 재형저축 활동계좌 수 변동 추이	94
[그림 5-2] 근로 퇴직소득 간 실효세율 비교	96
[그림 5-3] 자영업자 소득탈루율 추정(2012년)	97



제1장 서론

1. 2014년 세법개정안 배경과 주요 내용

- ▶ 정부는 우리가 직면한 경제·사회적 여건을 개선하여 경기침체를 극복하고 민생 안정을 도모하려는 목적으로 세법개정을 추진
 - 지난 3년간 3%대의 저조한 성장률을 기록하고 2014년에도 세계경제 회복세 둔화, 세월호 사고에 따른 내수부진으로 4% 이하의 성장률을 기록 전망
 - 고령화 추세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소비여력이 감소하는 등 사회활력 위축 우려
- ▶ 정부는 경제 활성화, 민생안정, 공평과세, 세제합리화를 기본방향으로 한 2014년 세법개정안을 추진
 - 가계소득 증대를 위해 근로소득 증대세, 배당소득 증대세, 기업소득 환류세제 등 3대 패키지 도입을 2014년 핵심내용으로 꼽을 수 있음.
 - 세제지원을 통해 서민 재산형성 지원, 노후소득보장 강화 등 민생안정 도모
 - 공평과세 실현 및 세제합리화 방안으로 비과세감면제도 정비, 세원투명성 제고, 납세자 권익보호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2. 총평

1) 정부의 경제진단에 대한 평가

- ▶ 저성장 기조가 우려되는 상황이나 조세·재정 및 금융정책을 총동원할 정도로 심각 수준인지에 대한 논란의 여지 존재

- 국회예산정책처(2013)은 2014년의 실질성장률이 3.5%로 잠재성장률 3.6%보다 낮지만 2016년부터 경기가 회복되어 잠재성장률보다 높아질 것으로 전망
- 유효수요확대를 통해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단기성 정책은 재정건전성을 크게 악화시킬 우려가 있어 재고되어야 함.
- 잠재성장률이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정책의 초점을 잠재성장률 제고에 맞춰야 함.

▶ 가계소득 감소는 자영업자 소득감소와 가계부채 증가가 주 원인

- 가계소득이 OECD 평균에 비해 크게 감소한 것은 사실이나 정부는 그 원인을 기업소득의 환류성 저하로 인식하는 진단의 오류를 범하고 있음.
 - 국민총소득에서 차지하는 가계소득의 비중: 1995년 대비 2012년에 한국 8.3%p 하락, OECD 4.2%p 감소
 - 자영업자의 소득: 한국 6.0%p 감소, OECD 1.3%p 감소
 - 가계의 순이자소득: 한국 3%p 감소, OECD 1.9%p 감소
- 자영업자의 소득증대와 자산시장의 활성화를 통해 가계부채의 건전화 도모가 가계소득 증대의 핵심이 되어야 하나 기업소득환류세 도입을 통해 이를 달성하려는 정책적 오류 범하고 있음.

2) 세제개편안 평가

(1) 빈약한 이론적 배경

▶ 소득증대세제의 이론적 배경이 된 ‘임금주도성장론’은 아직 검증되지 않은 이론으로 정책실패의 위험을 내포

- 생산성을 초과하는 임금 인상은 생산비용 상승을 초래하여 경제의 악순환 유발
 - 생산비용 상승 → 최종판매 가격 상승 → 수출과 소비가 감소 초래
 - 생산 감소 → 자본·노동 수요 감소 → 가계소득 및 투자 감소 → 내수둔화

▶ ‘저축의 역설’에 기반 한 기업소득환류세제는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

- 저축을 줄이고 소비를 늘리는 정책은 현재의 급한 불을 끄기 위해 미래의 성장을 포기하는 근시안적 정책
 - 가계저축은 투자로 이어져 자본축적과 미래소비의 원천

- 기업저축은 투자 시점의 선택 폭을 넓혀 생산증가와 일자리 창출의 원천

(2) 사내유보금의 역할에 대한 오해

▶ 유보율 증가는 기업성과의 우수성을 나타내는 지표지 과세대상이 아님.

- 순이익을 초과하여 배당을 하지 않는 한, 수익성이 있는 기업의 사내유보금과 유보율은 매년 증가하게 됨.
- 유보율이 높은 기업일수록 수익성과 현금창출능력이 높아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음.
 - 유보금 단위당 투자 증가율은 17%에 달함[황인태 · 강선민(2011)].
 - 우리나라는 사내유보금의 84.4%가 기 투자 상태[황인학(2014)]

(3) 현금성 자산을 비생산적인 행위로 보는 오류

▶ 현금성 자산보유는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하고 적정 투자시기를 찾기 위한 기업의 최적화 행위의 일화

- 현금성 자산이 미래의 투자로 이어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금성 자산보유가 비생산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며 정책적 오류의 원인
- 현금성 자산보유 경향은 세계적, 국제적인 추세이며 우리나라의 현금성 보유비중은 9.3%로 경쟁국에 비해 크게 낮은 상황

(4) 내수확대를 위한 부적절한 정책

▶ 기업소득환류세제 도입은 내수확대를 통한 성장전략의 한계에 대한 인식부족과 수출의 성장기여도에 대한 과소평가의 결과

- 우리나라는 빠른 고령화와 5,000만에 지나지 않는 인구규모로 내수확대를 통해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기에는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음.
 - FTA를 통해 내수시장 자체를 확장하려는 노력과 경제특구 활성화 및 서비스시장 개방을 통해 외국인 투자와 관광객을 유치하려는 정책이 요구
 - 단순히 기업의 소득을 가계로 인위적으로 이전하는 것은 “풍선효과”에 지나지 않으며 내수확대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음.
- 수출은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에 일등공신이었으며, 내수의 구조적 한계로 수출을 통한 성장전략은 여전히 최선의 성장정책임.

3) 정책건의

▶ 기업소득환류세제 도입 신중히 고려해야

- 사내유보금 증가는 기업성으로 평가 받아야지 징벌 대상으로 취급하는 것은 부당함.
- 기업의 현금성 제로 세 부담 증가가 불가피해서 생산 감소자산은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하고 투자의 적기를 찾기 위한 기업의 최적화 행위로 정부가 간여하고 규제할 대상이 아님.
- 기업소득 환류세와 가계소득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 초래
- 악순환 유발: 생산비용 증가 - 물가상승 - 소비둔화 - 생산 감소 - 근로·소득 감소
- 가계소득 감소

▶ 자본원천간 수평적 형평성 제고를 위한 세제개편 필요

-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문제와 높은 세 부담으로 배당이 저조했던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배당소득에 대한 세율인하는 바람직한 방향인 것으로 평가됨.
- 사내유보금 중 비사업용 토지보유와 같은 비생산적인 부분을 해소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함.
 - 높은 양도소득세로 인해 비사업용토지의 동결효과가 발생하고 있음.
 - 기업소득 환류세 대신 가계소득으로의 환류를 조건으로 한 양도소득세 인하
- 배당소득과 사내유보 간의 형평성 제고와 법인세 부담 완화

▶ 내수확대를 위한 보다 근본적인 정책으로 방향전환 요구

- FTA 확대를 통한 내수시장 확대
- 경제특구 활성화 및 서비스시장 개방을 통해 외국인 투자와 관광객 유치
- 규제철폐를 통해 투자환경을 개선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가계소득 증대의 최선의 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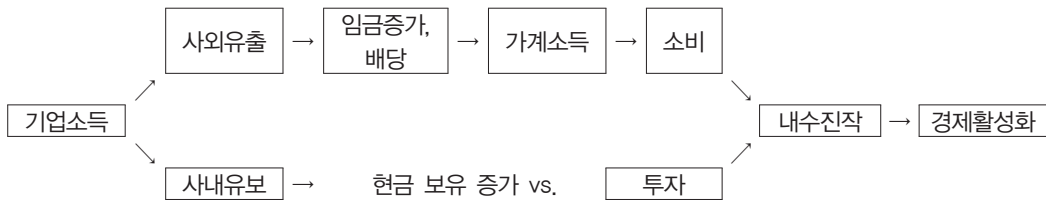
제2장 가계소득 증대세제

1. 가계소득 증대세제 도입과 내용

▶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로써 근로소득 증대세제, 배당소득 증대세제, 기업소득 환류세제 신설

- 가계소득 증대세제의 도입 목적은 투자를 확대하는 동시에 임금과 배당을 통해 가계 소득으로 환류시켜 내수를 진작시키고 경기를 활성화 하는데 있음.

[그림 1] 가계소득 증대세제의 목적



▶ 근로소득 증대세제

- 임원, 고액연봉자를 제외한 근로자의 직전 3년 평균 임금증가율을 초과하는 임금증가액에 대해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10%, 대기업의 경우 5% 세액공제율로 기업규모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

▶ 배당소득 증대세제

- 고배당 주식을 소유한 개인에 대해 원천징수세율을 인하하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일 경우 선택적 분리과세를 허용
- 고배당에 해당하는 상장주식을 보유한 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 대상일 경우 원천징수 세율 14 → 9%로 인하하고 종합과세 대상일 경우 25% 선택적 분리과세 허용

▶ 기업소득 환류세제

- 투자, 임금증가, 배당 등이 당기 소득의 일정액에 미달한 기업에 대해 추가 과세
- 중소기업을 제외한 자기자본 500억 원 초과 법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의 당기소득의 일정액에 투자·임금증가·배당액 등이 미달한 금액(기준 미달액)에 대해 세율 10%로 추가과세

2. 근로소득 증대세제 평가와 개선방안

- ▶ 1990~2012년 기간 우리나라의 실질임금은 생산성 증가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으며 2012년 현재 OECD 국가들과 비교하면 생산성 대비 실질임금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임.
 - 2012년 기준, 우리나라의 생산성 대비 실질임금은 OECD 29개국의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며 OECD 29개국 중 13번째로 높은 수준임.
- ▶ 근로소득 증대세제가 도입된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와 같이 노동조합의 강력한 압력 등에 의한 임금의 하방경직성(downward inflexibility) 때문에 기업의 임금증가 유인이 부족
- ▶ 근로소득 증대세제로 임금증가가 가계소득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는 단선적인 인식에 오류가 있으며, 임금증가 시 물가 상승에 의한 가계의 실질소득 하락과 함께 내수 진작 효과는 작을 가능성이 존재함.
 - (총수요 측면) 임금증가 → 가계소득 증가 → 소비 증가 → 총수요 증가 → 물가 상승 & GDP 증가
 - (총공급 측면) 임금증가 → 생산비용 증가 → 생산 감소 → 총공급 감소 → 물가 상승 & GDP 감소
- ▶ 근로소득 증대세제는 우량 기업에 혜택을 주지 않으면서 불량 기업에 혜택이 돌아가는 역선택 문제와 세제상 형평성 문제가 있음.
 - 근로소득 증대세제의 혜택이 매년 꾸준히 임금 인상을 한 기업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반면 매년 임금 인상을 미루어 오다가 한 해에 높은 기업에게는 적용되는 경우가 발생
- ▶ (개선방안) 근로소득 증대세제 신설 재고
 - 우리나라의 생산성 대비 실질임금은 낮은 수준에 있지 않고 기업의 임금증가 유인이 부족하며 근로소득 증대세제로 임금증가 시 가계의 실질소득 하락과 함께 내수 진작 효과는 적을 가능성이 존재하고 역선택과 세제상 형평성 문제가 있어 근로소득 증대세제 신설은 바람직하지 않음.

3. 배당소득 증대세제 평가와 개선방안

- ▶ 우리나라 기업의 배당성향은 기업규모와 상관없이 낮아져 왔으며 전세계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면 크게 낮은 수준임.
- ▶ 우리나라의 배당소득세율은 OECD 국가들과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임.
 - 2014년 기준, 우리나라의 배당소득세율은 35.4%로 OECD 34개국의 평균 23.8%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이며 OECD 34개국 중 4번째로 높은 수준임.
- ▶ 배당소득 증대세제가 신설된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경우 수익성이 높은 주요한 기업들은 지배주주가 경영자이기 때문에 기업의 배당 유인이 적음.
 - 경영자는 주주에게 배당함으로써 자신의 경영성과를 인정받는데 전문경영인 체제에서는 배당 유인이 많은 반면 지배주주가 경영자로 활동하는 체제에서는 배당 유인이 적음.
 - 김우철(2014)은 배당소득 증대세제로 배당이 크게 확대되는 경우에 한해 재정건전성의 부담은 줄고 부자감세라는 비판은 피하면서 가계소득 증대를 가져올 것으로 평가
 - 김우철(2014)은 배당이 확대되지 않거나 배당의 확대 폭이 미미하다면 세수는 크게 줄어드는 한편 부자감세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
 - 배당소득 증대세제에 따른 세수는 배당이 확대되지 않을 경우 1,857억 원, 배당이 10% 확대되는 경우 1,310억 원, 20% 확대되는 경우 760억 원, 30% 확대되는 경우 215억 원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 배당소득은 평균소비성향이 낮은 고소득계층에 주로 많이 분포되어 있어 배당소득 증대세제로 인해 배당소득이 증가되어도 소비 증가로 이어지지 않아 내수 진작은 기대만큼 크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함.
 - 2013년 기준, 평균 배당소득은 소득 10분위 계층이 126,724원, 소득 9분위 계층이 43,934원으로 높은 수준이나 소득 1~8분위 계층은 20,000원 이하로 상당히 낮은 수준임.
 - 소득분위별 소비지출과 배당소득 간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소득 1분위와 4분위 계층만 유의하게 (+)의 상관관계가 나타남.
- ▶ 우리나라의 배당소득세 부담이 높아 자본소득 원천 간 배분에 있어 왜곡을 초래
 - 동일한 소득일 경우 배당으로 받은 소득에 대한 세부담에 비해 양도차익으로 받은

소득에 대한 세부담이 더욱 작음.

- 이로 인해 주주가 양도차익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더욱 선호하게 되며 주식을 거래하기 보다는 계속 보유하려는 동결효과가 발생

- ▶ (개선방안) 기업의 배당 유인이 적고 가계의 배당소득 증가로 소비 증가가 쉽지 않아 내수 진작이 기대만큼 크지 않을 수 있지만, 그 동안 우리나라의 배당소득 세 부담이 높아 자본소득 원천 간 배분에 왜곡을 초래하고 있어 도입은 타당한 것으로 평가됨.

4. 기업소득 환류세제 평가와 개선방안

- ▶ 기업소득 환류세제의 도입 배경은 기업이 벌어들인 소득을 임금증가, 배당 등 사외유출하지 않고 사내유보하여 현금 보유만 증가시켰다는 것인데 이는 기업의 사내유보와 현금 보유에 대해 그릇된 이해에서 비롯됨.

- 우리나라 기업, 특히 대기업의 사내유보가 과거에 비해 현재 높은 것은 수익성이 높아진 것에 기인되며 재무구조의 안정성과 투자의 잠재성이 높아진 것으로 이는 긍정적인 것임.

- 과거에 비해 현재 현금성자산 비율이 높은 자산구성은 경제적 불확실성에 따른 예비적 동기에 의해 장기간에 걸쳐 형성됐으며 외환위기를 계기로 더욱 강화되었던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자산구성에서 현금성자산 비율이 높아진 것은 우리나라의 경우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적인 현상임.

- 더욱이 우리나라의 현금성자산 비율은 국제적으로도 낮음.

- ▶ 기업소득 환류세제 도입 배경과는 반대로 현재까지 유보금 증가는 생산에 필요한 유·무형자산 증가에 사용되어져 왔음.

- 기업수준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우리나라의 비금융업 상장기업, 특히 대기업의 유보금과 현금성자산, 유형자산(토지제외), 무형자산은 (+)의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났다.

- 또한 황인태·강선민(2011.12)의 회귀분석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비금융업 상장기업의 유보금 증가는 현금성자산 증가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지 못했던 반면 유형

자산 및 무형자산 증가에는 유의하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남.

- ▶ 기업소득 환류세제가 도입된다고 하더라도 기업의 추가적 투자 유인이 없기 때문에 법인세 부담만 가중되어 오히려 기업의 투자의욕만 저해하여 내수 부진으로 이어질 수 있음.

- 한편 임금의 하방경직성으로 임금증가 유인도 부족하며 우리나라의 경우 주요 기업들의 지배주주가 경영자이므로 기업의 배당 유인도 적음.

- 김우철(2014. 09)은 기업소득 환류세제 신설로 인해 전체기업들의 평균세액은 3억 2천만 원, 당기순이익 대비 실효세율은 0.54%로 추정

- 이 중 과세기업들의 평균세액은 10억 9천만 원, 실효세율은 1.65%로 더욱 크게 추정

- Djankov et al.(2008)은 법인세 실효세율이 10%p 인하할 경우 GDP 대비 투자 비율(I/Y)은 약 2.2%p 증가하고, GDP 실질 성장률이 약 1%p 증가한다는 결과를 제시

- ▶ 기업소득 환류세제는 과세방식상 이중과세, 업종에 상관없는 기준율, 해외투자 공제 제한 등의 문제점이 있음.

- 기업소득 환류세제의 과세대상이 당기소득으로 이는 법인세액을 차감한 금액이므로 이중과세가 발생

- 투자 + 임금증가 + 배당액 등의 기준액(= 당기소득 × 기준율) 산정 시 적용되는 기준율이 기업별, 업종별로 획일화 되어 있는데, 적정유보 규모는 기업, 업종마다 다르기 때문에 개별 기업이 정할 문제임.

- 글로벌 경쟁 심화로 인해 기업의 해외진출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해외투자는 확대되고 있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공제되는 투자를 국내투자에 한정

- ▶ 기업소득 환류세제와 유사한 우리나라의 과거, 미국과 일본의 현행 제도 등은 부당한 유보로 발생하는 주주 간 불평등의 해소에 목적이 있는 것과 비교하면, 기업소득 환류세제의 목적이 이와 관계없이 투자, 임금증가배당에 있는 것은 부적절함.

- 우리나라에서 1991년 도입된 적정유보초과소득세는 배당소득세 회피를 막아 과세 형평을 위한 것으로 그 실효성이 없어 2001년에 폐지되었음.

- 미국의 Accumulated Earnings Tax(AET)는 주주의 배당소득세 회피를 위한 사내유보에 대한 징벌적 조세임.

- 일본의 동족회사에 대한 초과유보금과세제도는 비동족회사와 동족회사의 배당소득 간 과세 형평이 목적인.

- ▶ (개선방안) 기업소득 환류세제는 기업의 투자나 임금증가·배당 유인 없이 법인세 부담만 가중시켜 오히려 기업의 투자를 위축하여 내수 부진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으며 과세방식상 문제와 그 목적의 적절성이 부족하여 도입을 신중히 고려해야 함.

제3장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도

1. 개편내용

- ▶ 기본공제율 인하, 추가공제율 인상

- 기본공제율은 기업규모와 투자지역에 따라 적용되는 현행 1~4%에서 0~3%로 1%p 인하
- 추가공제율은 현행 3%에서 업종과 투자지역에 따라 1~3%p 인상하여 고용연계 투자, 지방투자 및 서비스업의 투자지원을 강화

2. 평가

- ▶ 고투세의 실효성 미약

- 고투세 도입 이후 설비투자 기업의 고용 수가 감소
 - 고투세가 도입된 2011년과 2012년에 설비투자자 중업원 수가 동시에 감소

- ▶ 저임금·단순 근로자를 양산하고 장기고용의 유인이 낮음.

- 고임금 숙련 노동자 고용 불가능
 - 대기기업이 1,000억 원을 투자할 경우, 수도권 제조업은 267명, 비수도권 제조업은 334명을 고용하면 추가공제 한도인 40억 원과 50억 원을 받음
 - 연봉으로 환산하면 1,500만 원/인에 달해 고임금 숙련 노동자 고용 불가능
 - 2년차부터는 직접적인 노동비용으로 작용하여 고용을 유지할 유인이 약함.

▶ 고투세 강화는 고용창출 없이 투자만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

- 고투세의 지원대상은 고용창출여력이 있는 기업에 국한
- 기본공제율이 낮아질수록 신규투자 기업 수와 규모는 감소할 전망
 - 고투세 수혜대상 기업은 2012년 8,592개로 전년 대비 410개(4.6%) 감소
 - 공제금액은 2조 7,442억 원에서 2조 713억 원으로 6,729억 원(24.5%) 감소
- 추가공제율 인상으로 인한 고용창출 효과는 거의 없는 것으로 평가
 - 추가공제 기업 수는 2011년에 4,786개로 전년 대비 3,499개 감소에도 불구하고 추가공제율 인상으로 공제금액은 61억 원 증가
 - 추가고용 일인당 공제금액: 1,200만 원 가정, 추가 고용인원: 509명

▶ 고용창출 여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중소기업의 고용은 크게 감소

- 고용창출 여력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기업, 고투세 강화로 투자비용이 크게 상승하여 고용뿐만 아니라 투자도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
 - 중소기업의 수혜대상 기업 수는 2012년에 전년 대비 7,478개 감소하였고 공제금액은 1,022억 원(28.7%) 감소
- 중소기업의 추가공제 금액은 2012년에 전년 대비 395억 원 감소하여 고용은 5,233명 감소한 것으로 추정

▶ 대기업에게도 투자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추가고용 효과도 미약

- 대기업의 경우 추가공제가 증가하였지만 총공제 금액은 2011년에 2조 3,878억 원으로 전년 대비 5,707억 원 감소하여 투자비용이 상승한 것으로 평가
- 추가공제를 받은 대기업 수는 348개 증가하고, 추가공제 금액은 688억 원 증가
 - 추가 고용인원 5,733명, 기업당 추가 고용인원 평균 13명

3. 정책건의

▶ 고투세를 舊임투세로 전환

- 舊임투세로 전환 시 고용효과 오히려 클 전망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노동의 수요탄력성은 1/2수준으로 감소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산출탄력성이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됨.

- 조경업·오탁연(2012): 임금탄력성 -0.08%, 대체탄력성 0.19%, 산출탄력성 0.56%로 추정
 - 고투세가 임금보조형식으로 공제되기 때문에 고투세의 고용증가 효과 미약
 - 추가공제 강화로 2012년의 고용변화는 대기업에서 5,733명 증가, 중소기업에서 5,223명 감소하여, 총고용인원 증가는 509명에 그치고 있음.
- 舊임투세로 전환 시 생산증가에 따른 산출효과로 고용은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할 전망

제4장 가업승계 및 창업지원

- ▶ 2014년 세법개정안에서는 가업승계기업의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가업승계기업의 부담을 완화한 것으로 평가되지만 향후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
-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은 중소기업, 매출액 3천억 원 미만의 중견기업에서 중소기업과 매출액 5천억 원 미만의 중견기업으로 확대
 - 가업상속공제의 적용대상을 확대하였지만 매출액 5천억 원 이하라는 제한은 아직 남아 있으며 이러한 규제는 성장유인을 감소시키는 등 부작용을 가져올 가능성
 - 가업상속공제가 가업상속기업의 성장, 국민경제, 일자리 유지·창출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 등을 고려하여 공제대상의 기업규모에 대한 규제를 폐지할 필요

[표 1] 중견기업 매출 현황

단위:개 (%)	1천억 원 미만	1천억 원~ 2천억 원	2천억 원~ 3천억 원	3천억 원~ 5천억 원	5천억 원~ 1조 원	1조 원 이상	합계
전산업	1,093 (43.6%)	520 (20.8%)	367 (14.6%)	276 (11.0%)	172 (6.9%)	77 (3.1%)	2,505 (100.0%)
제조업	277 (11.0%)	298 (11.9%)	231 (9.2%)	172 (6.9%)	109 (4.4%)	53 (2.1%)	1,140 (45.5%)
비제조업	816 (32.6%)	222 (8.9%)	136 (5.4%)	104 (4.1%)	63 (2.5%)	24 (1.0%)	1,365 (54.5%)

자료: 중소기업청 - 2013년 중견기업 현황(2013. 12)

- 가업상속공제 피상속인의 경영요건도 현재의 '10년 이상 계속 경영하고 일정기간 대표이사로 재직한 경우' 에서 '5년 이상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경영한 경우' 로 완화
- 이번 개정안으로 피상속인의 완화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추가적으로 최대 약 276개의 중견기업(일반중견기업, 관계기업 제외)이 가업상속 시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됨.

- 과거 가업영위 기간보다는 미래의 성장가능성이 더 중요한 만큼, 가업영위기간에 대한 제한 등 피상속인 요건은 보다 완화하고 대신 사업 및 고용의 사후 관리요건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음.
- 가업상속공제의 상속인 요건이 현재의 상속인 1인 전부 상속에서 공동상속을 허용한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
- 사후관리 요건도 관리기간이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되고 업종유지의무, 기업용 자산 유지의무, 고용유지의무 등이 완화된 면은 긍정적으로 평가되나 사후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관리 요건을 변경하거나 더욱 완화할 필요
- 최근의 경제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고용유지 조건도 고용인원에만 집착하지 않고 다양화할 필요가 있음(예: 독일의 경우처럼 매출액 대비 인건비의 평균 비율을 사용 등).
- 업종유지 의무와 관련이 있는 업종변경은 세분류에서 소분류로 완화되었지만, 최근의 급변하는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과 신산업 진출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독일과 같이 업종제한을 폐지하는 방법도 검토할 필요

[표 2] 한국과 독일의 주요 가업상속세제 차이

	한국(2014 세법개정안 반영)	독일
기업규모 제한	중소기업 및 일부중견기업(매출액 5,000억 원 이하)	없음(20인 이상 고용 하한 규정은 있음)
피상속인 및 상속인 요건	피상속인의 경영참여와 대표이사 재직요건 있음(5년 이상 대표이사로 경영)	가업대상기업의 지분만 승계하여 유지하는 것만 요건
사후관리 (고용요건)	- 사후관리기간 7년 - 중소기업, 중견기업 모두 7년간 근로자 평균인원의 전체 평균이 100% 이상 유지	- 5년 혹은 7년을 선택 가능 - 5년일 경우 5년간 급여총액이 승계연도 급여총액의 400% 이상이어야 하며, 7년일 경우 7년간 급여총액이 승계연도 급여총액의 700% 이상
공제금액 상한	피상속인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공제한도 차등 적용(200~500억 원)	없음

자료: 2014년 세법개정안(기획재정부), 정승영(2013)

▶ 2014년 세법개정안에서 가업상속공제제도의 공제수준에 대한 개정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추후에는 현재의 공제수준을 합리적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음.

- 현재는 공제율을 100%로 하되 한도를 두어 가업기간별로 최대 500억 원까지만 공제가 가능하도록 규정(가업기간에 따라 10년 이상: 200억 원, 15년 이상: 300억 원, 20년 이

상: 500억 원 등)

- 독일 등 주요국은 공제대상 및 공제율에 대한 규정은 있지만 상속공제액에 대한 제한이나 규제는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상속공제 한도를 폐지하거나 추가 확대하는 방향으로 세법을 개정할 필요

▶ 2014년 세법개정안에서는 가업승계를 위해 증여세 과세특례를 확대하고, 연부연납을 허용하는 개편방안도 함께 제시하였으나 특례적용 한도와 적용대상에 대해서는 개선의 여지가 있음.

- 가업승계를 위한 주식의 사전증여 적용한도를 현행 3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확대하고, 30억 원 이하에 대해서는 현행 10%의 특례세율을 적용하되, 30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0%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개정

- 독일, 영국 등은 상속 전 가업승계주식에 대해서 가업상속과 동일하게 세제지원을 제공하고 있음을 참고할 필요

- 가업승계 증여세의 특례적용한도를 현 가업상속공제 한도액과 동일한 500억 원 수준으로 확대하고 추후 가업상속공제 한도액이 상향조정되거나 폐지될 경우에도 이와 동일한 한도를 적용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

- 2014년 세법개정안에서는 가업승계 및 창업자금의 사전증여 과세특례 적용 시 일시에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 부담감을 완화하기 위하여 5년간 연부연납을 허용

- 향후에는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기업에 대해서도 가업상속재산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에 적용되는 연부연납특례를 적용하여 가업상속 시 납세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¹⁾

▶ 중장기적으로는 기업활동의 영속성 보장, 국부유출 방지, 지속적인 경제성장 등을 위해 상속·증여세의 부담 자체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개선할 필요

- 상속세를 유지시키면서 다시 상속세를 완화하는 효과를 가진 가업상속(승계)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형태의 복잡한 조세제도를 고수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

- 상속세는 과세협력비용을 발생시키고 저축과 투자활동을 위축시키며 자산의 청산을 유도하여 자산 활용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문제점은 여러 연구에서 제기
- 근본적으로 상속·증여세를 폐지하거나 축소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율적

1) 현재 일반 상속세의 연부연납은 5년으로 되어 있으나 가업상속재산의 경우 가업상속재산이 전체 상속재산의 50% 이상인 경우 3년 거치 12년 연부연납이며, 50% 미만인 경우에는 2년 거치 5년 연부연납으로 특례가 적용됨.

- 상속·증여세의 폐지 및 축소로 인하여 단기적으로는 세수입의 감소를 예상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가업승계 및 기업의 성장을 촉진시킴으로서 국민경제와 고용이 증가하여 오히려 세수입의 증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임.
- 요컨대 중장기적으로는 상속세를 폐지하고 이를 자본이득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 상속세의 폐지 및 축소는 최근 국제경쟁이 심화되면서 세계적인 트렌드로 자리매김(캐나다는 1972년, 호주는 1977년, 뉴질랜드는 1992년,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등은 2004년에, 스웨덴은 2005년에 상속세를 폐지)
 - 상속·증여세를 당장 폐지하는 것이 어렵다면 OECD 평균(26%) 보다 훨씬 높은 상속세율(50%)의 인하를 먼저 추진하고, 이후 점진적으로 상속세를 축소·폐지해 나가는 방법을 고려할 필요

[표 3] 상속·증여세의 경제적 효과

연구자	주요결과
Saxton(2006)	미국에서 상속세로 인하여 2001년까지 감소한 자본소득은 약 8,470억 달러에 이르며 상속세는 높은 납세협력비용, 경제적 비효율성으로 인하여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조경엽(2007)	상속세가 현행 대비 40% 인하될 경우 상속계층과 무상속계층의 후생은 각각 연평균 약 1,378억 원~1,847억 원, 307억 원~4,837억 원 증가하여 총 사회적 후생은 1,685억 원~6,683억 원 증가
Entin(2009)	당시 미국의 상속증여세율 45%를 2001년 이전 수준인 55%로 인상할 경우 GDP는 1,830억 달러 감소하고 근로소득도 1,220억 달러 줄어들 것으로 분석
Laffer & Winegarden (2012)	미국 테네시 주를 분석한 결과 테네시 주의 상속·증여세가 10년 전에 폐지되었다면 테네시 주 경제는 2010년에 14% 이상 더 성장하였을 것이며 20만~22만 개의 일자리가 더 생겨났을 것으로 분석
Tsoutsoura(2012)	그리스에서 상속세가 기업상속 및 투자결정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결과 높은 상속세로 인하여 기업상속시기에 투자가 40% 급감한 것으로 나타남, 뿐만 아니라 높은 상속세는 가업승계성향을 낮추고, 가업승계가 진행 중인 기업에서도 총자산성장을 둔화시키며 내부 재정상황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분석됨.

제5장 민생안정

1. 주요 개정 내용

1) 서민중산층 생활안정 지원을 재산형성 및 세 부담 경감

- ▶ 서민층의 재형저축 요건을 완화(조특법§91의14)하여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함.
- ▶ 물가수준 등을 감안하여 중산층의 상속·증여세 공제를 현실화함.
 - 다자녀·연로자, 장애인 가구의 특성이 반영되고 부모 봉양에 대한 인적공제가 일괄 공제(5억 원)보다 높게끔 개정됨.
 - 주택·금융재산 상속공제 공제율과 공제금액을 상향 조정
- ▶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 우대공제율의 적용기한을 연장함.
 - 신용카드 등 매출 세액공제우대공제율 적용기한을 2년 연장하고 세액공제율을 확대 (2016년 말까지)

2) 노후소득보장 강화 등

- ▶ 사적연금 가입을 높여 근로자의 노후소득을 확보 강화하기 위해 세액공제 대상 퇴직연금 납입한도를 300만 원 추가 확대함.
- ▶ 정률공제(40%)를 폐지하고 퇴직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과세목적으로 퇴직소득 과세방식 개선

2. 문제점 및 개선 방향

1) 서민·중산층의 재산형성의 현실적 어려움

- ▶ 재형저축 대상자의 기준소득을 현실화해서 실효성 제고시킬 필요성
 - 실제 장기 납입이 가능한 중장년층의 경우 총소득(급여)이 5천만 원이 넘어 가입자격을 얻지 못함.
 - 반면, 가입자격이 있는 젊은 층은 단기 금융상품을 선호하기 때문에 실제 재형저축

활동계좌 수는 감소 추세

- 재형저축은 다른 금융상품과 비교해 볼 때 경쟁력이 높지 않으므로 가입대상기준을 완화할 필요 있음.
 - 소득수준이 낮은 서민들일수록 고금리 상품을 선호하는 경향
 - 소득공제 장기펀드나 정기적금 특판 상품이 재형저축보다 매력적일 수 있음.
 - 신입직원은 전년도 소득 기록이 없으므로 가입할 수 없음.

2) 상속·증여세의 실질적 개선 필요

- ▶ 상속세를 통한 부의 집중 억제기능이 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세수확보에도 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고, 더군다나 소득세와의 이중과세의 문제가 있음.
 - 2013년(잠정) 기준, 전체세수(33.6조 원)에서 상속증여세(0.0995조 원)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0.3%에 불과
 - 완전포괄주의 포함한 상속세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재산권과 상충될 수 있음.
- ▶ 많은 선진국에서는 상속·증여세를 폐지 또는 축소하여 자본이득세로 전환을 도모하고 있음.
 -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영국, 미국 스웨덴 등의 국가들에서는 상속증여세를 폐지하거나 대폭 축소하는 수순을 밟고 있음.
- ▶ 우리나라에서도 피상속인의 유산보유기간 중에 발생한 자본이득에 대한 적정과세를 하는 자본이득세로의 점진적 시행을 할 필요성 있음.
 - 과세유형을 유산과세에서 취득과세형으로의 전환과 함께 전반적 조세 인프라 개선이 있어야 할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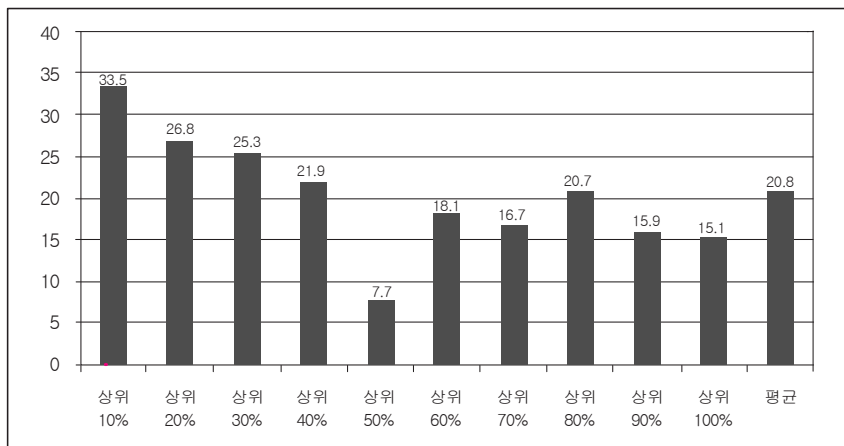
3) 조세의 수평적 형평성 미흡

- ▶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사적연금 가입을 제고시키기 위한 퇴직연금 납입한도 및 퇴직소득의 연금화 유도는 소비 진작을 통한 경제활성화의 취지와는 다소 거리가 있음.
 - 현행 세액공제대상 연금저축을 포함한 퇴직연금 400만 원 한도기준을 개정안에서 퇴직연금 300만 원 추가 확대 실시는 저축을 늘리는 유인을 제공하는 것임.

- ▶ 근로자의 퇴직소득 과세 시 정률공제를 퇴직급여에 따라 차등 공제하는 것은 이미 누적된 퇴직소득에 대해 기간 구분없이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합리적이 못함.
 - 현행 공무원 퇴직수당의 경우에는 2002년 이후 발생분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등 퇴직소득 발생에 따른 기간 구분을 하고 있음.
 - 한편, 퇴직자의 세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에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 강화라는 취지에 상충됨.
 - 예를 들어, 총급여 1.2~2억 원 이하 근로자의 퇴직금은 30%, 2억 원 초과 근로자에게는 15% 공제율
 - 따라서 총급여 1.2억 원 이하인 근로자의 실효세율은 낮아지고 초과하는 근로자의 실효세율은 증가하게 됨.
- ▶ 이는 조세의 수직적 형평성 기준에 부합하는 조치일지 모르나 수평적 형평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미흡함.
 - 전체 근로자의 약 36%는 실효세율이 “0”이기 때문임.
 -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라는 조세 형평성 관점에서 보면 미흡한 조치임.
- ▶ 이번 세법개정안의 고소득자 기준의 일관성이 다소 미흡함.
 - 이번 세법개정안에서는 고소득자 기준 총급여를 2억 원으로 설정했지만, 퇴직소득 세에 대해서는 총급여 1.2억 원을 기준으로 삼음.
- ▶ 한편 자영업자, 주식 부자, 부동산 임대업자들은 상대적으로 감세 혜택을 받게 됨.
 - 음식·숙박업 등 자영업자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 우대공제율을 2016년 말까지 연장
 - 비과세·감면제도 축소 등 정부가 표방한 세원양성화 틀에서 볼 때, 그리고 자영업자 소득과악률을 제고해야 하는 측면에서 볼 때도 적정하지 않음.
 - 배당소득세가 낮춰지게 되어 주식보유자들의 배당소득 증가
 - 부동산 임대업자의 세금 인하
- ▶ 고소득 직장근로자들에게는 세부담이 늘어나는 반면, 고소득 자영업자 등에 대한 증세는 거의 없으므로 조세형평성 문제가 있음.

- 8,800만 원을 초과 근로소득세 부담자보다 종합소득세 부담자 비율이 더 높음.
- 근로소득세의 경우 전체 근로소득세 부담자 15,768천 명 중 149천 명으로 약 0.9%이지만 종합소득세의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부담자 4,352천 명 중 180천 명으로 약 4.1%를 차지함.
-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직장근로자의 경우에는 소득이 고스란히 노출되는 반면,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소득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음.
- 2012년 기준 전체 자영업자 소득탈루율은 평균 20.8%이고, 이 가운데 상위 10%의 고소득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33.5%임.

[그림 2] 자영업자 소득탈루율 추정(2012년 기준)



자료: 신영임 외 (2014), 국회예산정책처 (2014)에서 재인용

3. 민생부문 개정안 총평

- ▶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민생안정부문은 서민·중산층의 생활안정 지원, 노후소득보장 강화, 서민 주거안정 지원, 안전·복지 등 생활여건 개선 등 서민·중산층의 전반적 생활향상을 도모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보인다고 평가할 수 있음.
- ▶ 서민·중산층의 실제적 세부담 경감이나 생활향상을 크게 느낄 수 있는 획기적 개정방향이라고 보기 어려움.
- 특히 이중과세 또는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제도를 폐지하려는 노력보다는 기존의 세율인하 또는 세금공제한도 확대 등 근본적 변화가 나타나지 않음.
- 예컨대 상속·증여세의 인적공제 확대나 주택·금융재산에 대한 상속공제 공제율을 상

향조정하는 것과는 달리, 근본적으로 상속·증여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로의 전환을 점진적으로 시행해야 할 필요성 있음.

- ▶ 저소득층, 노년층에 대한 지원확대에 초점을 맞춘 것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근로소득자 위주로만 세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에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조세 형평성이 미흡함.

- 저소득층 노년층의 다른 복지제도와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중복 지원되지 않게 점검할 필요

- 자영업자의 소득 파악률을 높여 근로소득자와의 조세형평성을 제고

제6장 공평(公平)과세

- ▶ 정부는 공평하고 원칙 있는 세제를 실현하여 경기회복의 건실한 토양을 조성하고 추진력을 불어넣고자 세법개정안의 기본 방향 중의 하나로 ‘공평과세’를 추진

- 본안은 그간의 과세정책 가운데 이미 목적이 달성된 정책, 효과가 미미한 정책, 형평성을 저해하는 정책들에 적극 대응하여 비과세·감면 정비 및 세원투명성 제고, 역외탈세 방지 강화, 신규세원을 발굴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음.

- ▶ 공평과세 세법개정안의 방향성은 옳지만 ‘기간 연장 없는’ 항구적 일몰제의 과감한 추진은 후퇴한 흔적,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의 충실한 지향을 위해서는 일몰이 도래할 경우 비과세·감면 제도를 과감히 종료할 필요

- 현재도 계속해서 비과세·감면 유예 의원입법안이 국회에 쌓여가고 있는 상황에서, 비과세·감면 제도의 원활한 정착과 모자란 세수 안정을 위해 기간 연장 없는 항구적 일몰제의 과감한 추진은 매우 중요

- 그러나 이번 세법개정안을 마련하면서 일몰 예정인 53개 항목 중 6개만을 계획대로 종료시키고, 나머지 47개 항목은 비과세·감면 제도의 일몰 기한을 연장하거나 재설계 또는 내용정비를 통해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

- 이번 비과세·감면 제도의 일몰 연장이 소비를 살리기 위한 목적으로 보이지만, 원칙적으로 비과세·감면은 일몰 도래 시 과감히 정비하여 특히 비과세·감면 혜택 대상인 한계기업들에게 더 이상의 퍼주기식 지원이나 연명 목적의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함.

▶ 아직 일몰이 도래하지 않은 비과세·감면 제도의 경우에 대해서는 제도 개정 시 세법개정안의 취지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시됨.

▶ 예컨대 공평과세의 실현을 위해 금번 세법개정안에서 포함하고 있는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²⁾ 개정안은 3가지 논란의 여지를 지님.

- 간접외국납부세액 적용대상 조정안

- 국내모회사가 직접 보유하고 있는 국외자회사에 대한 지분율 요건을 현행 10% 이상에서 25% 이상으로 높여 적용대상을 축소
- 현재는 국외자회사는 물론 국외손자회사³⁾를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대상으로 보고 있으나, 앞으로는 국외손자회사를 적용대상에서 제외시킴.

-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 적용대상의 강화 방안은

(Issue 1) 국내기업들의 해외시장 개척·진출 촉진요인을 반감시킬 가능성

(Issue 2) 국내기업들의 '합작투자'를 통한 해외시장 개척·진출 구조를 위축시킬 가능성

(Issue 3) 국내 시각에서만 바라본 공평과세 추진안

▶ (Issue 1) 간접외국납부세액의 공제 적용대상 조정안은 국내기업들의 해외시장 개척·진출 촉진요인을 반감시킬 가능성⁴⁾

- 현행 법인세법은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액 산정 시, 보편적으로 두 가지 경우(Case ①, Case ②)를 상정하고 있음.

- Case ①: 국외자회사가 있고 국외손자회사는 없는 경우, 또는 국외자회사가 있고 국외손자회사도 있으나 국외자회사가 국외손자회사로부터 배당받지 않는 경우
- Case ②: 국외자회사가 있고 국외손자회사도 있는 경우로 국외자회사가 국외손자회사로부터 배당을 받는 경우

- 이 때 국외손자회사를 공제 적용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Case ①에 대한 세액공

2)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는 해외에 있는 자회사나 손자회사로부터 배당금을 받은 내국법인 모회사(이하 국내모회사)가 법인세를 낼 때, 외국정부가 국외자회사 또는 국외손자회사에게 과세한 법인세 납부세액 중 배당금의 일정 비율을 국내모회사의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는 국외 자회사나 손자회사가 해외 소재지국에서 납부한 세액만큼 모회사가 속한 국내에서 법인세를 공제해 주어 이중과세를 방지하고자 하는 데에 도입 목적이 있음.

3) 제도 정비 전의 현행 법령에 따르면, 국외손자회사란 국외자회사가 10% 이상 직접 주식을 보유하고 국내 모회사가 10% 이상 간접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를 말함.

4)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에 따라 모회사 법인세에서 세액공제 되는 한도액 산정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 94조[시행 2014.7.22.][대통령령 제25194호, 2014.2.21., 일부개정]에 근거하고 있음.

제액 산정식과 Case ②에 대한 세액공제액 산정식이 결국 동일해 지는 결과를 초래 (하단의 [사례 1] 참조)

- 세액공제 한도액 산정식에서 국외손자회사와 관련한 항목 소멸에 기인
- 이에 따라 특정한 사례이긴 하지만 [사례 1]에서는 공제효과가 13.5%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표 5] 참조).

[사례 1]

자(子)회사	소득 100만 원	소재지국 법인세율 20%
	모회사 배당금액 60만 원	법인세 납부액 20만 원
손자(孫子)회사	소득 100만 원	소재지국 법인세율 10%
	자회사 배당금액 50만 원	법인세 납부액 10만 원

Case ① 국외자회사가 있고 국외손자회사는 없는 경우, 또는 국외자회사가 있고 국외 손자회사도 있으나 국외자회사가 국외손자회사로부터 배당받지 않는 경우

①의 경우 국내모(母)회사의 세액공제 한도액 산정식

$$\text{세액공제 한도액} = \text{국외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 \times \alpha$$

$$\alpha = \frac{\text{국내모(母)회사가 국외자(子)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수입배당금액}}{\text{국외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 - \text{국외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

[표 4] ①의 경우 국내모회사의 세액공제 한도액

국내모회사의 세액공제액	비 고
$20\text{만 원} \times \alpha$ $= 20 \times 0.75$ $= 15\text{만 원}$	(개정안) 국외자회사에 대한 직접 보유 주식의 25% 이상을 만족하는 국내모회사에 대해서만 적용됨.

Case ② 국외자회사가 있고 국외손자회사도 있는 경우로 국외자회사가 국외손자회사로부터 배당을 받는 경우

②의 경우 국내모(母)회사의 세액공제 한도액 산정식

$$\text{세액공제 한도액} = \frac{[\text{국외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 + \text{국외자회사의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국외손자회사의 외국 납부세액}(\beta) \times 50\%]}{\times \alpha}$$

$$\alpha = \frac{\text{국내모(母)회사가 국외자(子)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수입배당금액}}{\text{국외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 - \text{국외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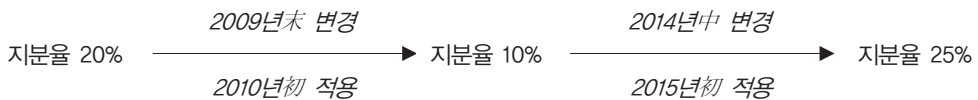
$$\frac{\text{국외자회사의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국외손자회사의 외국 납부세액}(\beta)}{\text{국외손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 = \frac{\text{국외손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text{국외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 \times \gamma$$

$$\gamma = \frac{\text{국외자회사가 국외손자(孫子)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수입배당금액}}{\text{국외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 - \text{국외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

[표 5] ②의 경우 국내모회사의 세액공제 한도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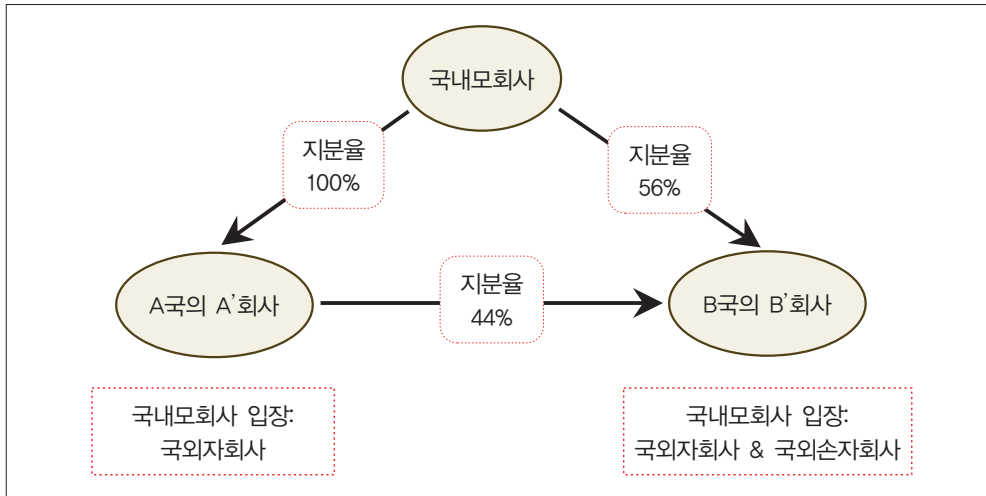
국내모회사의 세액공제액		비 고
현행	개정안	
$[20\text{만 원} + \beta \times 0.5] \times \alpha$	$20\text{만 원} \times \alpha$	국외손자회사의 공제대상 제외 → β 항목 소멸 → 세액공제 규모 축소 동시에, ① 결과와 동일해짐.
$[20 + 6.25 \times 0.5] \times 0.75$ = 17만 3,400원	$= 20 \times 0.75$ = 15만 원	

- 산정식 ①에 기반한 세액공제마저도, 국내모회사가 25% 이상 직접 지분을 가지고 있는 국외자회사에 대해서만 적용되도록 요건을 강화해 국내기업들의 해외시장 개척·진출 촉진요인이 감퇴
- 또한 어떠한 연유에서 지분율 기준을 급작스레 25%로 상향 조정하는 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부족하여 논란의 여지가 있음.



- ▶ (Issue 2) 간접외국납부세액의 공제 적용대상 조정안은 국내기업들의 ‘합작투자’를 통한 해외시장 개척·진출 구조를 위축시킬 가능성

[사례 2]



- B'회사는 국내모회사의 국외자회사이자, 또 다른 국외자회사 A'와 합작투자한 국내 모회사의 국외손자회사이기도 함.

- 세법개정안대로 국외손자회사를 공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면, 합작투자를 가로막는 것은 아니지만, 합작투자에 대한 이점(merit)이 줄어들어 현지 또는 근접 지역권의 경기 동향 및 경영 여건에 익숙해 시장 선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국외자회사와의 합작투자가 위축될 우려

- 현재 국내모회사의 통상적인 해외 합작투자의 형태는 국외자회사를 두고 그 밑에 세부 사업 분야별로 여러 손자회사를 두어 이를 통해 해외 사업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구조
- 손자회사에 대한 세액공제를 폐지하면 해외 경영 구조를 수정해야 하기 때문에 기업경영 상에 어려움이 나타날 수 있음.
- 이러한 연유로, 해외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당수 기업은 경쟁력 약화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음.

▶ (Issue 3) 간접외국납부세액의 공제 적용대상 조정안은 국내 시각에서만 바라본 공평과세 추진안

- 미국과 일본도 기업의 해외진출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해외진출 기업이 소재지국에서 발생시킨 소득에 대하여 이중으로 과세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세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 미국이나 일본도 우리나라와 공통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나 국외손자회사를 공제 적용대상으로 유지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제외토록 세법 개정을 추진([표 6] 참조)
- 게다가, 일본의 경우 배당소득에 대해서 과세 자체를 면제해 주고 있어 이중과세 방지 효과가 3국 중 가장 큰 상황([표 7] 참조)
- 국내 시각에선 국외손자회사의 공제 적용대상 제외가 내국법인의 국내투자과 해외 투자 간의 과세형평을 위한 공평과세 조치일 수 있지만, 국제적 시각에서 보면 공평 과세가 성립되지 않아 도리어 우리 기업에게 불리한 환경을 초래
- 이는 결과적으로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큼.

[표 6] 한국·미국·일본의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대상 자회사 범위 비교

	한국	미국	일본
범위	자회사	자회사, 손자회사, 증손회사	자회사, 손자회사
적용 요건	• 자회사 요건: 25% 이상 지분율 • 손자회사 제외 (2015. 1. 1. 시행 예정)	• 자회사 요건: 10% 이상 지분율 • 손자회사 이하의 요건: 지분율 5% 이상을 간접 소유	• 자회사 요건: 25% 이상 지분율 • 손자회사 요건: ①, ② 중 택일 ① 국외자회사가 국외손자회사의 지분 25% 이상을 보유 ② 내국법인 모회사가 국외손자회사 지분의 25% 이상을 국외자회사를 통해 간접 소유

자료: 정재호·구자은·송은주(2009), 「미국·일본의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과세제도 현황 및 시사점」, 세법연구 09-06, 한국조세연구원

[표 7] 한국·미국·일본의 외국납부세액 이중과세 방지 방법 비교

	한국	미국	일본
사업소득	세액공제	세액공제	세액공제
배당소득	세액공제	세액공제	과세면제방식

자료: 정재호·구자은·송은주(2009), 「미국·일본의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과세제도 현황 및 시사점」, 세법연구 09-06, 한국조세연구원

▶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는 일몰 도래 시 종료되는 것으로 이미 약속되어 있는 만큼, 일몰 전 이를 개정해 기업들의 해외시장 개척 및 진출 촉진요인을 도리어 위축시키고 기업전략에 혼선을 초래하는 우(愚)는 피해야 할 것임.

- 일몰 도래 시 과감히 종료시킬 것을 전제로 현재의 해외 합작투자 촉진 환경을 유지토록 하여, 기업 투자 증진과 경제활성화의 또 다른 방편이 내수 진작을 이유로 도

외시 되는 착오를 방지해야 함.

- 국내 경기 침체로 기업들의 해외 매출 비중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해외 사업을 통해 벌어들이는 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는 해외 진출 기업들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음.
- 해외에서 벌어들인 이익을 국내로 많이 들여와 투자 등에 사용하는 기업일수록 불이익을 받게 되는 만큼, 국내 기업들이 해외에서 거둔 이익을 국내로 가져오지 않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음.

▶ 공제 규모를 줄이는 것이 해외투자를 감소시키고 그만큼 국내투자를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분석은 세법개정 전 선행되어야 할 중요한 수순임.

▶ 또한 국외자회사에 대한 국내모회사의 지분율 기준이 25%로 강화된 데에 대한 충분한 근거 제시와 이에 대한 기업들과의 공감대 형성이 세법개정에 앞서 우선시 되어야 할 것임.

▶ 외국정부의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 운영방식을 고려했을 때 이들 국가 기업들의 경쟁상대인 우리나라 기업들이 세법개정으로 인해 오히려 상대적으로 경쟁력을 잃게 되므로 이를 감안한 세법개정안 마련이 필요

- 현재 미국 및 일본 등 외국정부에서는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대상으로 여전히 국외 손자회사를 포함시키고 있음(미국은 국외증손회사까지 공제 대상).

- 일본의 경우, 외국납부세액에 따른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과세 자체를 면제해 주는 방식도 채택하고 있음.

제7장 세제 합리화

▶ 세제합리화 부분이 포함하고 있는 개정안들은 지난해 발표된 세법개정안의 ‘원칙에 입각한 세제의 정상화’라는 방향성의 유지

- 과세 기반의 확대를 통한 조세부담 및 조세구조의 정상화라는 박근혜 정부의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에 충실하려는 노력으로 평가

- 박근혜 정부의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은 과세 사각지대 해소를 통해 세원확충의 폭을 넓히고 적정수준의 조세부담구조로 전환해 시장친화적 조세체계의 확립

- 금번 발표된 세법개정안의 공평과세와 세제합리화가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과 일치

하는 목표이며 조세저항은 줄이고 조세 순응도는 높이는 구조적 개선 및 합리화 여부가 평가의 기준

▶ **공평과세와 더불어 원칙에 입각한 세제의 정상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세제합리화** 부분은 총 5가지의 항목 및 83개의 세부개정안으로 구성(기획재정부, 2014a)

- 5가지 세부항목은 (1) 납세자 권익보호, (2) 납세 협력비용 감축, (3) 세부담 수준 합리화, (4) 제도 명확화, 그리고 (5) 지방세 개정(기획재정부, 2014b)

- **납세자 권익보호:** 국선대리인의 법령화와 경정청구기간의 확대
- **납세 협력비용 감축:** 신용카드 국세 납부한도 폐지 및 신고 납부절차의 간소화
- **세부담 수준 합리화:**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및 납세협력 수준에 따른 가산세 차등화
- **제도 명확화:** 양도소득 세액계산 특혜 보완 및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 적용대상 추가
- **지방세:** 각종 감면규정의 조정과 적용기간 연장 및 지방세 감면 상한제도 도입

▶ **2014년 세법개정안의 세제합리화 부분은 총론적으로 조세저항의 감소와 조세순응도의 확대를 위한 조세제도의 구조적 개선과 합리화에 대한 기여도가 불명확한 것으로 평가**

- 박근혜 정부가 공표하였던 원칙에 입각한 세제의 도입보다는 일몰 예정된 제도의 연장, 가산세 차등화, 그리고 감면제도의 축소에 집중
- 감면제도의 일몰기간 연장보다는 원칙적인 검토하에 근본·항구적 감면의 추진과 환급을 위한 경정청구 등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키는 개정안 마련이 올바른 방향

▶ **[부동산 세제 합리화] 비사업용 토지, 법인보유 토지 등에 대한 10% 추가과세의 유예를 골자로 해 비사업용 토지 판정 기간기준 및 농지임야의 재촌요건 완화**

- 비사업용 토지 양도와 법인(i.e., 중소기업)보유 토지의 양도 시 발생하는 추가과세를 1년간 유예는 기업보유 부동산에 대한 구조조정의 기회를 부여
- 기업보유 부동산에 대한 추가과세를 유지하며 유예적용의 일몰기간만 연장하기보다는 지난해 다주택 보유 중과세제의 폐지와 같이 원칙적인 제도의 재검토가 올바른 방향
 - 기업의 비사업용 토지 보유여부는 장기적 경영전략의 일부로 결정된 사안으로 추가과세 여부의 불확실성은 상시적 수정이 요구되는 장기적 계획설립의 걸림돌로 작용
- 추가과세와 감면의 동시 유지는 폐지와 달리 조세압박의 가능성으로 인한 미래의 불확실성을 확장시켜 기업의 투자환경과 부동산 시장에 악영향

- 산업구조의 변화로 인해 사업용 및 비사업용이라는 기업보유 부동산의 경계가 모호해졌으며 장기적 관점에서 보유 부동산의 관리가 가능하도록 조세정책의 변화가 필요

▶ [임대사업자의 과세특례 신청서류 간소화] 장기입대주택의 양도세 감면과 준공공 임대주택 장기보유 특제공제율 등 과세특례의 적용을 위한 중복 서류제출 문제를 해소해 납세자의 편의를 제공

- 기존 다세대주택 보유자의 임대사업자 전환을 통한 주택임대시장 활성화 및 양성화를 위해서는 소득노출에 대한 임대소득 노출에 대한 거부감 해소정책도 동시에 추진할 필요

-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임대시장의 활성화 정책은 기업형보다는 개인형 임대사업모텔에 치중되어 임대주택의 원활한 공급에 한계적 영향력 발휘

- 주택임대차시장의 실질적 선진화는 기존 주택 임대사업자를 통한 공급의 활성화만이 아닌 기업보유 주택의 임대시장 진출도 필요

- 기업보유 비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추가과세가 서민 주거안정에 주는 영향 또한 고려되어야하며 추가과세의 폐지를 통한 기업보유 주택의 임대시장 활용도 정책적 고려대상

▶ 2014년 세제개정안은 세제합리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에 미흡하며 유예기간의 연장에 머문 토지에 대한 추가과세와 같은 개정안에 대한 근원적 재검토가 필요

제1장 서론

1. 경제진단과 세법개정안의 주요 내용

1) 정부의 경제진단

▶ 저성장 기조의 장기화 우려

- 정부는 현재의 경기침체에서 하루 빨리 벗어나지 못한다면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답습할 가능성이 높다고 인식
- 과거 높은 성장률이 2000년대 들어 4%대로 떨어지고, 2012년에 2.3% 그리고 2013년에 3%대를 기록하면서 정부는 저성장의 고착화를 우려하고 있음.

[표 1-1] 실질 경제성장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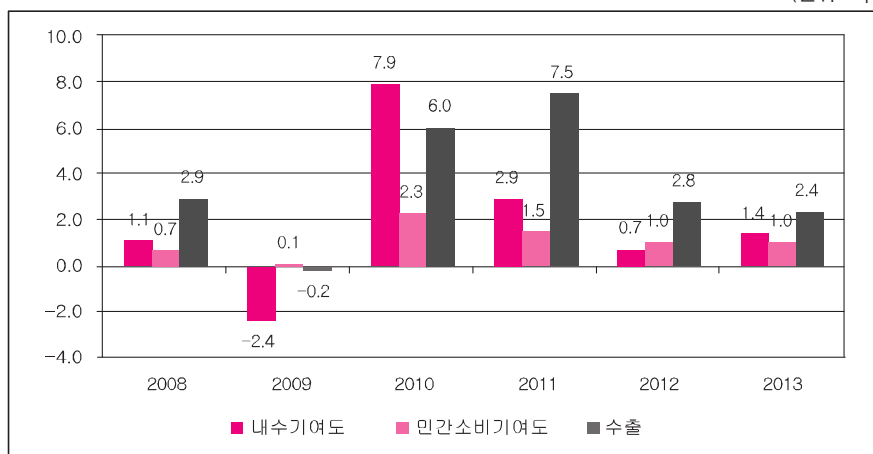
(단위: %)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성장률	7.7	6.3	4.4	2.8	0.7	6.5	3.7	2.3	3.0

자료: 한국은행

[그림 1-1] 경제성장률 기여도

(단위: %p)



주: 내수는 최종소비지출과 총자본형성을 합한 값임

자료: 한국은행

- 정부는 내수침체를 저상장의 근본원인으로 보고 있으며 특히 가계소득 감소에 따른 민간소비지출 둔화는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

- 내수기여도는 2011년 7.9%p에서 2013년에 1.4%p로 급락하였으며, 민간소비지출 기여도는 1%p 내외의 낮은 수준을 이어 가고 있음.

▶ 정부는 내수침체의 원인을 과도한 기업저축과 기업에서 가계로의 소득이전이 저조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하고 적극적인 환류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OECD 평균에 비해 우리나라의 가계소득은 빠르게 감소했으며, 기업소득은 반대로 빠르게 증가하였음.

- 우리나라의 국민총소득 대비 가계소득 비중은 1995년 대비 2012년에 8.3%p 감소한 반면 기업소득 비중은 6.6%p 증가하였음.

- 정부는 기업소득의 빠른 증가에도 불구하고 가계소득으로 이어지지 못하여 소비부진 - 저성장 - 투자 및 고용감소라는 악순환이 고착화되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음.

- 더욱이 법인세의 인하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투자는 늘지 않고 기업저축으로 유보되고 있어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음.

[표 1-2] 국민총소득 대비 부문별 소득 비중, 한국 및 OECD 평균

(단위: %, %p)

		1995	2000	2005	2010	2011	2012	2012-1995
가계/GNI	한국	70.6	68.7	65.9	62.0	62.0	62.3	-8.3
	OECD 평균	71.9	70.0	67.9	67.8	67.5	67.7	-4.2
기업/GNI	한국	16.6	16.5	19.8	23.5	23.7	23.3	6.6
	OECD 평균	16.6	17.2	18.2	18.4	18.6	18.2	1.6

주: OECD Stats에 1995년부터 2012년까지 모든 자료가 있는 20개 국가 평균(오스트리아, 벨기에,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헝가리, 이탈리아, 일본, 한국,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웨덴, 영국)

자료: OECD, 국회예산정책처(2014)에서 재인용

2) 세법개정안의 주요 내용

▶ 세법개정 배경

- 정부는 우리가 직면한 경제·사회적 여건을 개선하여 경기침체를 극복하고 민생안정을 도모하려는 목적으로 세법개정을 추진

- 지난 3년간 3%대의 저조한 성장률을 기록하고 2014년에도 세계경제 회복세 둔화, 세

월호 사고에 따른 내수부진으로 4% 이하의 성장률 기록 전망

- 고령화 추세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소비여력이 감소하는 등 사회활력 위축을 우려

▶ 정부는 경제활성화, 민생안정, 공평과세, 세제합리화를 기본방향으로 한 2014년 세법개정안을 추진

– 경제활성화

- 가계소득 증대를 위해 근로소득 증대세, 배당소득 증대세, 기업소득 환류세제 등 3대 패키지 도입
- 고용투자세액공제 강화, 가업승계 및 창업지원을 통해 경제활성화 도모

– 민생안정

- 서민 재산형성 지원, 노후소득보장 강화, 서민주거안정 지원, 안전복지 등 생활여건 개선

– 공평과세

- 비과세감면제도 정비, 세원투명성 제고, 역외탈세 방지, 신규세원 발굴

– 세제합리화

- 납세자 권익보호, 납세협력비용 감축, 기타 제도 개선

2. 총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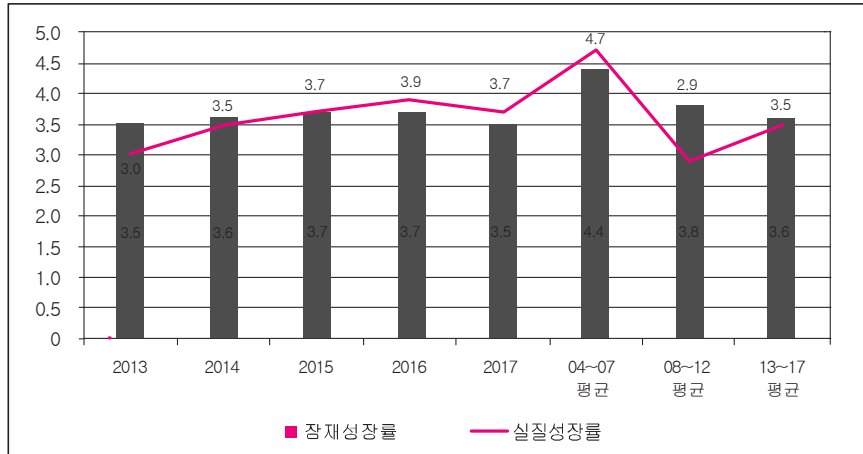
1) 정부의 경제 진단에 대한 평가

▶ 저성장 기조가 우려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조세·재정 및 금융정책을 총동원할 정도로 경기침체가 심각한지에 대한 논란의 여지 존재

- 국회예산정책처(2013)은 2014년의 실질성장률이 3.5%로 잠재성장률 3.6%보다 낮지만 2016년부터 경기가 회복되어 잠재성장률보다 높아질 것으로 전망
- 다만 잠재성장률이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지만 이는 구조적인 문제로 유효수요 확대라는 단기적인 처방으로 극복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님.

[그림 1-2] 중기 성장률 전망

(단위: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2013)에서 재인용

▶ 기업소득의 환류성의 둔화보다는 자영업자의 소득감소와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순이자소득 감소가 가계소득 감소의 주원인으로 꼽힘.

- 국민총소득에서 차지하는 가계소득의 비중은 1995년에 70.6%에서 2012년에 62.3%로 8.3%p 하락하여 OECD 평균 감소율 4.2%p보다 감소폭이 크게 나타나고 있음.
- 항목별로 살펴보면 임금비중 감소보다는 가계의 영업잉여(자영업자의 소득)와 순이자소득 부진이 가계소득 감소의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자영업자의 소득은 1995년에 17.9%에서 2012년에 12.0%로 6.0%p 감소한 반면 피용자 보수는 동기간에 46.8%에서 45.5%로 1.3%p 감소에 그치고 있음.⁵⁾
 - 가계부채가 급증함에 따라 가계의 순이자소득이 3.4%에서 0.3%로 3%p 감소한 것도 가계소득 감소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
- 가계소득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영업자의 소득증대와 자산시장의 활성화를 통해 가계부채의 건전화를 도모하는데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함.
 - 본격적으로 베이비부머의 은퇴가 시작되고 있어 자영업자의 비중은 급속히 증가할 전망에 있어 자영업자 소득이 가계소득을 크게 좌우할 전망
 - 자산소득이 가계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다면 현재의 자산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어 소비증대와 가계부채의 건전화를 도모하는 것은 중요한 정책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5)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중은 34.0%로 OECD평균 17.4%보다 2배가량 높아 자영업자의 소득이 가계소득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큼.

[표 1-3] 한국과 OECD 국가의 가계소득 요인 비교, 총 GNI 대비 비중

(단위: %, %p)

	한국			OECD 평균		
	1995	2012	차이	1995	2012	차이
국민총소득	100.0	100.0	—	100.0	100.0	—
가계소득	70.6	62.3	-8.3	71.9	67.7	-4.2
- 가계의 영업잉여 ¹⁾	17.9	12.0	-6.0	15.8	13.8	-2.0
- 피용자보수	46.8	45.5	-1.3	19.5	48.9	-0.6
- 순재산소득	5.8	4.8	-1.0	6.6	5.0	-1.6
(순이자소득)	(3.4)	(0.3)	(-3.0)	(2.3)	(0.4)	(-1.9)
• 재산소득	11.5	8.4	-3.1	9.2	6.5	-2.7
(이자수입)	(8.8)	(3.9)	(-5.0)	(4.9)	(1.8)	-3.0
• (차감)재산소득	-5.7	-3.6	2.1	-2.6	-1.5	1.1
(이자비용)	(-5.5)	(-3.5)	(1.9)	(-2.6)	(-1.5)	(1.1)

주: 1) OECD Stats에서 1995년부터 2012년까지 모든 자료가 있는 20개 국가 평균

자료: OECD,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재인용

2) 세제개편안 평가

(1) 빈약한 이론적 배경

▶ 금번 소득증대세제의 기반이 되는 ‘임금주도성장론’은 아직 검증되지 않은 이론으로 이를 현실에 적용할 경우 정책실패를 유발할 가능성 높음.

- 임금인상분이 ‘만나(manna)’가 아닌 이상 ‘임금주도성장론’은 경제순환구조상 성립되지 않음.

- 이론에 따르면 노동생산성 이상으로 임금을 인상하면 가계소득이 증가하고 유효수요가 창출되어 경제가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가 가능하다는 것임.
- 이는 임금인상이 생산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지 않은 부분균형 이론으로 부문 간 상호작용이 유기적으로 발생하는 현실경제에서 성립되지 않는 이론임.
- 생산성을 초과하는 수준으로 임금을 인상하면 생산비용 상승과 최종판매 가격이 상승하여 수출과 소비가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
- 더욱이 생산이 감소하면 자본과 노동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고 가계소득이 감소하는 악순환 구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 ‘저축의 역설’은 장기적으로 존재하지 않음.

- 기업소득(사내유보 기준)은 투자와 저축(현금성 자산)으로 지출되고, 가계의 소득은 소비와 저축으로 지출됨.
- 가계소득과 기업소득을 차별하려는 배경에는 투자보다는 소비가 효율적이고 저축은 경제적 비효율성을 초래한다는 근거 없는 논리가 자리 잡고 있음.
- 기업저축을 억제하고 이를 가계로 이전하여 소비를 늘리는 것이 경제성장에 보다 효율적이라는 논리는 정태적이고 근시안적인 견해임.
 - 동태적인 관점에서 보면 가계의 저축은 투자를 통해 자본축적과 미래소비의 원천으로서 지속 가능한 성장의 원동력으로 작용
 - 기업의 저축은 투자시점의 선택 폭을 넓혀 기업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일자리 창출 여력을 높여 가계소득 증대에 기여하게 됨.
- 따라서 기업저축을 인위적으로 억제하는 것은 경제의 선순환 구조에 기여하기보다는 자원배분의 왜곡을 초래하고 미래의 가계소득을 낮춰 오히려 경제의 악순환 구조를 초래할 가능성 높음.

(2) 사내유보금의 역할에 대한 오해

▶ 사내유보금의 증가는 기업의 수익성, 재무구조의 안전성, 투자 잠재성 향상의 지표로 간주해야 함.

- 순이익을 초과하여 배당을 하지 않는 한, 수익성이 있는 기업의 사내유보금과 유보율은 매년 증가하게 됨.
- 유보율이 높은 기업일수록 수익성과 현금창출능력이 높아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음.
 - 황인태 · 강선민(2011)의 실증분석에 따르면 유보금 단위당 투자 증가율은 17%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⁶⁾
 - 황인학(2014)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사내유보금의 84.4%가 이미 투자된 상태

6) 유보금 100 증가시 현금성자산(당좌자산 포함) 14원, 재고자산 2원, 투자자산 17원, 유형 자산 11원, 무형 자산 1원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

[표 1-4] 사내유보금의 투자비중

(단위: %)

	2006	2007	2008	2009	2010
비중	81.7	84.1	83.9	83.1	84.4

자료: 전국경제인연합회, 황인학(2014)에서 재인용

(3) 현금성 자산을 비생산적인 행위로 보는 오류

▶ 금융위기 이후 현금성 자산 보유비율이 증가하여 왔는데 이는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하고 적정 투자시기를 찾기 위한 최적화 행위로 봐야 함.

- 금융위기 이후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려는 경향은 국제적인 추세로 자리 잡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현금성보유 비중은 주요 경쟁국가에 비해 낮은 수준
- 현금성 자산은 미래의 투자로 이어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금성 자산보유가 비생산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며 정책적 오류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현금성 자산보유는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하고 적기의 투자시점을 잡기 위한 최적화 행위
 - 또한 기업의 현금성 자산이 기업 내에 쌓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은행에 예금형태로 보유되어 있기 때문에 은행의 중개활동을 통해 실물경제에 기여하기도 함.

[표 1-5] 비금융업 상장사의 총자산 대비 현금성자산 비율 국제비교

(단위: %)

미국	일본	타이완	유럽연합	G8	한국
23.7	21.4	22.3	14.8	22.2	9.3

주: 1) 총자산 대비 현금성자산 비율은 평균값

2) 2013년 상장사 기준, 2012년 재무제표

자료: 김윤경(2014)에서 재인용

(4) 내수확대를 위한 부적절한 정책

▶ 기업소득환류세제 도입은 내수확대를 통한 성장전략의 한계와 수출의 성장기여도에 대한 고소 평가의 결과

- 우리나라는 고령화의 빠른 진행과 절대적 인구규모가 작아 내수확대를 통해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기에는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음.
 -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FTA를 통해 내수시장 자체를 확장하려는

노력과 경제특구 활성화 및 서비스시장 개방을 통해 외국인 투자와 관광객을 적극 유치하는 정책이 최선책으로 꼽힘.

- 단순히 기업의 소득을 가계로 인위적으로 이전하는 것은 “풍선효과”에 지나지 않으며 내수확대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음.

- 수출은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에 일등공신이었으며 내수의 구조적 한계로 인해 수출을 통한 성장전략은 여전히 최선의 성장정책임.

- 기업과 가계의 소득격차를 해소하고 내수를 진작한다는 이유로 기업에 세금을 인상하고 기업의 경영활동에 개입할 경우 투자와 수출 감소가 불가피하고 이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죽이는 결과와 같음.

▶ 경제에 대한 잘못된 진단은 잘못된 정책을 양산하고 잘못된 결과를 초래

-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답습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높게 평가되지만 반면 교사로 삼아야 할 일본의 정책적 오류를 답습하고 벤치마크로 삼아야 할 정책은 등한시하고 있음.

- 일본의 장기침체의 근본원인은 경기침체에 껴야 할 구조조정을 게을리 하고 재정·금융 확대정책을 통해 극복하려는 시도가 반복되면서 국가채무가 급증한데 있음.
- 현재 세계최고 수준의 국가채무는 일본 경제회복의 최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⁷⁾
- 그러나 일본이 세계최고의 국가채무비중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지속적인 무역수지 흑자, 기업저축의 증가, 높은 해외자산 수입 등으로 국가채무의 구성이 건전했기 때문임.
- 그러나 최근 아베노믹스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2년 연속 무역수지 적자가 발생하고 해외자산 수입도 감소하면서 국채발행을 해외자본에 의존하는 비중이 늘어나고 있어 국가채무의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음.⁸⁾
- 과거와 같이 대규모 양적완화, 과감한 재정투입은 재정적자만 가중시키고 성과 없이 끝날 가능성이 높아 이는 우리정부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최정환 정책팀은 이를 벤치마크하고 있음.
- 가계소득을 증대한다는 목적으로 강제적으로 임금인상을 유도하는 아베정부의 정책은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켜 무역수지 적자 폭을 확대시키고 국가채무 구성을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7) 일본은 정부지출의 절반을 국채발행을 통해 조달하고 있고 지출의 22.4%(2010년 기준)가 국채의 원금과 이자지급으로 지출하고 있음.

8) Bloomberg는 국채수익률이 1% 상승하면 원리금 상환비용 증가로 재정적자는 약 7조 원씩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세 번째 화살로 명명되는 규제개혁, 경제특구 지정, 이민 확대, 법인세 인하 등은 일본 경제회복의 결정할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는 우리 정부가 본받아야 할 정책으로 꼽을 수 있음.

3) 정책건의

▶ 기업소득환류세제 도입 계획 철회

- 유보율 증가는 기업의 수익성 증가, 재무구조의 개선, 투자의 잠재성 향상 등 기업의 성과로 인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징벌적 과세대상으로 취급하는 것은 부당함.
- 기업의 현금성 자산은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하고 투자의 적기를 찾기 위한 기업의 최적화 행위로 정부가 간여하고 규제할 대상이 아님.
- 기업소득환류세제가 도입되면 기업의 세부담 증가는 불가피할 전망인데 기업의 세 부담 증가는 생산 감소와 가계의 소득이 감소를 초래
 - 악순환 유발: 생산비용 증가 - 물가상승 - 소비둔화 - 생산 감소 - 근로·소득 감소 - 가계소득 감소

▶ 자본원천 간 수평적 형평성 제고를 위한 세제개편

-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문제와 높은 세부담으로 배당이 저조했던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배당소득에 대한 세율인하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평가됨.⁹⁾
- 사내유보금 중 비사업용 토지보유와 같은 비생산적인 부분을 해소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함.
 - 비사업용 토지가 청산되지 않는 일차적인 이유는 높은 양도소득세로 인한 동결효과 때문인 것으로 평가됨.
 - 가계소득으로의 환류(배당, 임금)를 조건으로 비사업용 토지 처분 시 양도소득세를 완화하여 동결효과를 해소
- 자본에 대한 세부담을 인하하는 세계적인 추세에 맞게 법인세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하면서 배당소득과-사내유보 간의 세부담 격차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편되어야 함.

9) 배당에 대한 세부담은 50.2%(법인 단계 24.2% + 개인단계 34.3% - 공제 8.3%)에 달함.

▶ 내수확대를 위한 보다 근본적인 정책으로 방향전환 요구

- FTA 확대를 통해 내수시장을 확장하고, 경제특구 활성화 및 서비스시장 개방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를 철폐하여 외국인 투자와 관광객을 적극 유치하는 정책이 최선책으로 꼽힘.
- 가계소득 증대의 최선의 길은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기업 활동에 장애가 되는 규제를 철폐하여 투자환경을 개선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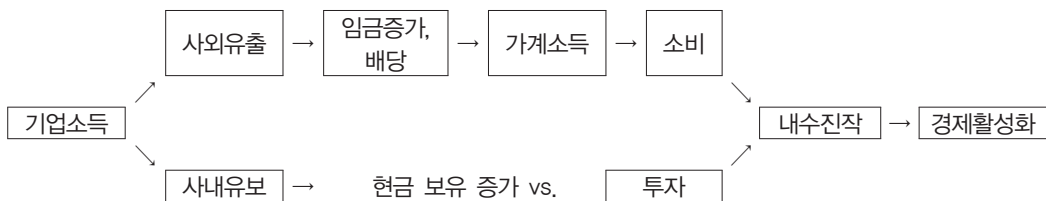
제2장 가계소득 증대세제

1.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 도입 목적과 주요내용

- ▶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로서 근로소득 증대세제, 배당소득 증대세제, 기업소득 환류세제 신설

- 가계소득 증대세제의 도입 목적은 투자를 확대하는 동시에 임금과 배당을 통해 가계 소득으로 환류시켜 내수를 진작시키고 경기를 활성화 하는데 있음.

[그림 2-1] 가계소득 증대세제의 목적



1) 근로소득 증대세제의 주요 내용

▶ 도입목적

- 근로소득 증대세제 도입 목적은 기업에게 임금인상의 유인을 제공하여 가계소득을 증가시키는데 있음.

▶ 주요 내용

- 임원, 고액연봉자를 제외한 근로자의 직전 3년 평균 임금증가율을 초과하는 임금증가액에 대해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10%, 대기업의 경우 5% 세액공제율로 기업규모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
- 2015.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2017. 12. 31.이 속하는 과세연도분까지 적용하여 3년간 시행

[표 2-1] 근로소득 증대세제 신설(조특법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근로소득 증대세제 ○ 〈개정이유〉 근로소득을 증대시키는 기업에 대해 인센티브 부여 ○ (적용대상) 모든 기업(개인사업자 포함) ○ (적용요건) ①, ② 모두 충족 ① 상시근로자의 당해연도 평균임금* 증가율 ▷ 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 * 평균임금 계산시 임원, 고액연봉자 등 제외 ** 평균계산시 임금증가율이 음수 등인 연도는 제외 ② 당해연도 상시근로자 수 ≥ 직전연도 상시근로자 수 ○ (세액공제율) 중소·중견기업 10%, 대기업 5% ○ (세액공제액) - [당해연도 평균임금 - 직전연도 평균임금 × (1 + 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 × 직전연도 근로자 수* × 세액공제율 * 고용증가 효과를 제거하기 위함 ○ 〈적용시기〉 2015.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 적용기한: 2017. 12. 31.이 속하는 과세연도분까지 적용

2) 배당소득 증대세제 신설

▶ 도입목적

- 배당에 대한 세제상 인센티브를 통해 기업이익을 주주와 공유함으로써 가계소득과 민간소비를 확대하는 동시에 안정적인 장기투자를 유도하여 기업수익이 개선되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하는데 있음.

▶ 주요내용

- 고배당 주식을 소유한 개인에 대해 원천징수세율을 인하하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일 경우 선택적 분리과세를 허용
- 고배당에 해당하는 상장주식을 보유한 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 대상일 경우 원천징수 세율 14 → 9%로 인하하고 종합과세 대상일 경우 25% 선택적 분리과세 허용
- 2015.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결산배당분부터 2017. 12. 31.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배당분까지 적용하여 3년간 시행

[표 2-2] 배당소득 증대세제 신설(조특법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배당소득 증대세제 ○ 〈개정이유〉 주주에 대한 고배당 유인구조 마련 ○ (적용대상)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상장주식을 보유한 주주 ① 시장평균 배당성향·배당수익률 120% 이상 & 총배당금 증가율 10% 이상 상장주식 ② 시장평균 배당성향·배당수익률의 50% 이상 & 총배당금 증가율 30% 이상 상장주식 * 배당성향, 배당수익률, 총배당금 증가율 산정기준 - 배당성향 : 3개년 현금배당금/3개년 당기순이익 - 배당수익률 : 3개년 평균 배당수익률 - 총배당금 증가율 : Max(직전연도, 직전 3개년 평균배당금) 대비 증가 ○ (과세방식) - (분리과세 대상) 원천징수 세율 14 → 9%로 인하 - (종합과세 대상) 25% 선택적 분리과세 허용 * 현금배당으로 한정하고, 중간배당은 제외 ○ 〈적용시기〉 2015.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결산배당분부터 적용 ○ 적용기한: 2017. 12. 31.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배당분까지 적용

3) 기업소득 환류세제 신설

▶ 도입목적

- 기업소득이 임금이나 배당을 통해 가계소득 증가로 환류되는 선순환 구조를 유도

▶ 주요내용

- 투자, 임금증가, 배당 등이 당기 소득의 일정액에 미달한 기업에 대해 추가 과세
- 중소기업을 제외한 자기자본 500억 원 초과 법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의 당기소득의 일정액에 투자·임금증가·배당액 등이 미달한 금액(기준 미달액)에 대해 세율 10%로 추가과세
- 2015.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2017. 12. 31.이 속하는 사업연도분까지 적용하여 3년간 시행

[표 2-3] 기업소득 환류세제 신설(법인법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기업소득 환류세제 ○ 〈개정이유〉 기업의 소득을 투자·임금증가·배당재원 등으로 활용하도록 하여 기업소득·가계소득 간 선순환 유도 ○ (적용대상) 자기자본 500억 원 초과 법인(중소기업 제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 ○ (과세방식) ④ 또는 ⑤ 중 선택(※ 최초 선택시 3년 계속 적용) ④ [당기소득 × 기준율 α*(60~80%) - (투자+임금증가+배당액 등)] × 10% ⑤ [당기소득 × 기준율 β*(20~40%) - (임금증가+배당액 등)] × 10% * 법에 기준율 상한을 정하고, 구체적 기준율은 시행령에 규정 - 당해연도 기준미달액은 다음연도의 기준초과액으로 공제 가능(미공제 잔액은 과세) - 당해연도 기준초과액으로 다음연도의 기준미달액에서 공제 가능 ※ 과세방식 무신고시 최초연도 세부담이 적은 방식을 적용하고, 미환용액은 발생연도에 즉시 과세 ○ (과세 적용기준) - (당기소득)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또는 회계상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에서 이월 결손금, 법인세액(기업소득환류세 제외), 상법상 이익준비금적립액 등을 차가감한 금액 - (투자액) 사업용 유형자산(기계장치 등) 및 무형자산 취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취득액 - (임금증가) 직원(임원·고액연봉자 제외) 임금의 증가액 - (기타) 대·중소기업 협력 관련 지출(예: 상생협력기금 출연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적용시기〉 2015.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 적용기한: 2017. 12. 31.이 속하는 사업연도분까지 적용

2.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안

1) 근로소득 증대세제 평가와 개선방안

▶ 임금증가 현황

- 1990~2012년 기간 우리나라의 실질임금은 생산성 증가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으며 2012년 현재 OECD 국가들과 비교하면 생산성 대비 실질임금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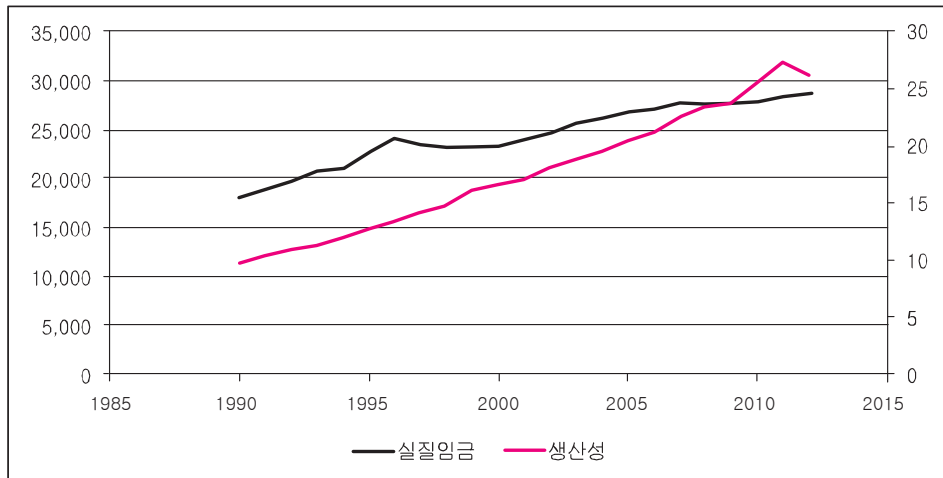
- [그림 2-2]와 같이 우리나라의 생산성(GDP per hour worked USD, constant prices, 2005 PPPs)은 1990년에 9.7달러, 2000년 16.6달러, 2012년에는 26.2달러로 증가해 왔으며, 이와 함께 실질임금(2012 USD exchange rates and 2012 constant prices)도

1990년에 18,066달러, 2000년 23,312달러, 2012년에는 28,725달러로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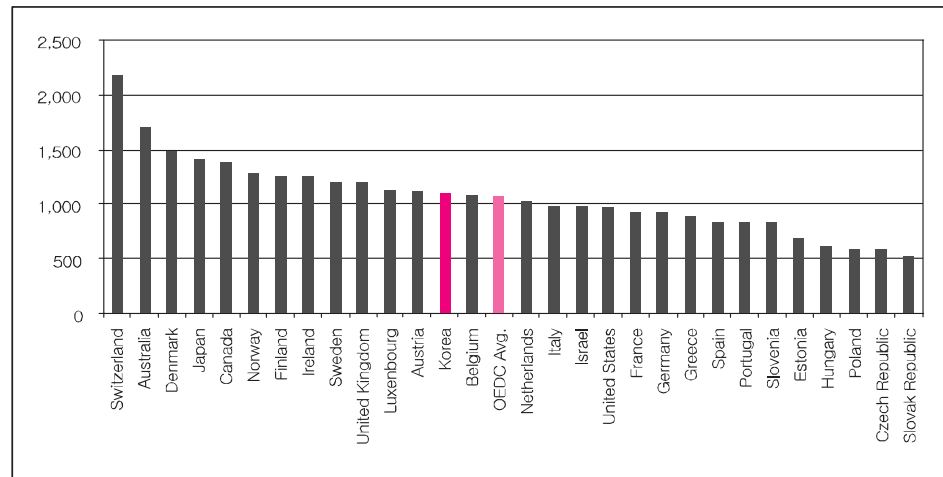
- 2012년 기준, 우리나라의 생산성 대비 실질임금은 아이슬란드, 터키, 칠레, 뉴질랜드, 멕시코를 제외한 OECD 29개국의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며 OECD 29개국 중 13번째로 높은 수준임.

[그림 2-2] 실질임금, 생산성 추이와 생산성 대비 실질임금의 국제비교

A. 실질임금, 생산성 추이(Korea, year 1990~2012)



B. 생산성 대비 실질임금(OECD, year 2012)



주: 1) 실질임금: 2012 USD exchange rates and 2012 constant prices

생산성: GDP per hour worked USD, constant prices, 2005 PPPs

2) OECD 34개국 중 Iceland, Turkey, Chile, New Zealand, Mexico는 실질임금의 값이 없어 제외함.

자료: OECD

▶ 근로소득 증대세제가 도입된다고 하더라도 임금의 하방경직성(downward inflexibility) 때문에 기업의 임금증가 유인이 부족

- 경기 상승, 호황 시 기업의 수익이 증가할 경우 임금인상은 쉽게 가능한 반면 경기 후퇴, 불황 시 기업의 수익이 감소할 경우 우리나라와 같이 노동조합의 강력한 압력 등에 의해 임금인하는 쉽게 가능하지 않음.

▶ 근로소득 증대세제로 임금증가가 가계소득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는 단선적인 인식에 오류가 있으며, 임금증가 시 가계의 실질소득 하락과 함께 내수 진작 효과는 작을 가능성이 존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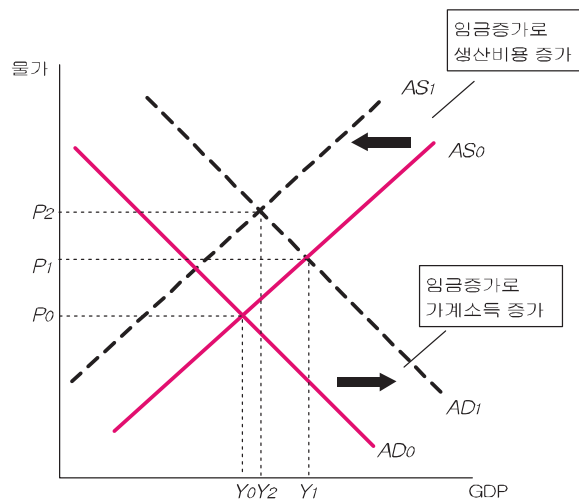
- (총수요 측면) 임금증가 → 가계소득 증가 → 소비 증가 → 총수요 증가 → 물가 상승 & GDP 증가

- (총공급 측면) 임금증가 → 생산비용 증가 → 생산 감소 → 총공급 감소 → 물가 상승 & GDP 감소

- 따라서 임금증가 시 총수요 측면과 총공급 측면 모두에서 물가 상승이 일어나 실질 임금 감소에 의해 가계의 실질소득은 하락할 수 있음.

- 또한 임금증가 시 총수요 측면에서 GDP가 증가하는 반면 총공급 측면에서 GDP는 감소하기 때문에 내수 진작 효과는 작을 가능성이 있음.

[그림 2-3] 임금증가의 물가 상승 및 GDP 상쇄 효과



▶ 근로소득 증대세제는 우량 기업에 혜택을 주지 않으면서 불량 기업에 혜택이 돌아가는 역선택 문제와 세제상 형평성 문제가 있음.

- [표 2-4]에서 기업 A는 상시근로자의 평균임금을 2011년 4,000만 원에서 매년 꾸준히 200만 원씩 인상해 2015년 4,800만 원으로 증가시켰으나, 2015년 현재 당해연도 평균임금 증가율이 4.2%로 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 4.6%보다 낮아 근로소득 증대세제의 혜택이 적용되지 않음.

- 반면 기업 B는 상시근로자의 평균임금을 2011년 4,000만 원에서 매년 인상을 미루어 오다가 2015년에 4,800만 원으로 증가시켜, 2015년 현재 당해연도 평균임금 증가율이 16.7%로 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 0%보다 높아 근로소득 증대세제의 혜택이 적용됨.

[표 2-4] 근로소득 증대세제 적용 예시

(단위: 만 원, %)

		2011	2012	2013	2014	2015
기업 A	당해연도 평균임금	4,000	4,200	4,400	4,600	4,800
	당해연도 평균임금 증가율		4.8	4.5	4.3	4.2
	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					4.6
기업 B	당해연도 평균임금	4,000	4,000	4,000	4,000	4,800
	당해연도 평균임금 증가율		0	0	0	16.7
	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					0

▶ 개선방안

- 근로소득증대세 신설 재고

- 우리나라의 생산성 대비 실질임금은 낮은 수준에 있지 않고 기업의 임금증가 유인이 부족하며 근로소득 증대세제로 임금증가 시 가계의 실질소득 하락과 함께 내수 진작 효과는 적을 가능성이 존재하고 역선택과 세제상 형평성 문제가 있어 근로소득 증대세제 신설은 바람직하지 않음.

2) 배당소득 증대세제 평가와 개선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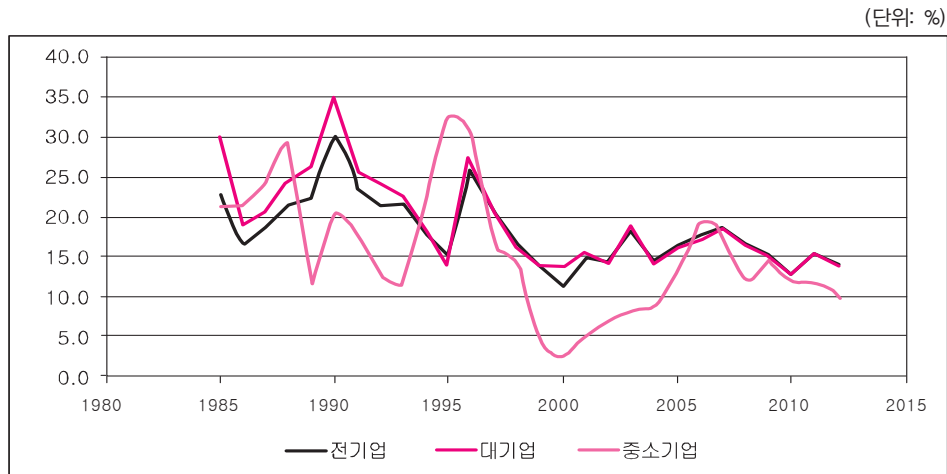
▶ 현황

- 우리나라 기업의 배당성향은 기업규모와 상관없이 낮아져 왔으며 전세계 다른 국가

들과 비교하면 크게 낮은 수준임.

- [그림 2-4]에서 비금융업 상장기업 기준, 우리나라 전기기업의 배당성향은 1985년 22.7%에서 2012년 현재 14.2%로 낮아져 왔으며, 대기기업과 중소기업은 각각 1985년 29.8%, 21.5%에서 대기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이 더 큰 폭으로 등락하며 2012년 현재 14.3%, 10.6%로 낮아져 왔음.
- [표 2-5]와 같이 2013년 기준, 우리나라 기업의 배당성향은 21.1%로 전세계 평균 40.2%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인데 반해 미국 34.6%, 일본 30.1%, 프랑스 55.1%, 독일 43.3%로 주요 선진국들은 높은 수준임.

[그림 2-4] 비금융업 상장기업의 배당성향 추이



주: 1) 각 연도별 상장기업 기준
 2) 당기순이익 실현기업 기준
 3) 배당성향: 가중평균값

자료: NICE평가정보의 기업 재무자료 이용

[표 2-5] 배당성향 국제비교(2013년)

(단위: %)

국가	한국	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	전세계
배당성향	21,1	34,6	30,1	55,1	43,3	40,2

자료: 한국재정학회·한반도선진화재단(2014.08)

▶ 우리나라의 배당소득세율은 OECD 국가들과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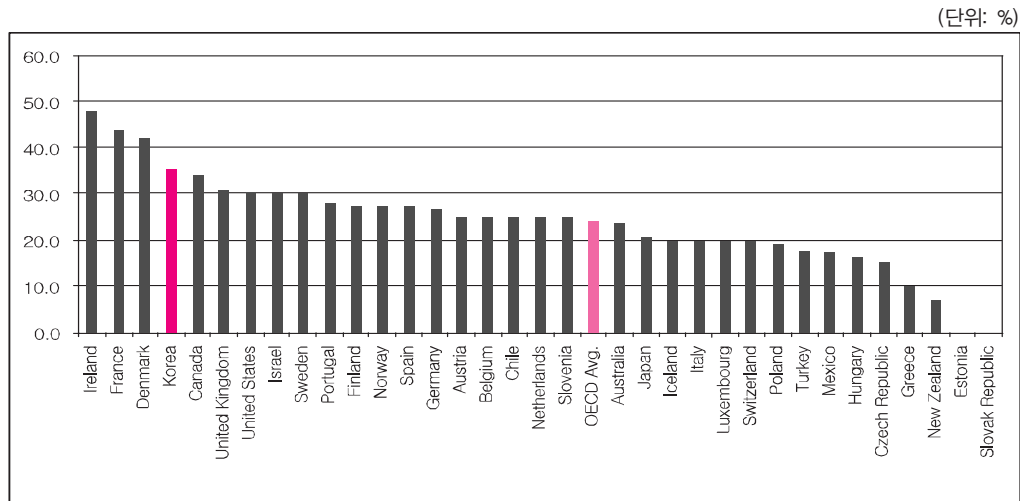
- [그림 2-5]는 법인세·소득세 간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한 Gross-up 제도 하에서 배당소득에 대한 각국의 소득세율을 제시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법인세·소득세 간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해 소득세 계

산 시 배당소득 총수입금액에 배당가산액으로 귀속법인세를 가산(Gross-Up)한 후, 소득세 산출세액에서 배당세액공제로 그 귀속법인세를 공제하고 있음.

- 2014년 기준, 우리나라의 배당소득세율은 35.4%로 OECD 34개국의 평균 23.8%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이며 OECD 34개국 중 4번째로 높은 수준임.

[그림 2-5] 배당소득에 대한 명목 소득세율의 국제비교(2014년)



자료: OECD Tax Database

- ▶ 배당소득 증대세제가 신설된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경우 수익성이 높은 주요한 기업들은 지배주주가 경영자이기 때문에 기업의 배당 유인이 적음.

- 경영자는 주주에게 배당함으로써 자신의 경영성과를 인정받는데 전문경영인 체제에서는 배당 유인이 많은 반면 지배주주가 경영자로 활동하는 체제에서는 배당 유인이 적음.

- ▶ 김우철(2014)은 배당이 확대되지 않거나 배당의 확대 폭이 미미하다면 세수는 크게 줄어드는 한편 부자감세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

- 김우철(2014)은 배당소득 증대세제로 배당이 크게 확대되는 경우에 한해 재정건전성의 부담은 줄고 부자감세라는 비판은 피하면서 가계소득증대를 가져올 것으로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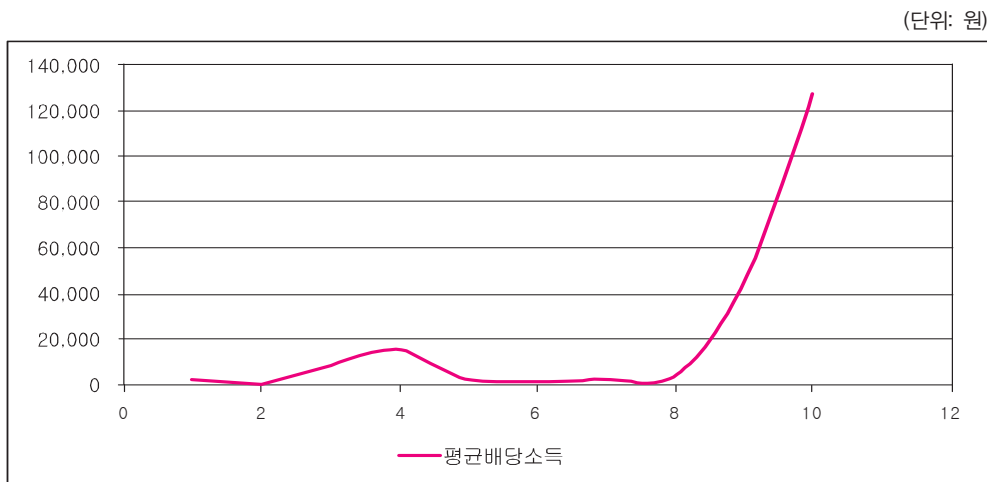
- 배당소득 증대세제에 따른 세수는 배당이 확대되지 않을 경우 1,857억 원, 배당이 10% 확대되는 경우 1,310억 원, 20% 확대되는 경우 760억 원, 30% 확대되는 경우 215억 원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배당소득 증대세제가 자산가 계층에 대한 감세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는데

전체적으로 약 25% 정도의 배당 확대가 이루어진다면 세금감소의 혜택이 다수의 분리과세 대상자에게 집중되어 부자감세의 비판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평가

- 종합과세 대상주주 전체의 실질 세부담은 50.2%에서 45.05%로 약 5.15%p 인하되고 분리과세 대상 주주의 전체 세부담은 35.87%에서 31.7%로 4.17%p 인하될 것으로 예측¹⁰⁾
- 가계소득증대 효과는 대주주의 경우보다 일반개인주주에서 1.5배 많을 것으로 예상
 - 일반개인주주의 가계소득증대 규모는 배당소득 확대 폭에 따라 대주주의 배당소득세 수 감소분의 약 4배~7배에 해당할 것으로 전망

[그림 2-6] 배당소득 분포(2013년)



주: 1) 경상소득 기준, 소득 10분위

2) 제곱근 형평화 척도를 사용하여 가구원 수 조정

자료: 가계동향조사를 이용하여 계산

- ▶ 또한 배당소득은 평균소비성향이 낮은 고소득계층에 주로 많이 분포되어 있어 배당소득 증대세제로 인해 배당소득이 증가되어도 소비 증가로 이어지지 않아 내수 진작은 기대만큼 크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함.

- [그림 2-6]과 같이 2013년 기준, 평균 배당소득은 소득 10분위 계층이 126,724원, 소득 9분위 계층이 43,934원으로 높은 수준이나 소득 1~8분위 계층은 20,000원 이하로 상당히 낮은 수준임.

- [표 2-6]에서 소득분위별 소비지출과 배당소득 간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소득 1

10) 2014년 세법개정안에 따라 달라질 세율을 적용하였으며, 주주의 경우 주식 50% 소유를 가정하여 계산 (김우철(2014))

분위와 4분위 계층만 유의하게 (+)의 상관관계가 나타남.

- 따라서 배당소득이 주로 많이 분포되어 있는 소득 9분위와 10분위 계층에서 배당소득이 증가하더라도 소비지출은 증가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

[표 2-6] 소득분위별 소비지출과 배당소득 간 상관관계(2013년)

소득분위	1	2	3	4	5
상관계수	0.1420* (0.0000)	0.0340 (0.2566)	0.0067 (0.8292)	0.1538* (0.0000)	0.0376 (0.2322)
소득분위	6	7	8	9	10
상관계수	0.0082 (0.7965)	0.0250 (0.4424)	-0.0249 (0.4394)	-0.0363 (0.2718)	-0.0156 (0.6293)

주: 1) 경상소득 기준, 소득 10분위

2) 제곱근 형평화 척도를 사용하여 가구원 수 조정

3) (*)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자료: 가계동향조사를 이용하여 계산

▶ 한편으로는 우리나라의 배당소득세 부담이 높아 자본소득 원천 간 배분에 있어 왜곡을 초래

- [표 2-7]은 배당과 양도차익 간 세부담 차이를 나타내고 있음.
- Case 1은 액면가 5,000원의 중소기업 이외 주식을 구매하여 1년간 보유한 경우로서 배당으로 1,000원을 받지만 주가에 반영되지 않아 주가가 상승하지 않은 경우
- Case 2는 액면가 5,000원의 중소기업 이외 주식을 구매하여 1년간 보유한 경우로서 배당을 받지 않고 대신 주가에 1,000원이 반영되어 주가가 상승한 경우
- Case 1과 2 모두는 액면가 5,000원의 주식 구매로부터 소득이 동일함.
- 그러나 소액주주 또는 대주주의 경우 모두에서 배당으로 받은 소득 1,000원에 대한 세부담에 비해 양도차익으로 받은 소득 1,000원에 대한 세부담이 더욱 작음.
 - 2014년 소득세법 기준, 소액주주의 경우 배당소득이 종합과세 된다면 최고세율 적용에 (+)배당가산액과 (-)배당소득공제를 고려하여 계산한 세율 35.4%가 적용되는 반면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한 세율은 0%가 적용
 - 대주주의 경우 배당소득이 종합과세 된다면 위와 같이 35.4%가 적용되는 반면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한 세율은 1년간, 중소기업 이외 주식 보유로서 20%가 적용
- 이로 인해 주주가 양도차익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더욱 선호하게 되며 주식을 거래하기보다는 계속 보유하려는 동결효과가 발생

[표 2-7] 배당과 양도차익 간 세부담 차이

(단위: 원)

	액면가	주가	배당	주가+배당	세부담액	
					소액주주	대주주
Case 1 (배당)	5,000	5,000	1,000	6,000	$1,000 \times 35.4\% = 354$	$1,000 \times 35.4\% = 354$
Case 2 (주가 반영)	5,000	6,000	0	6,000	$1,000 \times 0\% = 0$	$1,000 \times 20\% = 200$

▶ 개선방안

- 기업의 배당 유인이 적고 가계의 배당소득 증가로 소비 증가가 쉽지 않아 내수 진작이 기대만큼 크지 않을 수 있지만, 그 동안 우리나라의 배당소득세 부담이 높아 자본소득 원천 배분의 왜곡을 초래하고 있어 도입은 타당한 것으로 평가됨.

3) 기업소득 환류세제 평가와 개선방안

(1) 사내유보금과 현금의 보유에 대한 이해

▶ 재무상태표의 구성

- [표 2-8]과 같이 재무상태표 차변의 자산은 기업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전체 재산을 나타내며 대변의 부채와 자본은 이러한 자산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즉 자산의 출처를 보여주는데 “자산 = 부채 + 자본”¹¹⁾
 - 재무상태표상 자산은 크게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구분되며 유동자산 내 당좌자산, 재고자산, 비유동자산 내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 비유동자산이 있음.
 - 부채는 크게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구분되고, 자본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이익잉여금으로 구분됨.
- 따라서 재무상태표상으로 보면 현재 논란중인 유보금(또는 사내유보금)은 현금성자산(또는 현금)의 보유에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생산에 필요한 유·무형자산 등의 형성에도 사용됨.

11) 부채는 타인자본으로서 타인으로부터 빌려온 것, 자본은 자기자본으로서 원래 자기 것을 뜻함.

[표 2-8] 재무상태표와 주요 계정항목

차변	대변
자산	부채
1. 유동자산	1. 유동부채
1) 당좌자산	2. 비유동부채
- 현금성자산	자본
· 현금 및 현금등가물	1. 자본금
· 단기투자증권	2. 자본잉여금
· 단기금융상품	3. 자본조정
- 현금성자산을 제외한 당좌자산	4. 기타포괄손익누계액
2) 재고자산	5. 이익잉여금
2. 비유동자산	
1) 투자자산	
2) 유형자산	
- 토지	
- 건물	
- 구축물	
- 기계장치	
- 선박항공기	
- 건설용장비	
- 차량운반구	
- 건설중인 자산	
- 기타	
3) 무형자산	
4) 기타 비유동자산	

- 유보금 = 자본잉여금 + 이익잉여금

- 자본잉여금은 자본거래로부터 발생하는 것으로서 자본의 증자나 감자로 인해 변동된 것
- 이익잉여금은 손익거래로부터 발생하는 것으로서 경영활동에 따라 증감되는 것

- 현금성자산 = 현금 및 현금등가물 + 단기투자증권 + 단기금융상품

- 즉, 현금성자산은 현금을 포함하여 현금과 거의 유사한 환금성을 갖는 것으로서 현금을 단기적으로 운용하여 이익을 얻기 위해 투자한 자산을 뜻함.

- 재무상태표 대변의 자본 중 자본잉여금과 이익잉여금으로 구성되는 자기자본으로서의 유보금은 차변의 현금성자산, 당좌자산(현금성자산 제외), 재고자산,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 비유동자산 등의 형성에 기여함.

(2) 유보율

- ▶ 유보율은 유보금(=잉여금)을 자본금으로 나눈 값으로 정의되며 기업의 자기자본 구조를 반영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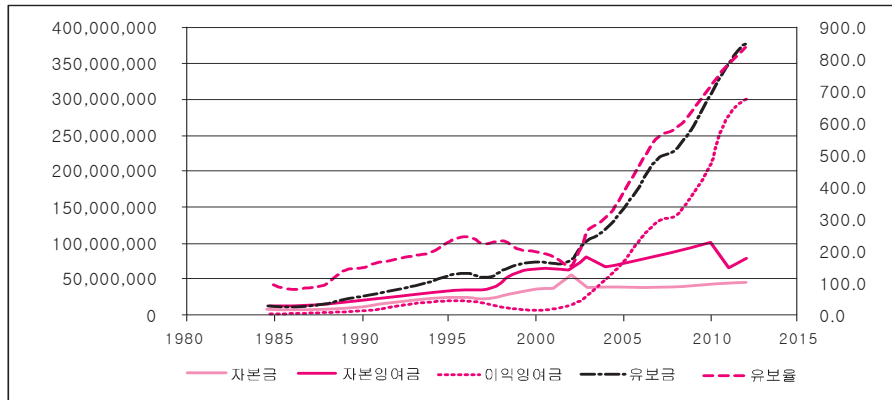
$$\begin{aligned} \text{유보율}(\%) &= \frac{\text{유보금}(=\text{잉여금})}{\text{자본금}} \times 100 \\ &= \frac{\text{자본잉여금} + \text{이익잉여금}}{\text{자본금}} \times 100 \end{aligned}$$

- 유보율은 주주가 투자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서 기업 스스로가 얼마만큼의 자금을 동원하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지표이며,
- 기업의 재무구조 안정성과 설비확장 등의 투자를 위해 어느 정도 기업 내부에 유보가 되어 있는지를 나타냄.
- ▶ 우리나라 비금융업 상장기업의 유보율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감소하다가 2000년대 들어서부터 현재까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의 경우 그 변동성이 심함.
 - 비금융업 상장기업 기준, 전기업의 유보율은 [그림 2-7]과 같이 외환위기 직전연도로서 1996년에 246.8%에서 2002년에는 153.7%로 감소하다가 2012년 현재 832.9%로 크게 증가
 - 대기업의 유보율은 1996년에 257.8%에서 2002년에는 175.0%로 감소하다가 2012년 현재 888.1%로 크게 증가
 - 중소기업의 유보율은 1996년에 112.2%에서 1999년에는 -317.1%로 크게 감소하며 2004년에 -295.2%로 비슷한 수준에서 유지되다가 2012년 현재 294.5%로 크게 증가
- ▶ 한편 유보금 중 이익잉여금이 유보율을 상당히 크게 결정해 왔다는 것은 수익성이 높아지면 유보율도 함께 높아지며 이로 인해 재무구조의 안정성과 투자의 잠재성이 개선된다는 것을 나타냄.
 - [그림 2-7]과 같이 1985~2012년 기간 우리나라 비금융업 상장기업의 유보율 추이는 기업규모에 상관없이 유보금 중 이익잉여금 추이와 거의 동일함.
 - 이익잉여금의 증감은 기업의 경영활동에 따른 손익에 기인함.
 - 따라서 기업의 수익이 증가하면 유보금 중 이익잉여금이 증가되어 유보율이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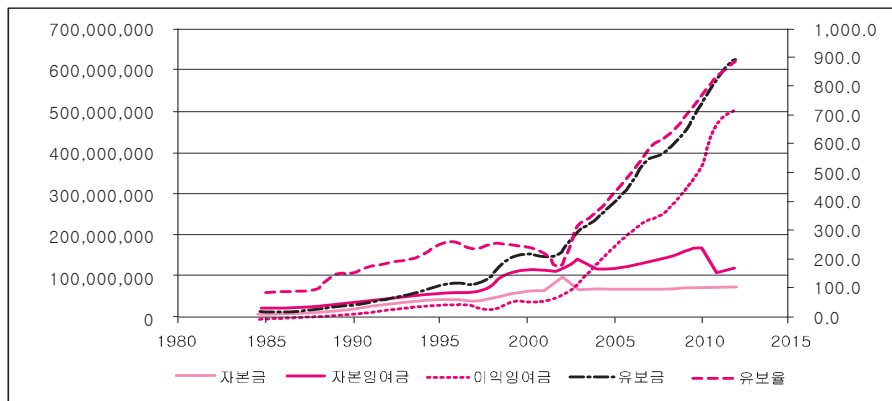
[그림 2-7] 비금융업 상장기업의 자본금, 유보금, 자본 및 이익잉여금, 유보율 추이

(전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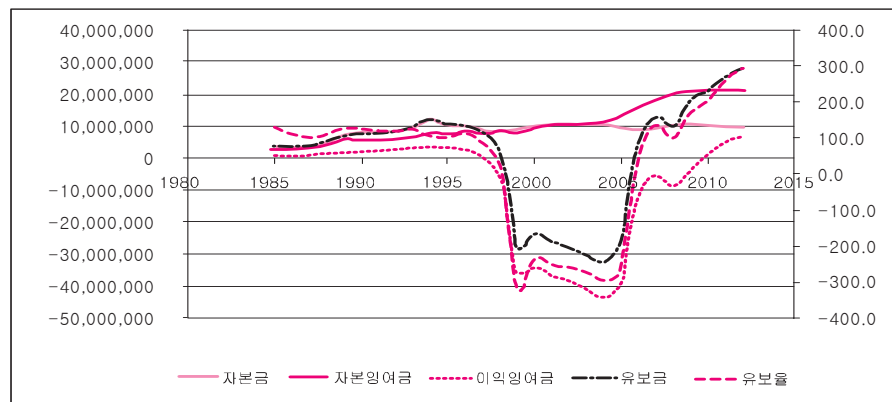
(단위: 천 원, %)



(대기업)



(중소기업)



주: 1) 각 연도별 상장기업 기준

2) 자본금, 유보금: 평균값, 유보율: 가중평균값

자료: NICE평가정보의 기업 재무자료 이용

- 또한 이러한 유보율의 증가는 자본금 대비 유보금의 증가로서 주주가 투자하고 있는 것에 비해 기업 스스로가 자금을 동원하고 있는 것이 더 커졌음을 나타내며 기업의 자기자본 구조가 더욱 개선된 것을 의미함.

- 예로서 [그림 2-7]과 같이 우리나라 비금융업 상장 중소기업의 유보율은 외환위기 직후 1999~2005년 기간 수익성 악화로 인해 -100% 이하로 머물렀음.
- 그리고 이러한 유보금의 증가는 생산에 필요한 유·무형자산 등의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자본이 증가된다는 것을 나타내며 투자의 잠재성이 개선된다는 것을 의미함.

▶ 따라서 우리나라 비금융업 상장기업, 특히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의 유보율이 과거에 비해 2012년 현재 높은 것은 수익성이 높아진 것에 기인되며 재무구조의 안정성과 투자의 잠재성이 높아진 것을 나타냄.

(3) 총자산대비 유형별 자산 비율

▶ 1985~2012년 기간 우리나라 비금융업 상장기업의 총자산 대비 현금성자산 비율과 무형자산 비율은 증가하고 유형자산(토지제외) 비율은 감소하는 추세이며 1997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또한 중소기업의 경우 이러한 추세는 더욱 뚜렷이 나타남.

- [그림 2-8]과 같이 비금융업 상장기업 기준, 전기업의 총자산 대비 현금성자산 비율, 유형자산 비율, 무형자산 비율은 각각 1985년 5.2%, 42.0%, 0.4% → 1996년 5.8%, 36.4%, 0.3% → 2012년 8.4%, 25.5%, 2.4%로 증가, 감소, 증가

- 대기업의 현금성자산 비율, 유형자산 비율, 무형자산 비율은 각각 1985년 5.7%, 36.5%, 0.4% → 1996년 6.3%, 33.3%, 0.3% → 2012년 9.0%, 23.7%, 2.6%로 증가, 감소, 증가

- 중소기업의 현금성자산 비율, 유형자산 비율, 무형자산 비율은 각각 1985년 7.5%, 22.4%, 0.2% → 1996년 6.1%, 25.4%, 0.1% → 2012년 13.8%, 17.4%, 3.3%로 증가, 감소,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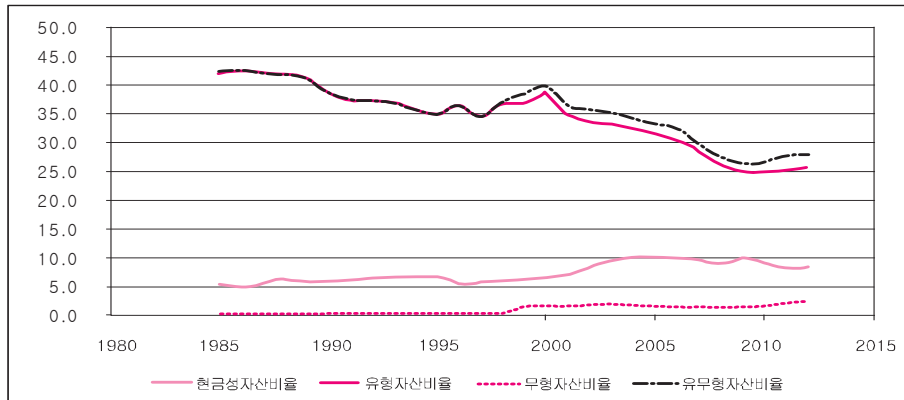
▶ 따라서 과거에 비해 2012년 현재 현금성자산 비율이 높은 자산구성(asset portfolio)은 경제적 불확실성에 따른 예비적 동기에 의해 장기간에 걸쳐 형성됐으며 외환위기를 계기로, 또한 중소기업의 경우 더욱 강화되었던 것으로 판단됨.¹²⁾

12) 기업의 현금보유 동기는 예비적 동기에 국한된 것은 아님. 임경목·최용석(2006)에 따르면 기존의 이론적·실증적 연구들에서 기업의 현금보유 동기는 거래비용 절감 유인(transaction motive), 예비적 수요 이론(precautionary motive), 대리인 관련 이론(agency motive), 과세 기준 및 세율 차이에 의한 현금보유 등 크게 4가지로 정리된다고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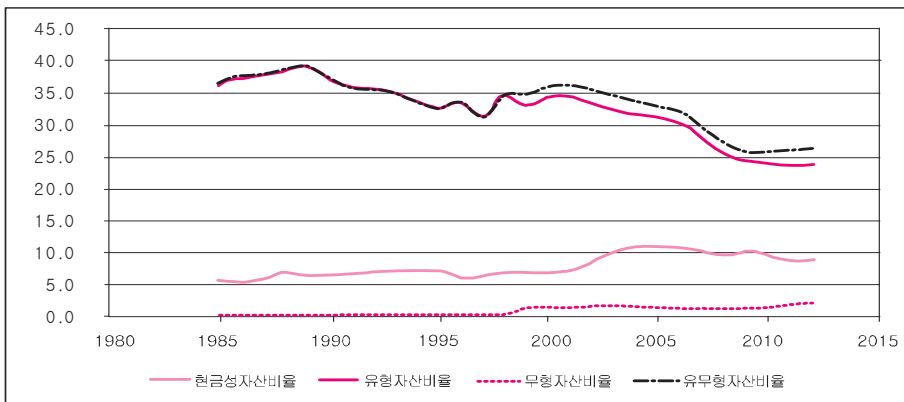
[그림 2-8] 비금융업 상장기업의 총자산 대비 유형별 자산비율

(전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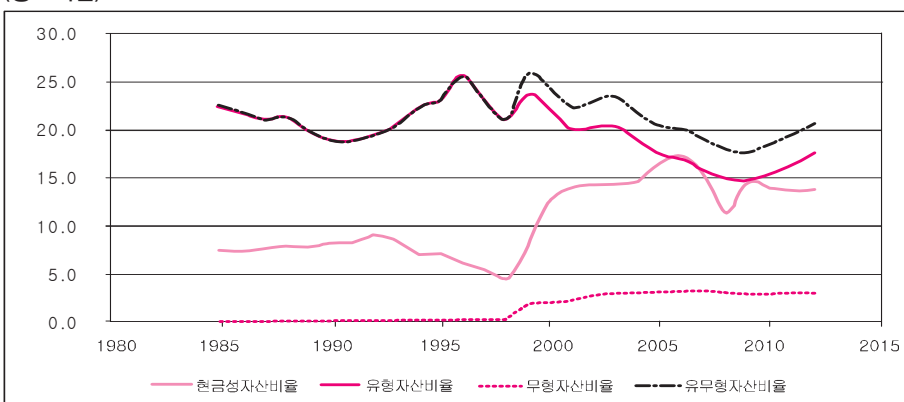
(단위: %)



(대기업)



(중소기업)



주: 1) 각 연도별 상장기업 기준

2) 현금성자산비율, 유형자산비율, 무형자산비율, 유무형자산비율: 가중평균값

3) 유형자산비율, 유무형자산비율: 토지제외

자료: NICE평가정보의 기업 재무자료 이용

- 임경목·최용석(2006)에 따르면 1990~2005년 기간 우리나라 상장기업의 재무자료를 이용한 실증분석에서 영업성과의 불확실성이 높을수록 현금보유 비율은 높아지며 과거에 비해 영업성과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것도 현금보유 패턴 변화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함.
- 그리고 외환위기 이후 영업성과의 불확실성에 대응해 현금보유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은 더욱 명확히 관찰된다고 함.
- Opler et al.(1999)은 실증분석을 통해 기업이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을수록 현금을 많이 보유한다는 것을 보였음.
 - 이러한 점을 인정한다면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의 경우 현금 보유가 높아질 여지가 있음.

▶ 또한 자산구성에서 현금성자산 비율이 높아진 것은 우리나라의 경우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적인 현상이며 또한 우리나라의 현금성자산 비율은 국제적으로도 낮음.

- 기존연구에서 미국의 경우 1980년 10.5% → 2006년 23.2%로 두 배 이상 증가, 아시아 국가들의 경우도 1996년 6.7% → 2006년 12.1%로 약 두 배 증가(김윤경, 2014)
- [표 2-9]와 같이 비금융업 상장사 기준, 2012년 우리나라의 현금성자산 비율은 미국, 일본, 타이완, 유럽연합, G8보다 훨씬 낮은 수준임.

[표 2-9] 비금융업 상장사의 총자산 대비 현금성자산 비율 국제비교

(단위: %)

미국	일본	타이완	유럽연합	G8	한국
23.7	21.4	22.3	14.8	22.2	9.3

주: 1) 총자산 대비 현금성자산 비율은 평균값

2) 2013년 상장사 기준, 2012년 재무제표

자료: 김윤경(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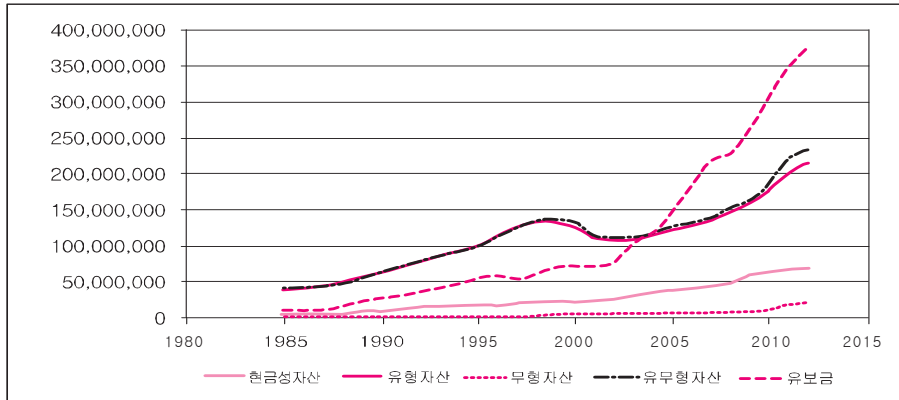
(4) 유보금과 유형별 자산 간의 상관관계

▶ [표 2-10]과 같이 재무상태표 대변의 유보금(=자본잉여금+이익잉여금)이 차변의 현금성자산, 유형자산(토지 제외), 무형자산 보유에 어느 정도 관련성을 가지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관계를 분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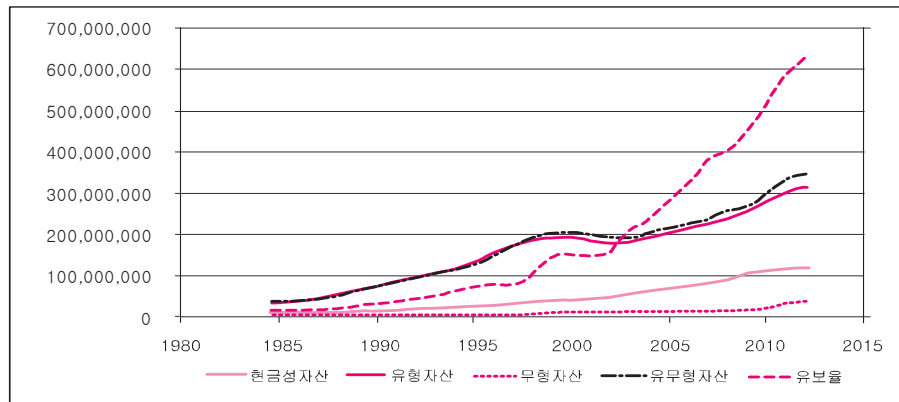
[그림 2-9] 비금융업 상장기업의 유보금과 유형별 자산 간 상관관계

(전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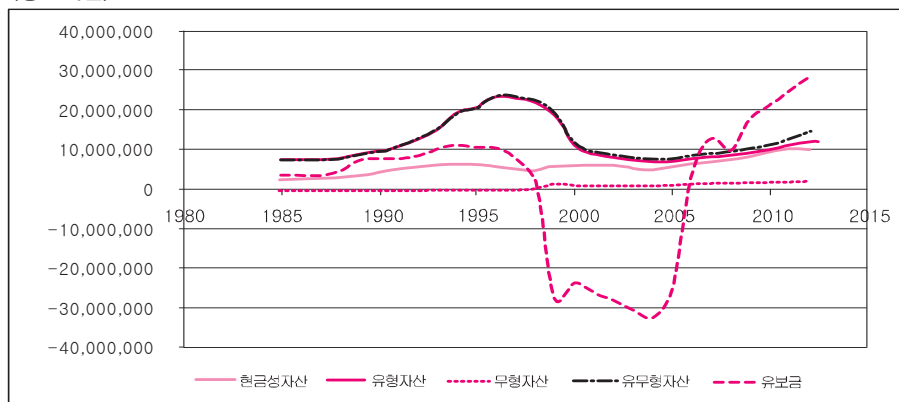
(단위: 천 원)



(대기업)



(중소기업)



주: 1) 각 연도별 상장기업 기준

2) 현금성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유무형자산, 유보금: 평균값

3) 유형자산, 유무형자산: 토지제외

자료: NICE평가정보의 기업 재무자료 이용

- 정부의 2014년 세법개정안 中 기업소득 환류세제가 도입된 배경은 기업들이 유보금을 생산에 필요한 유형자산(토지 제외), 무형자산 보유 등에 사용하지 않고 현금성 자산(현금) 보유에만 사용하고 있다는 것임.

▶ 총량수준(aggregate level)에서 1985~2012년 기간 우리나라 비금융업 상장기업의 유보금과 현금성자산, 유형자산(토지제외), 무형자산은 (+)의 상관관계를 보이며 대기업을 경우도 유사하게 (+)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반면 중소기업의 경우는 유보금과 유형자산만 (+)의 상관관계를 보임.

- [그림 2-9]에서 중소기업의 경우 외환위기 직전연도인 1996년까지 유보금 증가에 따라 유형자산도 증가했고 1997~2005년 기간 유보금 감소에 따라 유형자산도 감소했으며 2006년부터 유보금 증가에 따라 유형자산도 증가

▪ 그러나 이러한 유보금의 증가나 감소에 상관없이 현금성자산과 무형자산은 소폭 등락하며 지속적으로 증가

▶ 기업수준(firm level)에서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1985~2012년 기간과 2000~2012년 기간 우리나라 비금융업 상장기업의 유보금과 현금성자산, 유형자산(토지 제외), 무형자산은 (+)의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났으며 대기업을 경우도 이와 유사하게 나타났던 반면 중소기업의 경우는 상관관계가 거의 나타나지 않음.

- [표 2-10]와 같이 전기업 및 대기업을 유보금과 현금성자산, 유형자산 간 (+)의 상관관계가 상당히 높게 나타났으나, 이에 비해 유보금과 무형자산 간 (+)의 상관관계는 비교적 낮게 나타났음.

[표 2-10] 비금융업 상장기업의 유보금과 유형별 자산 간 상관관계 분석 결과

	전기업		대기업		중소기업	
	1985~2012	2000~2012	1985~2012	2000~2012	1985~2012	2000~2012
유보금	1985~2012	2000~2012	1985~2012	2000~2012	1985~2012	2000~2012
현금성자산	0.7839*	0.7917*	0.8758*	0.8778*	-0.0425*	-0.0527*
유형자산	0.7709*	0.8224*	0.8282*	0.8576*	-0.0385*	-0.0881*
무형자산	0.4541*	0.4598*	0.4928*	0.4952*	-0.0764*	0.0036
유무형자산	0.7820*	0.8311*	0.8346*	0.8612*	-0.0418*	-0.0856*

주: 1) (*)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2) 각 연도별 상장기업 기준

3) 유형자산, 유무형자산: 토지 제외

자료: NICE평가정보의 기업 재무자료 이용

- ▶ 위의 결과를 종합하면 기업의 유보금은 현금성자산 보유뿐만 아니라 생산을 위한 유형자산(토지 제외)과 무형자산 보유에도 사용된다고 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에서 이러한 경향이 뚜렷이 나타난다고 할 수 있음.

(5) 유보금 증가가 유형별 자산 증가에 미치는 영향

- ▶ 황인태·강선민(2011)의 회귀분석 결과에 따르면, 2001~2010년 기간 우리나라 비금융업 상장기업의 유보금 증가는 현금성자산 증가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지 못했던 반면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증가에는 유의하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남.
 - 유보금 100원이 증가할 경우 현금성자산은 변화가 없으나 당좌자산(현금성자산 제외)은 14원, 재고자산은 2원, 투자자산은 17원, 유형자산은 11원, 무형자산은 1원 증가
 - 따라서 다른 자산 증가에 비해 유형자산 증가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크다고 할 수 있으며 무형자산 증가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작다고 할 수 있음.
- ▶ 위의 결과는 정부의 2014년 세법개정안 中 기업소득 환류세제 도입 배경과는 반대되는 것으로서 기업의 유보금 증가는 현금성자산 증가가 아니라 유·무형자산 증가로 이어진다는 것을 나타냄.

[표 2-11] 유보금 증가가 유형별 자산 증가에 미치는 영향

	△현금성자산	△당좌자산	△재고자산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유보금	0.00 (0.00)	0.14 (31.21)***	0.02 (8.73)***	0.17 (21.99)***	0.11 (12.36)***	0.01 (74.24)***
△유동부채	0.06 (12.76)***	0.40 (46.43)***	0.11 (28.97)***	-0.07 (-5.16)***	0.42 (24.86)***	0.06 (28.39)***
△비유동부채	-0.03 (-6.21)***	0.10 (9.66)***	0.01 (2.91)***	-0.38 (-23.40)***	0.99 (51.30)***	0.00 (-0.40)
Adj R ²	3.02%	42.25%	16.37%	15.89%	41.64%	14.80%

주: 1) 2001~2010년 유가증권상장 및 코스닥상장법인을 대상으로 금융업과 관리종목을 제외하며 10년간 계속 상장인 경우로 한정

2) △유형별 자산 = $\alpha_0 + \alpha_1 \cdot \Delta \text{유보금} + \alpha_2 \cdot \Delta \text{유동부채} + \alpha_3 \cdot \Delta \text{비유동부채}$

3) △는 당해연도값에서 직전연도값을 차감한 증분을 뜻함.

4) 당좌자산은 현금성자산을 제외한 값

5) (***)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자료: 황인태·강선민(2011, 12)의 분석 결과를 재정리

(6) 법인세 부담 가중으로 투자위축과 내수 부진 초래

▶ 기업소득 환류세제는 기업의 투자나 임금증가·배당 유인이 없을 경우 오히려 법인세 부담만 가중시킬 가능성이 있음.

- 김우철(2014.09)은 비금융업 기준, 2013년 재무제표 상 경영활동과 실적이 유지된다는 가정 하에서 기업소득 환류세제 신설에 따른 기업들의 세부담 수준을 가상적으로 추정
 - [표 2-12]와 같이 기업소득 환류세제 상 투자공제가 허용되는 과세방식 ㉠에서 기준율은 70%, 투자공제가 제외되는 과세방식 ㉡에서 기준율은 30%로 중간값을 가정
 - 기업들은 과세방식 ㉠, ㉡ 中 세부담이 더 낮은 방식을 선택한다고 가정
 - 전체기업들뿐만 아니라 면세기업들을 제외한 과세기업들의 평균 세액과 평균실효세율을 계산
- [표 2-12]와 같이 기업소득 환류세제 신설로 인해 전체기업들의 평균세액은 3억 2천만 원, 당기순이익 대비 실효세율은 0.54%로 추정
- 이 中 과세기업들의 평균세액은 10억 9천만 원, 실효세율은 1.65%로 더욱 크게 추정

[표 2-12] 기업소득 환류세제 신설에 따른 산업별 세부담

(단위: 억 원)

		전산업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기타
전체	평균세액	3.2	2.9	3.7	3.9	0.6
	실효세율	0.54%	0.38%	1.77%	0.91%	0.21%
과세기업	평균세액	10.9	12.2	6.6	11.6	4.1
	실효세율	1.65%	1.31%	2.32%	2.27%	1.45%

주: 비금융업 기준

자료: 김우철(2014. 9)

▶ 기업소득 환류세제로 인해 기업의 법인세 부담이 증가하면 기업의 투자욕은 위축되어 내수 부진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음.

- Djankov *et al.*(2008)은 법인세 실효세율이 10%p 인하할 경우 GDP 대비 투자 비율(I/Y)은 약 2.2%p 증가한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으며, OECD(2008)는 법인세 명목세율이 35%에서 30%로 5%p 감소할 경우 장기적으로 자본 대비 투자 비율(I/K)은 약 1.9%p 증가한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음.

- 또한 Djankov *et al.*(2008)은 법인세 실효세율을 10%p 인하할 경우 GDP 실질 성장률이 약 1%p 증가한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으며, Lee & Gordon(2005)은 법인세 명목세율을 10%p 인하할 경우 GDP가 약 1.1%p 증가된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음.

▶ 기업소득 환류세제에 따른 법인세 부담 증가는 소비자, 근로자, 주주, 법인 등 경제전반에 걸쳐 다양하게 분산됨.

- 김승래(2009)에 따르면 법인세율 5%p를 인하할 경우 소비부문 17.0%, 노동 8.5%, 배당 15.1%, 유보 59.5%로 세부담 경감의 혜택이 경제전반적으로 다양하게 분산된다고 함.

(7) 개선방안

▶ 기업소득 환류세제의 도입 배경은 기업이 벌어들인 소득을 임금증가, 배당 등 사외유출하지 않고 사내유보하여 현금 보유만 증가시켰다는 것인데 이는 기업의 사내유보와 현금 보유에 대해 그릇된 이해에서 비롯됨.

- 우리나라 기업, 특히 대기업의 사내유보가 과거에 비해 현재 높은 것은 수익성이 높아진 것에 기인되며 재무구조의 안정성과 투자의 잠재성이 높아진 것으로 이는 긍정적인 것임.

- 과거에 비해 현재 현금성자산 비율이 높은 자산구성은 경제적 불확실성에 따른 예비적 동기에 의해 장기간에 걸쳐 형성됐으며 외환위기를 계기로 더욱 강화되었던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자산구성에서 현금성자산 비율이 높아진 것은 우리나라의 경우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적인 현상임.

- 더욱이 우리나라의 현금성자산 비율은 국제적으로도 낮음.

▶ 기업소득 환류세제는 기업의 투자나 임금증가·배당 유인 없이 법인세 부담만 가중시켜 오히려 기업의 투자를 위축하여 내수 부진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으며 과세방식상 문제와 그 목적의 적절성이 부족하여 도입은 철회되어야 함.

- 기업소득 환류세제 도입 배경과는 반대로 현재까지 유보금 증가는 생산에 필요한 유·무형자산 증가에 사용되어져 왔음.

- 기업수준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우리나라의 비금융업 상장기업, 특히 대기업의 유보금과 현금성자산, 유형자산(토지제외), 무형자산은 (+)의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났음.

- 또한 황인태·강선민(2011)의 회귀분석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비금융업 상장기업의 유보금 증가는 현금성자산 증가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지 못했던 반면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증가에는 유의하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기업소득 환류세제가 도입된다고 하더라도 기업의 추가적 투자 유인이 없기 때문에 법인세 부담만 가중되어 오히려 기업의 투자의욕만 저해할 가능성이 있음.
- 한편 앞서 논의한 것과 같이 임금의 하방경직성으로 임금증가 유인도 부족하며 우리나라의 경우 주요 기업들의 지배주주가 경영자이므로 기업의 배당 유인도 적음.
- 기업소득 환류세제는 과세방식상 이중과세, 업종에 상관없는 기준율, 해외투자 공제 제한 등의 문제점이 있음.
- 기업소득 환류세제의 과세대상이 당기소득으로 이는 법인세액을 차감한 금액이므로 이중과세가 발생
- 투자 + 임금증가 + 배당액 등의 기준액(= 당기소득 × 기준율) 산정 시 적용되는 기준율이 기업별, 업종별로 획일화 되어 있는데, 적정유보 규모는 기업, 업종마다 다르기 때문에 개별 기업이 정할 문제임.
- 글로벌 경쟁 심화로 인해 기업의 해외진출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해외투자는 확대되고 있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공제되는 투자를 국내투자에 한정
- 기업소득 환류세제와 유사한 우리나라의 과거, 미국과 일본의 현행 제도 등은 부당한 유보로 발생되는 주주 간 불평등의 해소에 목적이 있는 것과 비교하면, 기업소득 환류세제의 목적이 이와 관계없이 투자, 임금증가·배당에 있는 것은 부적절함.
- 우리나라에서 1991년 도입된 적정유보초과소득세는 배당소득세 회피를 막아 과세 형평을 위한 것으로 그 실효성이 없어 2001년에 폐지되었음.
- 미국의 Accumulated Earnings Tax(AET)는 주주의 배당소득세 회피를 위한 사내유보에 대한 징벌적 조세임.
- 일본의 동족회사에 대한 초과유보금과세제도는 비동족회사와 동족회사의 배당소득 간 과세 형평이 목적인.

제3장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1. 개편내용

▶ 기본공제율 인하, 추가공제율 인상

- 투자와 고용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지방투자 및 서비스업을 지원하기 위해 기본공제율을 인하하고 추가공제율을 인상¹³⁾
- 기본공제율은 기업규모와 투자지역에 따라 적용되는 현행 1~4%에서 0~3%로 1%p 인하
 - 중소기업은 고용감소 시에도 기본공제율을 적용하되, 고용감소인원 1명당 1,000만 원 차감
 - 중소기업은 고용감소 시에도 적용하되 고용감소 1명당 1,000만 원 차감

[표 3-1] 개정안 반영 후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율 변화

(단위: %)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수도권 안	수도권 밖	수도권 안	수도권 밖	수도권 안	수도권 밖
기본공제		1 → 0	2 → 1	2 → 1	3 → 2	4 → 3	4 → 3
		고용감소 시 배제				고용감소 시 허용	
추가공제	일반	3 → 4	3 → 5	3 → 4	3 → 5	3 → 4	3 → 5
	서비스업	3 → 5	3 → 6	3 → 5	3 → 6	3 → 5	3 → 6
합계	일반	4	5 → 6	5	6 → 7	7	7 → 8
	서비스업	4 → 5	5 → 7	5 → 6	6 → 8	7 → 8	7 → 9

- 추가공제율은 현행 3%에서 업종과 투자지역에 따라 1~3%p 인상하여 고용연계 투자, 지방투자 및 서비스업의 투자지원을 강화
 - 서비스업이 지방에 투자할 경우 최고 6% 세액공제 가능
 - 추가공제 우대대상에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대안학교 졸업생 추가

13) 고용투자세액공제는 전년 대비 고용유지가 전제되는 '기본공제'와 고용증가가 전제되는 '추가공제'로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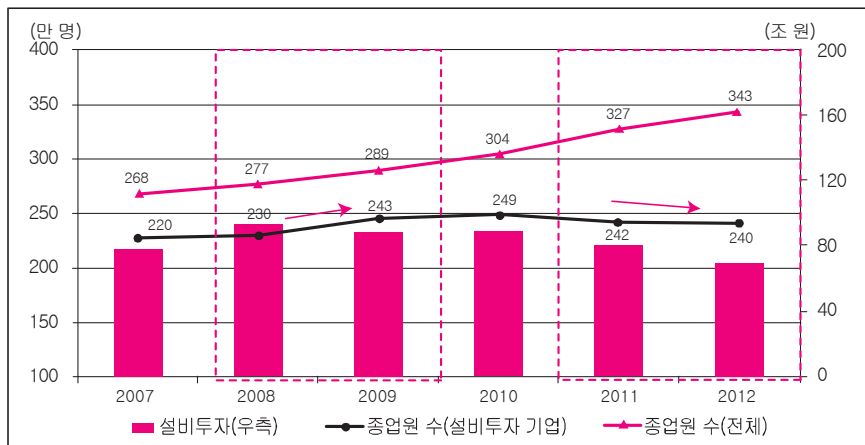
- 추가공제의 한도: 고용증가 인원 × (마스터고 · 직업대안학교 졸업생 2,000만 원, 청년 · 장애인 · 60세 이상 1,500만 원, 기타 1,000만 원)

2. 평가

▶ 고투세 도입 이후 설비투자기업의 종업원 수가 감소하고 있어 고투세의 실효성은 미약한 것으로 평가됨.

- 고투세의 도입취지는 경기침체기에 기업의 투자를 앞당겨 고용을 늘려 소득증가의 선순환 구조를 이루는데 있음.
- [그림 3-1]에서 보듯이 전체 기업의 종업원 수는 2007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고투세 수혜대상인 설비투자기업의 종업원 수는 2010년을 기점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음.
- 고투세가 도입된 2011년과 2012년에는 설비투자자과 종업원 수가 동시에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고투세의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됨.
-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도 설비투자기업의 종업원 수는 증가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고투세의 고용효과는 부정적으로 평가됨.¹⁴⁾

[그림 3-1] 설비투자기업의 고용 추이



자료: 「2013년 세법개정안 분석」, 국회예산정책처, 2013

14) 보다 정확한 평가를 위해 고용에 영향을 주는 기타 요인들을 통제한 후에 분석해야 하지만 고투세 도입 연도가 짧아 회기분석의 어려움이 존재함.

▶ 저임금·단순 근로자를 양산하고 장기고용의 유인이 낮음.

- 추가고용 인원 수에 따라 추가공제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고투세는 저임금·단순 근로자를 양산하고 고용의 지속성을 약화시킴.
- [표 3-2]에서 보듯이 대기업이 1,000억 원을 투자할 경우 추가공제를 한도까지 받기 위해서는 수도권 제조업과 서비스업은 각각 267명과 334명을 고용해야 하며, 비수도권 제조업과 서비스업은 334명과 400명을 고용해야 함.
- 이상의 고용인원을 충족하였을 경우 수도권 제조업과 서비스업은 각각 40억 원과 50억 원, 비수도권 제조업과 서비스업은 50억 원과 60억 원을 받음.
- 이를 연봉으로 계산하면 일인당 1,500만 원에 달하고 있어 고임금 숙련 노동자 고용은 불가능한 상황
- 2년차부터는 직접적인 노동비용 증가로 작용하기 때문에 장기 고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음.

[표 3-2] 대기업: 1,000억 원 투자 시 공제금액 및 고용인원

(단위: 억 원, 명)

		기본공제		추가공제		합계		추가공제에 필요한 고용인원	
		수도권	비수도권	수도권	비수도권	수도권	비수도권	수도권	비수도권
현행		10	20	30	30	40	50	200.0	200.0
개정	제조업	0	10	40	50	40	60	266.7	333.3
	서비스업	10	20	50	60	60	80	333.3	400.0

▶ 고투세 강화는 고용창출 없이 투자만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

- 고투세의 지원대상은 고용창출여력이 있는 기업에 국한되기 때문에 기본공제율이 낮아질수록 신규투자 기업 수와 규모는 감소할 전망
- [표 3-3]에서 보듯이 수혜대상 기업은 고투세가 도입된 2011년에 9,002개에서 2012년에 8,592개로 410개(4.6%) 감소하였음.
- 공제금액에서도 2조 7,442억 원에서 2조 713억 원으로 6,729억 원(24.5%) 감소하였음.
- 기본공제 기업 수는 2011년에 4,216개에서 2012년에 7,715개로 3,499개나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본공제율이 낮아져 기본공제금액은 2조 6,690억 원에서 1조 9,9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6,790억 원(25.4%) 감소하였음.
- 기본공제율을 낮추고 추가공제율을 높인 결과 추가로 고용된 인원은 509명에 그치고 있어 추가공제율 인상으로 인한 고용창출 효과는 낮은 것으로 평가됨.

- 추가공제 기업 수는 2011년에 4,786개에서 2012년에 877개로 3,499개로 감소하였으나 공제금액은 61억 원 증가에 그치고 있음.
- 추가고용 일인당 공제금액이 1,200만 원이라 가정하면, 추가고용인원은 509명으로 고투세 강화로 인한 고용증가 효과는 매우 미약한 것으로 평가됨¹⁵⁾
- 이는 고용창출 여력이 있는 기업이 2012년에 크게 감소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추가공제율의 인상효과가 없다는 반증이기도 함.

▶ 고용창출 여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중소기업의 고용은 오히려 감소

- [표 3-3]에서 보듯이 중소기업과 대기업을 합한 총공제금액은 2011년에 2조 7,442억 원에서 2012년에 2조 713억 원으로 전년 대비 6,729억 원(24.5%) 감소
- 중소기업의 신규투자 기업 수는 크게 줄었으며 감소폭도 대기업에 비해 크게 나타나고 있음.
- 중소기업의 수혜대상 기업 수는 2012년에 7,918개에서 2012년에 7,478개로 5.6% 감소한 반면 대기업은 1,084개에서 1,114개로 2.8% 증가하였음.
- 공제금액은 2012년에 중소기업과 대기업 모두 감소하였는데, 중소기업이 1,022억 원(28.7%) 감소하고, 대기업은 5,707억 원(23.9%) 감소하여 중소기업의 감소폭이 대기업에 비해 4.6%p 크게 나타나고 있음.
- 신규투자를 한 중소기업 중 96.8%(7,039개)가 기본공제만을 받고 있으나, 기본공제율이 하락함에 따라 공제금액은 2012년에 전년 대비 395억 원(13.8%) 감소하였음.
- 추가고용 일인당 공제금액이 1,200만 원이라 가정하면, 추가공제율 인상으로 2012년의 고용은 전년 대비 5,223명이 감소한 것으로 추정됨.
- 따라서 고용창출 여력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기업의 경우 고투세가 강화될수록 투자비용이 크게 상승하여 고용뿐만 아니라 투자도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됨.

▶ 대기업에게도 투자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추가고용 증가효과도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됨.

- 중소기업과 달리 대기업에 대한 기본공제금액이 감소하고 추가공제금액이 증가하기는 했으나, 총 공제금액이 감소하여 투자비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
- 대기업의 기본공제 금액은 2011년에 2조 3,834억 원에서 1조 7,439억 원으로 6,395억 원 감소한 반면 추가공제금액은 44억 원에서 732억 원으로 688억 원 증가에 그치고

15) 일인당 공제금이 1,500만 원은 청년·장애인·60세 이상 기준임.

있음.

- 따라서 대기업의 총 공제금액은 2011년에 2조 3,878억 원에서 2012년에 1조 8,171억 원으로 5,707억 원 감소하여 전년 대비 23.9% 감소하였음.
- 추가공제를 받은 대기업 수는 90개에서 438개로 348개나 증가하였지만, 추가공제금액은 688억 원 증가에 그치고 있어 고투세 강화로 인한 신규고용 창출 효과도 매우 제한적임.
- 추가고용 일인당 공제금액이 1,200만 원이라 가정하면 추가고용인원은 5,733명에 달해 기업당 추가고용인원은 평균 13명에 그치고 있음.¹⁶⁾

[표 3-3] 고용투자세액공제 기업규모별 구성

(단위: 백만원, 개, %, %p)

		전기업		중소기업		대기업		전년대비 증감율		
		2011	2012	2011	2012	2011	2012	전기업	중소기업	대기업
공제액합계 (A)	법인 수	9,002	8,592	7,918	7,478	1,084	1,114	-4.6	-5.6	2.8
	금액	2,744,246	2,071,328	356,490	254,270	2,387,756	1,817,058	-24.5	-28.7	-23.9
기본공제 (B)	법인 수	4,216	7,715	3,222	7,039	994	676	83.0	118.5	-32.0
	금액	2,669,011	1,989,980	285,618	246,078	2,383,393	1,743,902	-25.4	-13.8	-26.8
추가공제 (C)	법인 수	4,786	877	4,696	439	90	438	-81.7	-90.7	386.7
	금액	75,235	81,348	70,872	8,192	4,363	73,156	8.1	-88.4	1,576.7
비 중	기본공제 (B/A)	법인 수	46.8	89.8	40.7	94.1	91.7	60.7	43.0	53.4
		금액	97.3	96.1	80.1	96.8	99.8	96.0	-1.2	16.7
	추가공제 (C/A)	법인 수	53.2	10.2	59.3	5.9	8.3	39.3	-43.0	-53.4
		금액	2.7	3.9	19.9	3.2	0.2	4.0	1.2	-16.7

주: 비중의 전년 대비 증감율은 %p를 의미함.

자료: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국세청

3. 정책건의

▶ 고투세를 舊임투세로의 전환 필요

- 우리나라의 노동수요 탄력성은 여전히 산출탄력성이 가장 크기 때문에 임금보조방식의 고투세보다 생산증가효과가 큰 舊임투세로의 복귀가 요구됨.
- 노동수요는 산출효과(output effect), 요소 간 대체효과(factor substitution effect),

16) 일인당 공제금이 1,500만 원은 청년·장애인·60세 이상 기준임.

노동의 임금탄력성의 크기에 의해 결정됨.

- 조경엽·오테연(2012)의 분석에 따르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노동의 수요탄력성은 1/2수준으로 감소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산출탄력성이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 임금탄력성은 -0.08%에 달해 임금 1% 감소 시 고용은 0.08% 증가하며, 대체탄력성은 0.19%로 추정되어 자본비용이 1% 증가하면 고용은 0.19% 증가할 전망
- 생산이 1% 증가하면 고용은 0.56%로 추정되고 있어 고용은 산출증가에 의해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을 전망

[표 3-4] 노동수요 탄력성

(단위: %)

항목	전 기간	2000년 이후
자기임금탄력성	-0.159	-0.076
대체탄력성	0.398	0.191
산출탄력성	1.130	0.556

자료: 조경엽·오테연(2012)

- 고투세가 임금보조 형식으로 공제되기 때문에 고투세로 인한 고용증가 효과는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앞서 살펴보았듯이 추가공제금액 변화를 기준으로 추정한 2012년 고용변화는 대기업에서 5,733명 증가하였으나 중소기업에서 5,223명 감소하여 총고용인원은 509명에 그치고 있음.

[표 3-5] 고투세 강화에 따른 전년 대비 2012년도 추가공제 및 고용증가

	추가공제액(백만 원)	고용(명)
전기업	6,113	509
중소기업	-62,680	-5,223
대기업	68,793	5,733

주: 1인당 추가공제금액 1,200만 원으로 가정하고 추정하였음.

- 자본사용자 비용의 증가로 투자가 감소하고 생산이 감소하여 오히려 고용이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 대기업의 기본공제 금액이 전년 대비 2012년에 6,395억 원(23.9%) 감소하고 있어 고투세가 증가할수록 투자비용이 증가하고 투자가 감소하였음.

제4장 가업승계 및 창업지원

1. 개요

▶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 및 요건 완화

- 2014년도 세법개정안에서는 국민경제의 기초가 되는 중소·중견기업을 세계일류기업으로 육성하고 원활한 가업승계를 촉진하기 위하여 가업승계 및 창업 지원을 위한 세제개편안을 제시하였는데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음.¹⁷⁾

-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 및 요건 완화

- 적용대상 확대 및 요건 완화
- 가업요건(피상속인 요건) 완화
- 가업승계요건(상속인 요건) 완화
- 사후관리기관 단축 및 의무 완화

- 가업 사전증여 및 창업지원 확대

- 특례적용한도 상향 조정
- 과세특례대상 수증자 요건 완화
- 사후관리 기간 단축 및 의무 완화
- 창업자금·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에서 연부연납 허용

17) 이외에도 영농상속공제의 상속인 요건 완화, 법인전환기업의 가업승계 지원 등의 개정내용이 있지만 본 보고서의 논의에서는 생략하기로 함.

[표 4-1] 가업상속공제제도 관련 주요 개정안 내용

구분	현행	개정안
공제대상	중소기업 및 매출액 3천억 원 미만 중견기업	중소기업 및 매출액 5천억 원 미만 중견기업
공제대상 피상속인	10년 이상 경영(일정기간 이상 대표이사로 재직)	5년 이상 경영(대표이사로 재직)
최대주주 지분보유요건	특수관계자 지분 포함하여 50%(상장은 30%) 이상 보유	현행의 경우뿐만 아니라 1인의 지분이 25% 이상인 경우에도 적용
상속인 요건	- 가업 사전증서(2년 이상) - 1인 단독상속일 경우에만 공제가능	→ 폐지 → 공동상속 허용
사후관리의무	- 사후관리기간 10년 - 세분류 내 동일업종 유지 - 가업용 자산 80% 이상 유지(5년내 90% 이상) - 매년 80% 이상 고용유지, 10년 평균 100%(중견기업은 120%) 이상 유지	→ 사후관리기간 7년 → 소분류 내 동일업종 유지, 중기청 사업 전환승인을 받은 경우 추가 허용 → 폐지(단, 개인기업은 50% 이상) → 매년 고용유지요건 폐지, 7년 평균 100% (중견기업도 100%) 이상 유지

자료: 기획재정부(2014년 세법개정안)

[표 4-2] 가업 사전증여 및 창업지원 확대 관련 주요 개정안 내용

구분	현행	개정
특례 적용한도	가업승계를 위한 주식 사전증여 적용한도는 주식이액 30억 원	가업승계를 위한 주식 사전증여 적용한도는 주식이액 100억 원
특례세율	30억 원 한도에서 5억 원 공제 후 10% 세율로 과세	10% 유지하되 과세표준 30억 원 초과분은 20% 세율 적용
연부연납	가업승계·창업자금 사전증여 시 연부연납 배제(일시에 증여세 납부)	5년간 연부연납 허용

자료: 기획재정부(2014년 세법개정안)

2. 평가 및 개선방안

▶ 2014년 세법개정안에서는 가업승계기업의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가업승계기업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나 향후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

- 2014년 세법개정안에는 2008년 이후 지속된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및 요건의 완화 기조가 반영된 것으로 사료됨.

-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은 중소기업 및 매출액 3천억 원 미만의 중견기업에서 중소기업 및 매출액 5천억 원 미만의 중견기업으로 확대되면서 기존의 완화기조를 계속 유지
- 가업상속공제 피상속인의 경영요건도 현재의 10년 이상 계속 경영하고 일정기간 대표

이사로 재직한 경우에서 5년 이상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경영한 경우로 완화하여, 2009년 개정 이후 처음으로 피상속인의 요건을 완화

[표 4-3] 가업상속공제 주요 내용 개정 연혁

구분	'08년 이후	'09년 이후	'11년 이후	'13년 이후	'14년 이후	'15년 이후
대 상	중소기업	중소기업	중소기업	중소기업	중소기업	중소기업
			매출액 1,500억 원 이하 중견기업까지 확대	매출액 2,000억 원 이하 중견기업까지 확대	매출액 3,000억 원 이하 중견기업까지 확대	매출액 5,000억 원 이하 중견기업까지 확대
요 건	피상속인이 15년 이상 경영할 것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할 것	좌동	좌동	좌동	피상속인이 5년 이상 경영할 것

자료: 김재진(2014)

- 이번 개정안으로 피상속인의 완화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추가적으로 최대 약 276개의 중견기업(일반중견기업, 관계기업 제외)이 가업상속 시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됨.

[표 4-4] 중견기업 매출 현황

단위:개 (%)	1천억 원 미만	1천억 원~2천억 원	2천억 원~3천억 원	3천억 원~5천억 원	5천억 원~1조 원	1조 원 이상	합계
전산업	1,093 (43.6%)	520 (20.8%)	367 (14.6%)	276 (11.0%)	172 (6.9%)	77 (3.1%)	2,505 (100.0%)
제조업	277 (11.0%)	298 (11.9%)	231 (9.2%)	172 (6.9%)	109 (4.4%)	53 (2.1%)	1,140 (45.5%)
비제조업	816 (32.6%)	222 (8.9%)	136 (5.4%)	104 (4.1%)	63 (2.5%)	24 (1.0%)	1,365 (54.5%)

자료: 중소기업청(2013년 중견기업 현황발표, 2013)

- 가업상속공제의 적용대상은 확대되었지만 매출액 5천억 원 이하라는 제한은 아직 남아있으며 이러한 규제는 성장유인을 감소시키는 등 부작용을 가져올 가능성
- 영국, 독일 등 외국기업의 경우 일정 요건¹⁸⁾을 갖출 것을 요구하나 대상 기업의 규모를 제한하지는 않음.
- 규모 제한으로 인하여 인위적 기업 분할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며 오히려 사업 승계 기업의 성장을 제약하는 요인(매출액 5,000억 원 이상의 기업으로의 성장 기피)으로 작용할 수 있음.

18) 독일은 기업의 규모제한은 없으나 사업용 자산이 전체 자산의 90% 이상이어야 하며, 영국도 규모의 제한은 없으며 전문직 또는 천직에 해당하는 가업을 대상으로 함.

- 가업상속공제가 가업상속기업의 성장, 국민경제 증진, 일자리 유지·창출 등 사회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를 고려하여 공제대상의 규모에 대한 규제를 폐지하고 가업상속공제를 모든 기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
- 가업상속공제의 요건을 피상속인 가업영위기간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하고, 지분보유요건도 현행 요건에 추가하여 1인 지분비율이 25% 이상인 경우에도 가능한 것으로 완화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되나 향후 이를 보다 완화할 필요가 있음.
- 기업의 영속성 확보를 위해서는 과거의 기업영위기간보다 미래의 성장가능성이 더 중요한 만큼, 가업영위기간에 대한 제한과 같은 피상속인 요건은 보다 완화하고 대신 사업 및 고용의 사후 관리요건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음.
- 가업상속공제의 상속인 요건이 현재의 상속인 1인 전부 상속에서 공동상속을 허용한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
- 현재의 상속인 요건에서는 2개 이상의 기업으로 구성된 가업이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상속인 1인이 전부 상속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가업상속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었음.
- 상속인 간 공동의 가업운영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경영권을 둘러싼 상속 분쟁을 방지하고 기업 성장을 효과적으로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됨.
- 사후관리 요건도 관리기간이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되고 업종유지의무, 기업용 자산유지의무, 고용유지의무 등이 완화된 면은 긍정적으로 평가되지만 추후 사후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당 요건을 변경하거나 더욱 완화할 필요가 있음.
- 현재의 사후관리 요건은 10년간 자산, 기업, 고용 등의 요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제금액을 추징하도록 하고 있어 다른 나라에 비해 사후관리 요건 기준이 엄격하다는 비판이 있었음.
- * 영국은 별도의 사후관리 요건이 없으며, 독일은 고용요건을 통해서만 사후관리
- 2014년 세법개정안은 이러한 의견을 반영하여 사후관리요건을 완화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되지만 향후 관리기간을 점진적으로 5년까지 낮추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
- 최근의 경제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고용유지 조건도 고용인원에만 집착하지 않고 다양화할 필요가 있음(예: 독일의 경우처럼 매출액 대비 인건비의 평균 비율을 사용 등).
- 업종유지 의무와 관련이 있는 업종변경도 세분류에서 소분류로 완화되었지만, 최근의 급변하는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과 신산업 진출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독일과 같이 업종제한을 폐지하는 방법도 검토할 필요

- 급격한 경제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기업의 탄력적인 경영활동을 제한하지 않도록 사후 관리의 취지는 살리되 사후관리 요건은 신축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음.

* 기업의 편법증여를 우려한다면 편법증여에 대한 감시체제를 강화하고 발견시 패널티를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타당

- 2014년 세법개정안에서 가업상속공제제도의 공제수준에 대한 개정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추후에는 현재의 공제수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할 필요

- 현재는 공제율을 100%로 하되 한도를 두어 가업기간별로 최대 500억 원까지만 공제가 가능하도록 규정(가업기간에 따라 10년 이상: 200억 원, 15년 이상: 300억 원, 20년 이상: 500억 원 등)

- 2008년부터 공제율과 공제한도를 상향조정하여 점진적으로 공제한도를 완화하는 추세였으나 올해 세법개정안에서는 이와 관련한 개정방안은 제시되지 않음.

- 독일 등 주요국은 공제대상 및 공제율에 대한 규정은 있지만 상속공제액에 대한 제한이나 규제는 없는 만큼 상속공제 한도를 폐지하거나 추가 확대하는 방향으로 세법을 개정할 필요

* 2013년 11월~12월에 조사된 가업승계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1,000억 원 이상(한도 폐지 포함)으로 기업상속공제한도를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이 전체 기업의 54.1%로 과반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됨.

*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기업상속공제한도의 확대 의견 비중이 더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매출액 100억 원 이상의 기업 가운데 67.8%가 기업상속공제한도를 1,000억 원 이상(한도 폐지 포함)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응답함.

- 현재 유지되고 있는 가업영위기간에 따른 공제한도 차등적용 대한 규정도 개선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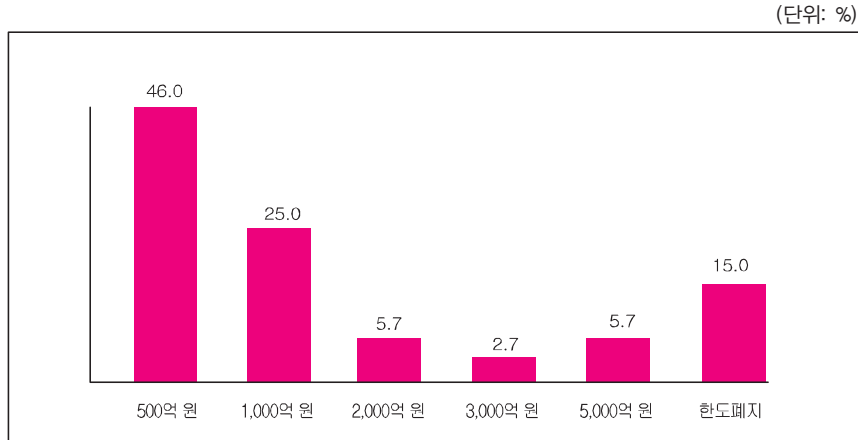
* 가업영위기간에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동일한 공제한도를 적용하고 공제한도를 확대할 필요(500억 원의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가업기간이 20년 이상이어야 하는데 20년의 가업기간 달성은 쉽지 않음)

[표 4-5] 중소 제조업체의 기업연령

모집단 업체 수(개)	5년 미만(%)	5년~9년 (%)	10년~14년 (%)	15년~19년 (%)	20년 이상 (%)	평균 기업연령
109,779	22.3%	28.1%	25.3%	12.4%	11.9%	10.8%

자료: 중소기업청(중소기업실태조사, 홈페이지, 2012)

[그림 4-1] 기업상속공제한도 적정수준 조사



자료: 중소기업중앙회(2013)

[표 4-6] 한국과 독일의 주요 기업상속세제 차이

	한국(2014 세법개정안 반영)	독일
기업규모 제한	중소기업 및 일부중견기업(매출액 5,000억 원 이하)	없음(20인 이상 고용 하한 규정은 있음)
피상속인 및 상속인 요건	피상속인의 경영참여와 대표이사 재직요건 있음(5년 이상 대표이사로 경영)	기업대상기업의 지분만 승계하여 유지하는 것만 요건
사후관리 (고용요건)	- 사후관리기간 7년 - 중소기업, 중견기업 모두 7년간 근로자 평균인원의 전체 평균이 100% 이상 유지	- 5년 혹은 7년을 선택가능 - 5년일 경우 5년간 급여총액이 승계연도 급여총액의 400% 이상이어야 하며, 7년일 경우 7년간 급여총액이 승계연도 급여총액의 700% 이상
공제금액 상한	피상속인 기업영위기간에 따라 공제한도 차등적용(200~500억 원)	없음

자료: 기획재정부(2014년 세법개정안), 정승영(2013)

- ▶ 2014년 세법개정안에서는 기업승계를 위해 증여세 과세특례를 확대하고, 연부연납을 허용하는 개편방안도 함께 제시하였으나 특례적용 한도와 적용대상에 대해서는 개선의 여지가 있음.

- 기업승계를 위한 주식의 사전증여 적용한도를 현행 3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확대하고, 30억 원 이하에 대해서는 현행 10%의 특례세율을 적용하되, 30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0%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개정
 - 현행 세법에서는 30억 원을 초과하는 주식가액에 대해서는 최고 50%의 일반 증여세율이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이 생전 기업승계의 걸림돌로 작용하였는데 2014년 세법개정

안에서 30억 원의 한도를 100억 원으로 확대하였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

- 하지만 기업승계 목적의 사전 증여가 기업을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승계·상속하기 위한 행위라는 측면에서 기업상속공제제도의 취지와 큰 차이가 없는데, 세제지원은 기업상속공제제도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재고해 볼 필요
- 독일, 영국 등은 상속 전 기업승계주식에 대해서 기업상속과 동일하게 세제지원을 해 주고 있다는 점도 주지할 필요
- 따라서 기업승계 증여세의 특례적용한도를 현 기업상속공제 한도액과 동일한 500억 원 수준으로 확대하고 추후 기업상속공제 한도액이 상향조정되거나 폐지될 경우에도 이와 동일한 한도를 적용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
- 특례세율도 2014년 세법개정안의 10%와 20% 차등과세율을 10%로 단일화하여 지원세제를 단순화하고 기업승계의 부담을 줄여서 기업승계 지원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

- 2014년 세법개정안에서는 기업승계 및 창업자금의 사전증여 과세특례 적용 시 일시에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 부담감을 완화하기 위하여 5년간 연부연납을 허용

- 현재는 기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에 대한 연부연납의 적용이 배제되어 일시납부에 따른 기업의 부담이 적지 않은 만큼 기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에 대해 5년간 연부연납을 허용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
- 하지만 향후에는 기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기업에 대해서도 기업상속재산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에 적용되는 연부연납특례를 적용하여 기업상속 시 납세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필요¹⁹⁾
- 기업상속재산에 해당하는 상속세액의 연부연납기간도 추가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예: 기업상속재산의 비중이 50% 미만일 경우에도 3년 거치 후 12년간 분할납부로 단일화)

19) 현재 일반 상속세의 연부연납은 5년으로 되어 있으나 기업상속재산의 경우 기업상속재산이 전체 상속재산의 50% 이상인 경우 3년 거치 12년 연부연납이며, 50% 미만인 경우에는 2년 거치 5년 연부연납으로 특례가 적용됨.

[표 4-7] 현재 세목별 연부연납 기간 구분

세목		연부연납 기간
상속세	일반 상속재산	거치기간 없이 5년간 분할납부
	가업상속재산(전체 상속재산의 50% 미만인 경우)	2년 거치기간 이후 5년간 분할납부
	가업상속재산(전체 상속재산의 50% 이상인 경우)	3년 거치기간 이후 12년간 분할납부
증여세		거치기간 없이 5년간 분할납부

주: 연부연납 대상자는 상속세 납부세액 또는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고, 상속세 또는 증여세 신고기한이나 누락세액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까지 연부연납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연부연납을 신청한 세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를 제공할 수 있는 사람에 한 함.

자료: 국세청, 조세일보, 대한상공회의소(2014)

3. 가업승계를 위한 중장기 세제개편방향

▶ 가업상속 혹은 가업승계를 위한 세제지원과 관련한 문제는 근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상속·증여세제에서 비롯된 것임.

- 높은 수준의 상속세가 국가경제에 미치는 부작용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찾아볼 수 있음.

- 상속세는 과세협력비용을 발생시키고 저축과 투자활동을 위축시키며 자산의 청산을 유도하여 자산 활용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
- 상속세는 국부의 해외유출을 유발하고 세대 간 부의 이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기업의 활동을 제약하여 한 국가의 경제 및 고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 이러한 이유로 상속세가 높은 국가에서는 가업의 승계를 장려하고 상속세로 인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하여 가업상속의 경우 세제혜택을 제공

* 하지만 우리나라 2013년 가업승계 실태조사에 따르면 가업상속의 세제지원에도 불구하고 상속·증여세 등의 조세부담이 가업승계 시의 주된 어려움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조사 대상의 71.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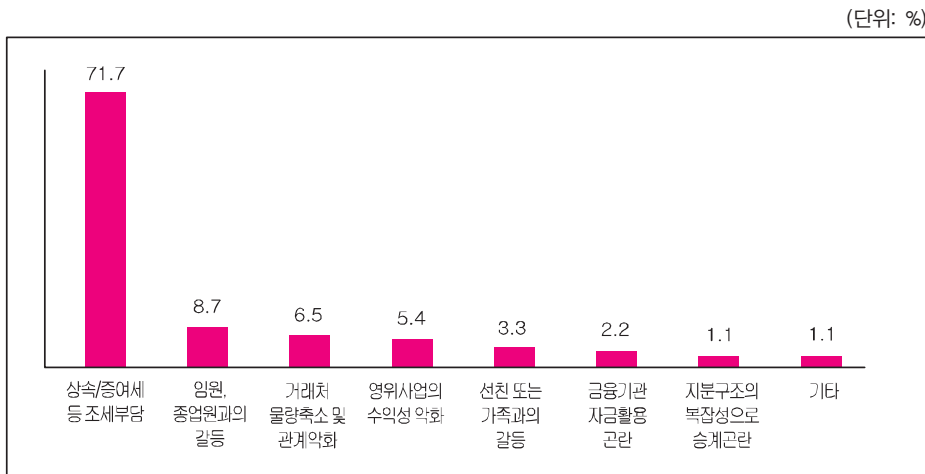
* 뿐만 아니라 응답시기의 법령 하에서 상속·증여세를 부담할 경우 기업경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한 기업도 전체의 76.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 가업의 승계를 위한 세제지원이 있더라도 기본적으로 상속·증여세의 존속은 여전히 가업승계의 가장 큰 걸림돌인 것으로 사료됨.

- 상속세로부터의 세수입이 전체 세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미미하며 가업승계를 위한 세제지원의 도입은 조세행정비용의 상승과 조세체계의 복잡성을 야기

- Entin(2009)는 당시 미국의 상속증여세를 45%를 2001년 이전 수준인 55%로 인상할 경우 GDP는 1,830억 달러 감소하고 근로소득도 1,220억 달러 줄어든 것으로 분석하였음.
- * 반면 상속세를 폐지할 경우 GDP는 1,190억 달러 증가하고, 근로소득은 790억 달러 늘어날 것으로 전망
- Saxton(2006)는 미국에서 상속세로 인하여 2001년까지 감소한 자본스톡은 약 8,470억 달러에 이른다고 보고하고 상속세는 높은 납세협력비용, 경제적 비효율성을 통해서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효과가 있다고 분석하였음.
- 우리나라의 연구에서도 조정엽(2007)에 따르면 상속세가 현행 대비 40% 인하될 경우 상속계층의 후생은 연평균 약 1,378억 원~1,847억 원 증가하고 무상속계층의 후생은 307억 원~4,837억 원 증가하여 총 사회적 후생은 1,685억 원~6,683억 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
- 최근 상속세를 단일세율로 하향조정한 대만의 경우에도 상속세 조정 이후 대만자본이 해외로 유출이 유입으로 전환되고 상속세 신고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²⁰⁾

[그림 4-2] 가업승계 시 주된 어려움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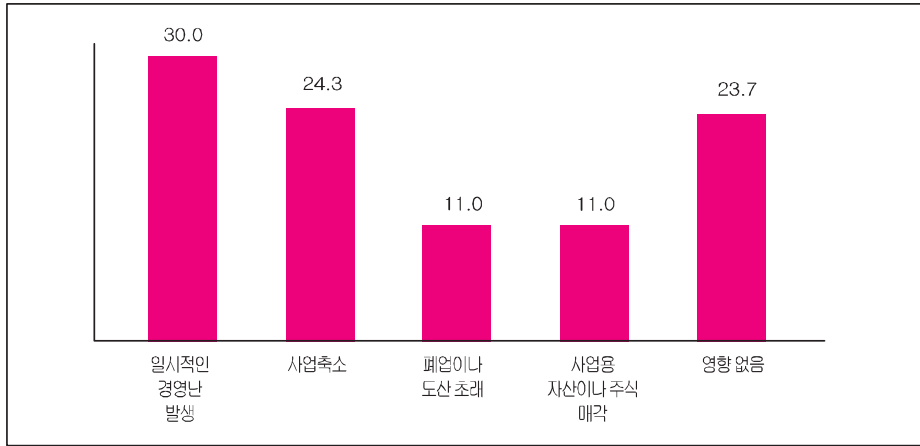


자료: 중소기업중앙회(2013)

20) 대한상공회의소(2014)

[그림 4-3] 가업상속·증여세가 기업경영에 미치는 영향 조사

(단위: %)



자료: 중소기업중앙회(2013)

[표 4-8] 상속·증여세의 경제적 효과

연구자	주요결과
Saxton(2006)	미국에서 상속세로 인하여 2001년까지 감소한 자본스톡은 약 8,470억 달러에 이르며 상속세는 높은 납세협력비용, 경제적 비효율성으로 인하여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조경엽(2007)	상속세가 현행 대비 40% 인하될 경우 상속계층과 무상속계층의 후생은 각각 연평균 약 1,378억 원~1,847억 원, 307억 원~4,837억 원 증가하여 총 사회적 후생은 1,685억 원~6,683억 원 증가
Entin(2009)	당시 미국의 상속증여세율 45%를 2001년 이전 수준인 55%로 인상할 경우 GDP는 1,830억 달러 감소하고 근로소득도 1,220억 달러 줄어들 것으로 분석
Laffer & Winegarden (2012)	미국 테네시 주를 분석한 결과 테네시 주의 상속·증여세가 10년 전에 폐지되었다면 테네시 주 경제는 2010년에 14% 이상 더 성장하였을 것이며 20만~22만 개의 일자리가 더 생겨났을 것으로 분석
Tsoutsoura(2012)	그리스에서 상속세가 기업상속 및 투자결정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결과 높은 상속세로 인하여 기업상속시기에 투자가 40% 급감한 것으로 나타남, 뿐만 아니라 높은 상속세는 기업승계성향을 낮추고, 기업승계가 진행 중인 기업에서도 총 자산성장을 둔화시키며 내부 재정상황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분석됨.

- 우리나라 상속·증여세 부담은 세계 최고 수준(50%)이며 선진국의 경우 이미 상속세를 폐지한 국가들도 많고, 상속세를 유지하는 국가들이라 하더라도 대부분이 우리나라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

- 캐나다는 1972년, 호주는 1977년, 뉴질랜드는 1992년에 상속세를 폐지하였으며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등은 2004년에, 스웨덴은 2005년에 상속세를 폐지
- 대만도 10단계 누진세율(최고 50%) 과세체계를 2010년 이후 단일세율 10%로 전환
- 상속세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들도 우리나라보다는 낮은 수준이며 소득세가 한 번 과세된 재산이 상속·증여될 때 다시 과세하는 것은 이중과세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는 소득세율보다 낮은 수준의 상속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실정
- 요컨대 국제적인 추세를 보더라도 상속·증여세는 점차 폐지되거나 축소되고 있는 상황

[표 4-9] 국세 세목별 구성비

	2012년		2013년	
	실적(조 원)	조세 총수입 대비 구성비(%)	실적(조 원)	조세 총수입 대비 구성비(%)
국세	203.0	79.0	201.9	79.0
소득세	45.8	17.8	47.8	18.7
법인세	45.9	17.9	43.9	17.2
상속증여세	4.0	1.6	4.3	1.7
부가가치세	55.7	21.7	56	21.9
개별소비세	5.3	2.1	5.5	2.2
증권거래세	3.7	1.4	3.1	1.2
인지세	0.6	0.2	0.6	0.2
교통에너지환경세	13.8	5.4	13.2	5.2
관세	9.8	3.8	10.6	4.1
교육세	4.6	1.8	4.5	1.8
종합부동산세	1.1	0.4	1.2	0.5
주세	3.0	1.2	2.9	1.1
농어촌특별세	3.9	1.5	3.6	1.4
과년도수입	5.8	2.3	4.8	1.9
지방세	53.9	21.0	53.8*	21.0
조세 총수입	256.9	100.0	255.7	100.0

주: * 2013년 지방세액은 잠정추정금액(출처: 안전행정부 비공개자료)

자료: 기획재정부(2014) -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마감결과

[표 4-10] OECD 회원국 상속세율과 소득세율 비교

상속세 폐지/미시행	상속세율 10% 이하	상속세율 10% 초과	
()는 폐지년도	상속세율<소득세율	상속세율<소득세율	상속세율=소득세율
캐나다('72), 호주('79), 이스라엘('81), 뉴질랜드('92), 포르투갈('04), 슬로바키아('04), 멕시코('05), 스웨덴('05), 오스트리아('08), 체코('14), 에스토니아(미시행)	이탈리아(4%<43%) 폴란드(7%<32%) 노르웨이(10%<25.75%) 아이슬란드(10%<31.8%) 터키(10%<35%) 그리스(10%<42%) 스위스(주별<13.2%)	슬로베니아(14%<50%)	상속세율>소득세율
		덴마크(15%<25%)	헝가리(18%<16%)
		핀란드(19%<31.75%)	한국(50%<38%)
		네덜란드(20%<52%)	일본(50%<40%)
		칠레(25%<40%)	상속세율=소득세율
		아일랜드(33%<41%)	미국(40%=40%) 프랑스(45%=45%)
		독일(30%<45%)	
		벨기에(30%<50%)	
		스페인(34%<45%)	
		영국(40%<45%)	

자료: 김재진(2014)

▶ 중장기적으로는 기업활동의 영속성 보장, 국부유출 방지, 지속적인 경제성장 등을 위해 상속·증여세의 부담 자체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개선할 필요

- 상속세를 유지시키면서 다시 상속세를 완화하는 효과를 가진 가업상속(승계)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형태의 복잡한 조세제도를 고수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
 - 근본적으로 상속·증여세를 폐지하거나 축소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율적
- 상속·증여세의 폐지 및 축소로 인하여 단기적으로는 세수입의 감소를 예상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가업승계 및 기업의 성장을 촉진시킴으로서 국민경제와 고용이 증가하여 오히려 세수입의 증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임.
- 요컨대 우리나라도 중장기적으로는 상속세를 폐지하고 이를 자본이득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 상속세의 폐지 및 축소는 최근 국제경쟁이 심화되면서 세계적인 트렌드로 자리매김.
 - 상속·증여세를 당장 폐지하는 것이 어렵다면 OECD 평균(26%) 보다 훨씬 높은 상속세율(50%)의 인하를 먼저 추진하고, 이후 점진적으로 상속세를 축소·폐지해 나가는 방법을 고려할 필요
 - 상속세 폐지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고려하여 상속세 대신 상속재산의 가치 상승분에 대하여 자본이득세를 부과하는 방안 검토

제5장 민생안정

1. 개정 배경

- ▶ 가계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서민·중산층의 소비여력이 감소하는 등 전반적으로 사회 활력이 떨어짐.
 - 소득이 증가하는 속도보다 가계부채의 증가세가 더욱 빠름.
 -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중은 2004년 103.4% → 2012년 136.3%
- ▶ 또한 고령화 추세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면서 노후생활 보장이 더욱 필요해짐.
 - 선진국에 비해 국민연금 제도가 오래되지 않아 은퇴생활 대비가 대체적으로 미비
 - 2012년 기준, 만 63세 이상(2014년 만 65세 이상) 국민연금 가입자 207만여 명의 월 평균 국민연금(노령연금) 수령액은 254,230원에 불과함(원종욱 외, 2014).
- ▶ 이에 정부는 금번 세법개정안에서 서민생활안정 지원, 노후소득 보장 강화, 서민 주거안정 지원, 안전·복지 등 개선을 위한 민생안정 관련세제를 개정함.
 - 정부는 2014년 세법개정에서 경제활성화, 민생안정, 공평과세, 세제합리화 등에 역점을 둬.

2. 주요 개정 내용²¹⁾

1) 서민중산층 생활안정 지원을 재산형성 및 세 부담 경감

- ▶ 서민층의 재형저축 요건을 완화(조특법§91의14)하여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함.
 - 총급여 2,500만 원 이하 근로자나 종합소득금액 1,600만 원 이하 사업자의 재형저축 의무가입기간을 완화

21) 기획재정부 2013년 8월 8일자 보도자료 참고

- 또는 중소기업 재직 고졸 청년근로자(15~29세)를 대상으로 함.

[표 5-1] 서민층의 재형저축 요건 완화

구분	현행	개정안
주요 내용	재형저축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서민층에 대하여 의무 가입기간 요건 완화
공제대상	총급여 5,000만 원 이하 근로자, 종합소득 금액 3,500만 원 이하 사업자	좌 동
납입한도	연간 1,200만 원(분기별 300만 원)	좌 동
의무 가입기간	7년	서민층① 또는 ② : 7년 → 3년 ① 총급여 2,500만 원 이하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금액 1,600만 원 이하 사업자 ② 중소기업 재직 고졸이하 청년 근로자 (15~29세)
적용기한	2015. 12. 31.까지 가입	좌 동

자료: 기획재정부

▶ 중산층의 상속·증여세 공제를 물가수준 등을 감안하여 현실화함.

- 부모 봉양 지원 및 명목가치의 상승을 반영하기 위하여 증여공제액을 상향 조정함 (상증법 § 53).
- 다자녀 · 연로자, 장애인 가구의 특성이 반영되고 부모 봉양에 대한 인적공제가 일괄 공제(5억 원)보다 높게끔 개정됨.
 - Max(5억 원, 기초공제+인적공제)

[표 5-2] 상속·증여세 공제액 조정

구 분		현 행	개정안
상속공제	자녀	3천만 원	5천만 원
	연로자 장애인 · 미성년자	3천만 원(60세) 年 500만 원×잔여연수*	5천만 원(65세) 年 1천만 원×잔여연수*
증여공제 (10년 합산)	자녀→직계존속 기타 친족	3천만 원 500만 원	5천만 원 1천만 원
금융재산 상속공제		Min(20%, 2억 원)	Min(20%, 3억 원)

주: *통계청이 고시하는 기대여명 2014년 기준으로 장애인은 78세(여성 84세), 미성년자는 19세까지의 잔여연수²²⁾

자료: 기획재정부

22) 미성년자 연령을 20세에서 19세로 낮춤.

- 주택·금융재산 상속공제 공제율과 공제금액을 상향 조정(상증법§ 22, § 23의 2)
 -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자녀를 지원하기 위해 10년 이상 동거한 무주택 자녀의 주택상속 공제율을 40%→100% 확대 (공제한도 5억 원 유지)
 - 금융재산 상속공제 한도를 2억 원→3억 원으로 상향 조정
-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자녀를 지원하기 위해 10년 이상 동거한 무주택 자녀의 주택상속 공제율을 확대
 - 40%→100% (공제한도 5억 원 유지)

▶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 우대공제율의 적용기한을 연장함.

-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 공제 우대공제율 적용기한을 2년 연장하고 세액공제율을 확대(2016년 말까지)

[표 5-3]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 우대공제율

구분	현행	개정안
주요 내용	신용카드 등 매출에 대한 VAT 세액공제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 공제 우대공제율 적용 기한 2년 연장
공제대상 사업자	- 간이과세자 - 소매, 음식, 숙박, 미용·육탕, 여객운송업, 입장권 발행업 등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좌 동
공제대상 결제수단	-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 직불카드, 선불카드 등	좌 동
세액 공제율	- 음식·숙박업 영위 간이과세자 : 2% ('14년 말까지 2.6%) - 기타 개인사업자 : 1% ('14년 말까지 1.3%)	- 음식·숙박업 영위 간이과세자 : 2% ('16년 말까지 2.6%) - 기타 개인사업자 : 1% ('16년 말까지 1.3%)
공제한도	500만 원	좌 동

자료: 기획재정부

2) 노후소득보장 강화 등

▶ 사적연금 가입을 높이고 근로자의 노후소득을 확보 강화하기 위해 세액공제 대상 퇴직연금 납입한도를 300만 원 추가 확대함(소득법 §59의3).

- 현행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400만 원 한도의 세액공제대상에 퇴직연금 한도 300만 원을 추가함.

[표 5-4] 세액공제대상 퇴직연금 납입한도 확대

구분	현행	개정안
주요 내용	연금계좌(연금저축+퇴직연금)에 납입한 금액의 12%를 세액공제	좌 동
세부 내용	세액공제대상 연금계좌 납입한도: 납입금액 기준 연 400만 원	세액공제대상 퇴직연금 납입한도 확대 -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와는 별도로 퇴직에 납입하는 금액은 연 300만 원 추가

자료: 기획재정부

- ▶ 소득수준별로 차등과세하기 위해 퇴직소득 과세방식 개선(소득법 §48, §55)
- 정률공제(40%)를 폐지하고 퇴직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공제하여 과세형평 제고

[표 5-5] 퇴직소득 과세방식 개선

구분	현행	개정안	
퇴직소득 과세방식 (①~④순서로 계산)	① 퇴직소득 - 근속공제 - 정률공제(40%)	① 퇴직소득 - 근속공제 * 정률공제(40%) 폐지	
	② (연분) ①×5*÷근속연수 * 연분연승 적용비율	② (연분) ① × 12 ÷ 근속연수	
	③ ② × 기본세율(6~38%)	③ (② - 차등공제) × 기본세율(6~38%)	
		환산급여	차등공제
		1,000만 원 이하	환산급여의 100%
		3,500만 원 이하	1,000만 원+(1,000만 원 초과분의 90%)
		7,000만 원 이하	3,250만 원+(3,500만 원 초과분의 70%)
		1.2억 원 이하	5,700만 원+(7,000만 원 초과분의 50%)
		2억 원 이하	8,200만 원+(1.2억 원 초과분의 30%)
		2억 원 초과	10,600만 원+(2억 원 초과분의 15%)
	④ (연승) ③×근속연수÷5	④ (연승) ③ × 근속연수 ÷ 12	

자료: 기획재정부

- ▶ 퇴직금의 일시금 수령에서 연금수령으로 유도하기 위해 연금소득세액 산정방식 변경(소득법§129, 소득법§14, 소득령§42)
- 연금계좌에 입금한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을 경우 30% 세액 경감

[표 5-6] 연금소득세액 산정방식 변경

구분	현행	개정안
연금소득 산정방식	퇴직금을 연금계좌에 입금하는 경우 퇴직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함. ※ 이연퇴직소득, 이연퇴직소득세: 퇴직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한 퇴직소득과 해당 퇴직소득세	좌 동
	연금계좌에 입금한 퇴직금을 수령하는 경우 과세방식 연금 수령 시 - 분리과세 기준금액(1,200만 원) 이하 분 : 3% 분리과세 - 분리과세 기준금액 초과분 : 이연퇴직소득세 징수 이연퇴직소득세 $\times \frac{\text{분리과세기준금액초과분}}{\text{이연퇴직소득}}$	연금계좌에 입금한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 시 30% 세액 경감 ○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액: 이연퇴직소득세 $\times \frac{\text{연금수령액}}{\text{이연퇴직소득}} \times 70\%$
	일시금 수령 시	
	- 이연퇴직소득세 징수 이연퇴직소득세 $\times \frac{\text{일시금수령액}}{\text{이연퇴직소득}}$	좌 동

자료: 기획재정부

3. 문제점 및 개선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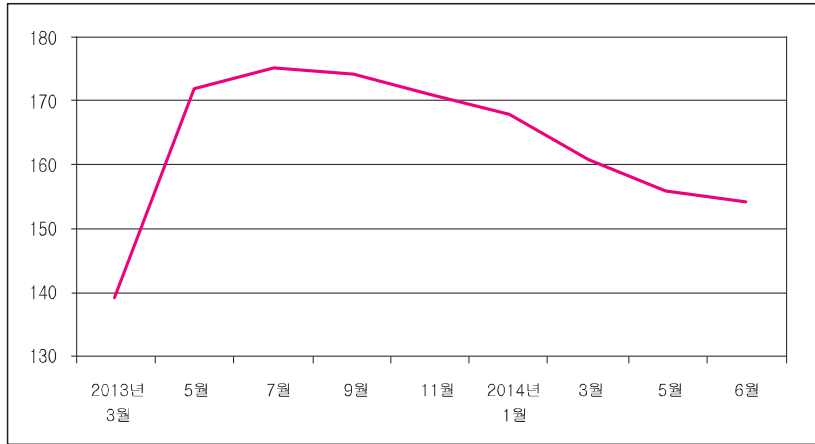
1) 서민·중산층의 재산형성의 현실적 어려움

▶ 재형저축 대상자의 기준소득을 현실화해서 실효성 제고시킬 필요성

- 실제 장기 납입이 가능한 중장년층의 경우 대체로 총소득(급여)이 5천만 원이 넘어 가입자격을 얻지 못함.
- 반면, 가입자격이 있는 젊은 층은 단기 금융상품을 선호하기 때문에 실제 재형저축 활동계좌 수는 감소 추세

[그림 5-1] 은행권 재형저축 활동계좌 수 변동 추이

(단위: 만 계좌)



자료: 은행연합회

- 재형저축은 다른 금융상품과 비교해 볼 때 경쟁력이 높지 않으므로 가입대상 기준을 완화할 필요 있음.

- 소득수준이 낮은 서민들일수록 고금리 상품을 선호하는 경향
- 소득공제 장기펀드나 정기적금 특판 상품이 재형저축보다 매력적일 수 있음.
- 신입직원은 전년도 소득 기록이 없으므로 가입할 수 없음.

2) 상속·증여세의 실질적 개선 필요

▶ 상속세를 통한 부의 집중 억제기능이 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세수확보에도 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고, 더군다나 소득세와의 이중과세의 문제가 있음.

- 2013년(잠정) 기준, 전체 세수(33.6조 원)에서 상속증여세(0.0995조 원)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0.3%에 불과

- 완전포괄주의의 상속세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재산권과 상충될 수 있음.²³⁾

▶ 많은 선진국에서는 상속·증여세를 폐지 또는 축소하여 자본이득세로 전환을 도모하고 있음.²⁴⁾

23) 최명근(2006)

24) 송원근 외(2013)

-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영국, 미국, 스웨덴 등의 국가들에서는 상속증여세를 폐지하거나 대폭 축소하는 수순을 밟고 있음.

▶ 우리나라에서도 피상속인의 유산보유기간 중에 발생한 자본이득에 대한 적정과세를 하는 자본이득세로의 점진적 시행을 할 필요성 있음.

- 과세유형을 유산과세에서 취득과세형으로의 전환과 함께 전반적 조세 인프라 개선이 있어야 할 것임.

3) 조세의 수평적 형평성 미흡

▶ 사적연금 가입을 제고시키기 위한 퇴직연금 납입한도 및 퇴직소득의 연금화 유도는 소비 진작을 통한 경제활성화의 취지와는 다소 거리가 있음.

- 현행 세액공제대상 연금저축을 포함한 퇴직연금 400만 원 한도기준을 개정안에서 퇴직연금 300만 원 추가 확대의 실시는 오히려 저축을 늘리는 유인을 제공하는 것임.

▶ 근로자의 퇴직소득 과세 시 정률공제를 퇴직급여에 따른 차등공제는 이미 누적된 퇴직소득에 대해 기간 구분없이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합리적이 못함.²⁵⁾

- 현행 공무원 퇴직수당의 경우에는 2002년 이후 발생분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등 퇴직소득 발생에 따른 기간 구분을 하고 있는데 비해 형평적이지 못함.

- 한편, 퇴직자의 세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에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 강화라는 취지에 상충됨.

▪ 예를 들어, 총급여 1.2~2억 원 이하 근로자의 퇴직금은 30%, 2억 원 초과 근로자에게는 15% 공제율

▪ 따라서 총급여 1.2억 원 이하인 근로자의 실효세율은 낮아지고 초과하는 근로자의 실효세율은 증가하게 됨([그림 5-2] 참고).

▶ 이는 조세의 수직적 형평성 기준에 부합하는 조치일지 모르나 수평적 형평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미흡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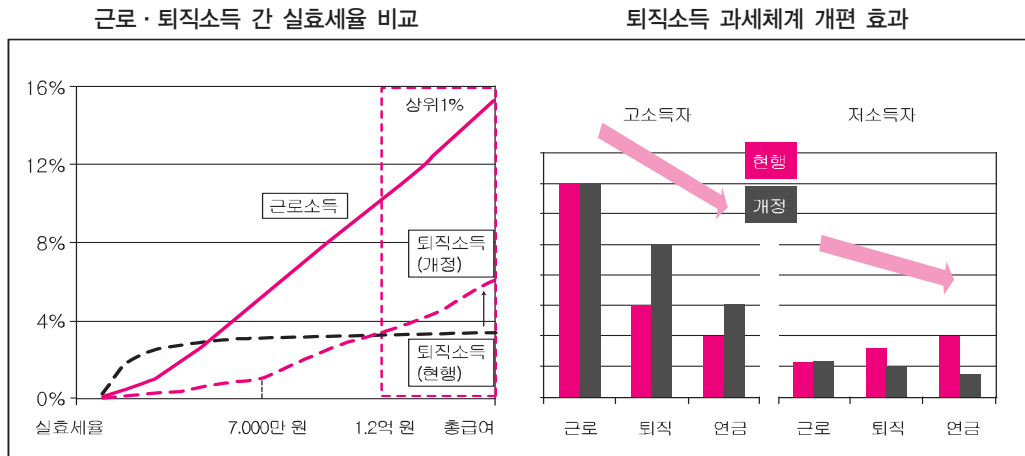
25) 전경련(2014) 참고

- 전체 근로자의 약 36%는 실효세율이 “0”이기 때문임.
-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라는 조세 형평성 관점에서 보면 미흡한 조치임.

▶ 이번 세법개정안의 고소득자 기준의 일관성이 미흡함.

- 이번 세법개정안에서는 고소득자 기준 총급여를 2억 원으로 설정했지만, 퇴직소득 세에 대해서는 총급여 1.2억 원을 기준으로 삼음.²⁶⁾

[그림 5-2] 근로 퇴직소득 간 실효세율 비교



출처: 기획재정부

▶ 한편 자영업자, 부동산임대업자들은 상대적으로 감세 혜택을 받게 됨.

- 음식 · 숙박업 등 자영업자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 우대공제율을 2016년 말까지 연장
 - 음식 · 숙박업 영위 간이과세자 세액공제율 2%→2.6%
 - 기타 개인사업자 1%→1.3%
- 비과세 · 감면제도 축소 등 정부가 표방한 세원양성화 틀에서 볼 때, 그리고 자영업자 소득과악률을 제고해야 하는 측면에서 볼 때도 적정하지 않음.²⁷⁾
- 부동산임대업자의 세금 인하
 - 주택임대소득 연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2016년 말까지)

26) 여기서 ‘총급여’는 연봉을 의미함.

27) “지난 7월 열린 ‘2014년 비과세 · 감면제도 정비방향 공청회’에서 이번 제도에 대해 세원 양성화 등 제도 목적 달성, 영세사업자에 대한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등을 이유로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었다”(뉴스웨이 2014년 8월 6일자, [2014세법개정안]영세 개인사업자, 신용카드 부가가치세 공제 적용기한 연장).

- 주택임대사업 손실 금액을 소득공제 시 근로소득 포함 다른 소득에서 차감해 줌.

▶ 고소득 직장근로자들에게는 세부담이 늘어나는 반면,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증세는 거의 없으므로 조세형평성 문제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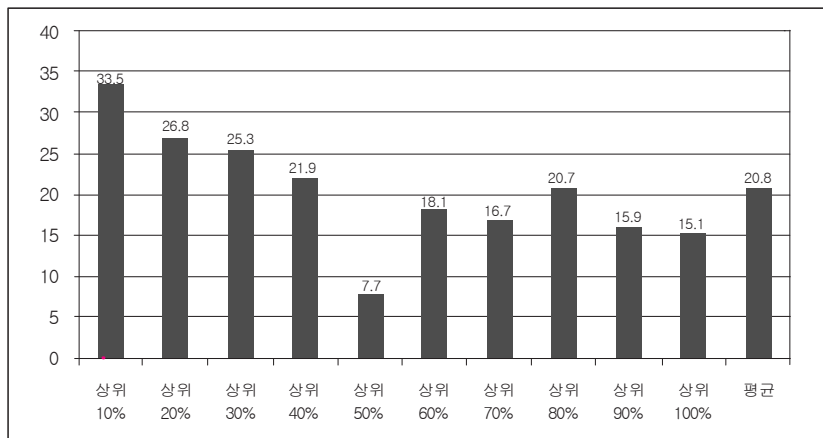
- 8,800만 원을 초과 근로소득세 부담자보다 종합소득세 부담자의 비율이 더 높음.

- 근로소득세의 경우 전체 근로소득세 부담자 15,768천 명 중 149천 명으로 약 0.9%이지만 종합소득세의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부담자 4,352천 명 중 180천 명으로 약 4.1%를 차지함.²⁸⁾

-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직장근로자의 경우에는 소득이 고스란히 노출되는 반면,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소득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음.

- 2012년 기준 전체 자영업자 소득탈루율은 평균 20.8%이고, 이 가운데 상위 10%의 고소득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33.5%임.

[그림 5-3] 자영업자 소득탈루율 추정(2012년)



자료: 신영임 외(2014), 국회예산정책처(2014)에서 재인용

4. 민생부문 개정안 총평

▶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민생안정부문은 서민·중산층의 생활안정 지원, 노후소득보장 강화, 서민 주거안정 지원, 안전·복지 등 생활여건 개선 등 서민·중산층의 전반적 생활향상을 도모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보인다고 평가할 수 있음.

28) 국회예산정책처(2014) 참고

- 서민층의 재형저축 의무가입기간을 완화
- 중산층의 상속·증여세 공제를 물가수준 등을 감안하여 상향조정하고 가구의 특성을 반영하는 인적공제를 확대
-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 공제 우대공제율 적용기한을 2016년 말까지 2년 연장하고 세액공제율을 확대
- 노후소득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세액공제대상 퇴직연금 납입한도를 추가·확대함.
- 급속한 고령화를 감안하여 퇴직금 연금 수령으로 유인하기 위해 연금소득세액 산정 방식 변경함.

▶ 서민·중산층의 실제적 세부담 경감이나 생활향상을 크게 느낄 수 있는 획기적 개정방향이라고 보기 어려움.

- 특히 이중과세 또는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제도를 폐지하려는 노력보다는 기존의 세율인하 또는 세금공제한도 확대 등 근본적 변화가 나타나지 않음.
 - 예컨대 상속·증여세의 인적공제 확대나 주택·금융재산에 대한 상속공제 공제율을 상향조정하는 것과는 달리, 근본적으로 상속·증여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로의 전환을 점진적으로 시행해야 할 필요성 있음.

▶ 또한 저소득층, 노년층에 대한 지원확대에 초점을 맞춘 것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근로소득자 위주로 세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에 고소득 자영업자와의 조세 형평성 문제가 있음.

- 저소득층 노년층에 대해서는 다른 복지제도와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중복 지원되지 않게 점검할 필요
- 자영업자의 소득과약률을 높여 근로소득자와의 조세형평성을 제고

제6장 공평(公平)과세

1. 개정 배경

- ▶ 박근혜 정부 2기 경제팀이 발표한 금번 세법개정안은 부진한 경기회복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이에 호흡을 맞춰나갈 사회여건 조성에 초점을 맞춤.
 - 정부는 ①세계경제의 회복세 둔화와 ②세월호 사고에 따른 내수침체 및 ③기업 성과가 가계소득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 하에, 체감경기가 부진으로부터 탈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세법개정을 추진
 - 매우 빠른 고령화 추세²⁹⁾로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상당량의 가계소비를 창출하는 고령층의 빈곤화³⁰⁾로 소비여력 또한 감소하면서, 경기회복에 엃박자를 내는 위축된 사회여건에 대해서도 정부는 크게 우려
- ▶ 이러한 목표 달성의 일환으로, 정부는 공평하고 원칙 있는 세제를 실현하여 경기회복의 건실한 토양을 조성하고 추진력을 불어넣고자 세법개정안의 기본 방향 중의 하나로 ‘공평과세’를 추진하기에 이룸.
 - 세법개정안의 4대 기본 방향: ‘경제활성화’, ‘민생안정’, ‘공평과세’, ‘세제합리화’
 - ‘공평과세’는 그간의 과세정책 가운데 이미 목적이 달성된 정책, 효과가 미미한 정책, 형평성을 저해하는 정책들에 적극 대응하여 비과세·감면 정비 및 세원투명성 제고, 역외탈세 방지 강화, 신규세원을 발굴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음.

2. 총평

- ▶ 공평과세 세법개정안은 옳은 방향성을 지니고 있음.

29) ‘고령화→초고령화’ 사회 진입 소요기간: 한국 26년, 일본 36년, 미국 94년, 독일 154년

30) 상대적 빈곤율(% , 전체/고령층): 한국(’11) 14.6/45.6, OECD(’12) 11.3/11.3

- 비과세·감면 정비, 세원투명성 제고, 역외탈세 방지 강화, 신규세원 발굴은 과세형평을 맞추고 건전한 경제활성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수적인 조치들

▶ 본 개정안의 방향성은 옳지만 ‘기간 연장 없는’ 항구적 일몰제의 과감한 추진은 후퇴한 흔적

- 현재도 계속해서 비과세·감면 유예 의원입법안이 국회에 쌓여가고 있는 상황에서, 비과세·감면 제도의 원활한 정착과 모자란 세수 안정을 위해 ‘기간 연장 없는’ 항구적 일몰제의 과감한 추진은 매우 중요

- 그러나 이번 세법개정안을 마련하면서 일몰 예정인 53개 항목 중 6개만을 계획대로 종료시키고, 나머지 47개 항목은 비과세·감면 제도의 일몰 기한을 연장하거나 재설계 또는 내용정비를 통해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

- 이번 비과세·감면 제도의 일몰 연장이 소비를 살리기 위한 목적으로 보이지만, 원칙적으로 비과세·감면은 일몰 도래 시 과감히 정비하여 특히 비과세·감면 혜택 대상인 한계기업들에게 더 이상의 퍼주기식 지원이나 연명 목적의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함.

▶ 비과세·감면 제도의 일몰이 충분히 추진되지 못했다는 것은 세수 확충은 물론 공평과세 실현에도 걸림돌로 작용할 우려가 큼.

- 향후 2017년까지 18조 원의 세수 마련이라는 정부의 목표치 달성을 위해 지금이 매우 중요한 시점

- 정부 및 국회에 따르면 2014년을 기점으로 일몰이 도래하는 비과세·감면 제도는 총 53개로 그 규모는 약 7조 8,000억 원에 달함.

- 당초 2014~2015년에 걸쳐 2년 동안 줄이기로 계획한 비과세·감면 규모는 2조 7,000억 원이나, 올해 비과세·감면 규모가 4,000억 원에 그칠 전망이어서 내년이 있긴 하지만 목표 달성률이 14.8%에 불과할 것으로 예측됨.

- 박근혜 정부는 5년 임기동안 비과세·감면을 정비하여 복지정책의 재원으로 쓰일 총 18조 원의 세수를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마련
- 2013년의 경우 14조 4,000억 원(15조 3,000억 원의 비과세·감면 규모 계획 대비 94.1%)을 세법개정안을 통한 비과세·감면 제도 정비로 달성하였음.

▶ 아직 일몰이 도래하지 않은 비과세·감면 제도에 대해서는 제도 개정 시 세법개정안의 취지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시 됨.

- 예컨대, 국외자회사 배당금에 대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의 정비는 내수진작 유도라는 차원에서는 이해되지만, 국제적 시각에서 바라봤을 때 공평과세 취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국내기업들의 해외진출 시 세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기업경쟁력을 저해하여 오히려 본 세법개정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기업투자 및 경제활성화라는 캐치프레이즈(catchphrase)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음.

▶ 한편 공평과세 세법개정안에서 세원투명성 제고 및 역외탈세 방지 강화를 위한 정부의 의지가 분명히 드러나고는 있지만, 고질적인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루·탈세에 따른 체납세금의 징수 달성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할 것임.

- 차명계좌 제보자에 대한 포상금 인상³¹⁾ 및 조세범에 대한 공소시효 연장³²⁾ 등 세원 투명성 제고 및 역외탈세 방지 강화 방안은 정부가 수조 원의 세수 부족으로 재정난에 봉착해 있는 가운데 탈세 예방 및 체납세액에 대한 일정 수준의 징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이에 머물지 않고 고소득 자영업자의 소득과약 등을 통해 탈루·은닉 세원을 정상화시키는 지속적인 노력이 강화될 필요

- 2009년 기준 자영업자의 소득과약률은 51%를 기록(미국과 일본은 80% 수준), 동기간 기준 근로자의 소득과약률(75.4%)과 20%p 이상의 격차가 발생하며 여전히 근로자 소득의 투명도에 못 미치고 있는 실정³³⁾
- 2005년 12월에서 2009년 5월 사이 고소득 자영업자의 평균 세금탈루율은 48%로 거의 50%에 육박하고 있으며, 고액현금이 오가는 부동산임대·호텔·여관·스포츠센터·주점·사우나 업종의 경우 탈루율은 62~98%까지 치솟음.³⁴⁾

3. 세부 개정안 평가 -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를 중심으로

▶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의 정의와 도입 목적

-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는 해외에 있는 자회사나 손자회사로부터 배당금을 받은 내국법인 모회사(이하 국내모회사)가 법인세를 낼 때, 외국정부가 국외자회사 또는

31) 신고된 차명 계좌에서 1,000만 원 이상의 탈루 세금이 확인되면, 계좌 건당 포상액 한도를 기존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

32) 조세포탈 등 조세 범법자에 대한 공소시효를 5년에서 7년으로 강화

33) 국세청 & 한국은행, 『국민계정상 개인영업잉여 및 피용자보수, 자영업자 및 근로자 소득 신고금액』, 2011

34) 2011년도 국감 자료 & 국세청, 『고소득 자영업자 세무조사 결과』, 2011

국외손자회사에게 과세한 법인세 납부세액 중 배당금의 일정 비율을 국내모회사의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

-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는 국외 자회사나 손자회사가 해외 소재지국에서 납부한 세액만큼 모회사가 속한 국내에서 법인세를 공제해 주어 이중과세를 방지하고자 하는 데에 도입 목적이 있음.

▶ 내년부터 새롭게 바뀌는 세법개정안은 법인세로부터의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 요건을 강화해 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을 축소하는 방안을 포함.

- 간접외국납부세액 적용대상 조정안

- 국내모회사가 직접 보유하고 있는 국외자회사에 대한 지분율 요건을 현행 10% 이상에서 25% 이상으로 높여 적용대상을 축소
- 현재는 국외자회사는 물론 국외손자회사³⁵⁾를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대상으로 보고 있으나, 앞으로는 국외손자회사를 적용대상에서 제외시킴.

▶ 강화된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 개정안은 내수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의지로 긍정적인 측면을 갖지만, 해외시장 개척·진출 및 수출 확대가 위축될 수 있다는 부정적인 측면도 동시에 내재하고 있음.

- 기업들의 국내 투자 확대를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개정안의 장점이 있음.
- 반면, 국내 경기 침체로 기업들의 해외 매출 비중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해외 사업을 통해 벌어들이는 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는 해외 진출 기업들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단점이 있음.
- 또한 일각에서는 국내 기업들이 해외에서 거둔 이익을 국내로 가져오지 않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음.
 - 해외에서 벌어들인 이익을 국내로 많이 들여와 투자 등에 사용하는 기업일수록 불이익을 받게 되는 만큼, 기업들이 해외 이익을 현지에 남겨두는 현상이 심화될 가능성

▶ 보다 자세히,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 개정안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을 살펴보면 다음의 세 가지로 나누어 고려해 볼 수 있음.

35) 제도 정비 전의 현행 법령에 따르면, 국외손자회사란 국외자회사가 10% 이상 직접 주식을 보유하고 국내 모회사가 10% 이상 간접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를 말함.

-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
적용대상의 강화 방안은
- (1) 국내기업들의 해외시장 개척·진출 촉진요인을 반감시킬 가능성
 - (2) 국내기업들의 '합작투자'를 통한 해외시장 개척·진출 구조를 위축시킬 가능성
 - (3) 국내 시각에서만 바라본 공평과세 추진안

▶ (Issue 1) 간접외국납부세액의 공제 적용대상 조정안은 국내기업들의 해외시장 개척·진출 촉진요인을 반감시킬 가능성³⁶⁾

- 현행 법인세법은 간접외국납부세 공제액 산정 시, 보편적으로 두 가지 경우(*Case ①*, *Case ②*)를 상정하고 있음.
 - *Case ①*: 국외자회사가 있고 국외손자회사는 없는 경우, 또는 국외자회사가 있고 국외손자회사도 있으나 국외자회사가 국외손자회사로부터 배당받지 않는 경우
 - *Case ②*: 국외자회사가 있고 국외손자회사도 있는 경우로 국외자회사가 국외손자회사로부터 배당을 받는 경우
- 이 때 국외손자회사를 공제 적용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Case ①*에 대한 세액공제액 산정식과 *Case ②*에 대한 세액공제액 산정식이 결국 동일해 지는 결과를 초래(하단의 [사례 1] 참조)
 - 세액공제 한도액 산정식에서 국외손자회사와 관련한 항목 소멸에 기인
 - 이에 따라 특정한 사례이긴 하지만 [사례 1]에서는 공제효과가 13.5%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표 6-2] 참조).

[사례 1]

자(子)회사	소득 100만 원	소재지국 법인세율 20%
	모회사 배당금액 60만 원	법인세 납부액 20만 원
손자(孫子)회사	소득 100만 원	소재지국 법인세율 10%
	자회사 배당금액 50만 원	법인세 납부액 10만 원

Case ① 국외자회사가 있고 국외손자회사는 없는 경우, 또는 국외자회사가 있고 국외손자회사도 있으나 국외자회사가 국외손자회사로부터 배당받지 않는 경우

36)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에 따라 모회사 법인세에서 세액공제 되는 한도액 산정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 94조[시행 2014. 7. 22.][대통령령 제25194호, 2014. 2. 21., 일부개정]에 근거하고 있음.

①의 경우 국내모(母)회사의 세액공제 한도액 산정식

$$\text{세액공제 한도액} = \text{국외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 \times \alpha$$

$$\alpha = \frac{\text{국내모(母)회사가 국외자(子)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수입배당금액}}{\text{국외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 - \text{국외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

[표 6-1] ①의 경우 국내모회사의 세액공제 한도액

국내모회사의 세액공제액	비 고
20만 원 × α	(개정안) 국외자회사에 대한 직접 보유株式이 25% 이상을 만족하는 국내모회사에 대해서만 적용됨.
= 20 × 0.75	
= 15만 원	

Case ② 국외자회사가 있고 국외손자회사도 있는 경우로 국외자회사가 국외손자회사로부터 배당을 받는 경우

②의 경우 국내모(母)회사의 세액공제 한도액 산정식

$$\text{세액공제 한도액} = [\text{국외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 + \text{국외자회사의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국외손자회사의 외국 납부세액}(\beta) \times 50\%] \times \alpha$$

$$\alpha = \frac{\text{국내모(母)회사가 국외자(子)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수입배당금액}}{\text{국외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 - \text{국외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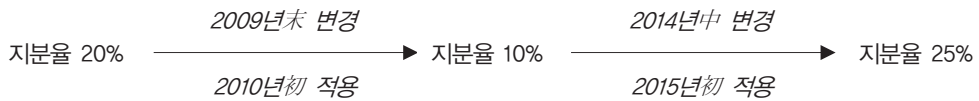
$$\text{국외자회사의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국외손자회사의 외국 납부세액}(\beta) = \text{국외손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 \times \gamma$$

$$\gamma = \frac{\text{국외자회사가 국외손자(孫子)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수입배당금액}}{\text{국외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 - \text{국외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

[표 6-2] ②의 경우 국내모회사의 세액공제 한도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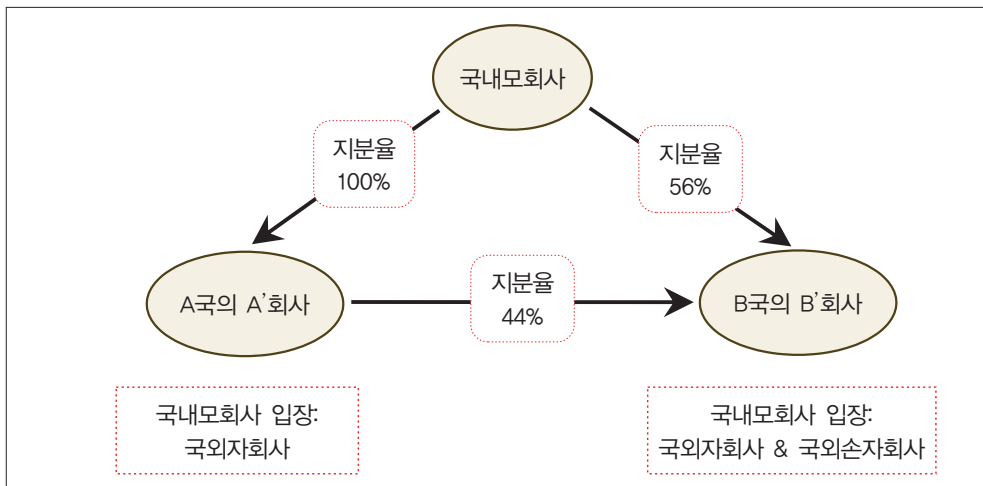
국내모회사의 세액공제액		비 고
현행	개정안	
$[20\text{만 원} + \beta \times 0.5] \times \alpha$ $[20 + 6.25 \times 0.5] \times 0.75$ $= 17\text{만 } 3,400\text{원}$	$20\text{만 원} \times \alpha$ $= 20 \times 0.75$ $= 15\text{만 원}$	국외손자회사의 공제대상 제외 → β 항목 소멸 → 세액공제 규모 축소 동시에, ① 결과와 동일해짐.

- 산정식 ①에 기반한 세액공제마저도, 국내모회사가 25% 이상 직접 지분을 가지고 있는 국외자회사에 대해서만 적용되도록 요건을 강화해 국내기업들의 해외시장 개척·진출 촉진요인이 감퇴
- 또한 어떠한 연유에서 지분율 기준을 급작스레 25%로 상향 조정하는 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부족하여 논란의 여지가 있음.



- ▶ (Issue 2) 간접외국납부세액의 공제 적용대상 조정안은 국내기업들의 ‘합작투자’를 통한 해외시장 개척·진출 구조를 위축시킬 가능성

[사례 2]



- B'회사는 국내모회사의 국외자회사이자, 또 다른 국외자회사 A'와 합작투자한 국내 모회사의 국외손자회사이기도 함.

- 세법개정안대로 국외손자회사를 공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면, 합작투자를 가로막는 것은 아니지만, 합작투자에 대한 이점(merit)이 줄어들어 현지 또는 근접 지역권의 경기 동향 및 경영 여건에 익숙해 시장 선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국외자회사와의 합작투자가 위축될 우려

- 현재 국내모회사의 통상적인 해외 합작투자의 형태는 국외자회사를 두고 그 밑에 세부 사업 분야별로 여러 손자회사를 두어 이를 통해 해외 사업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구조
- 손자회사에 대한 세액공제를 폐지하면 해외 경영 구조를 수정해야 하기 때문에 기업경영 상에 어려움이 나타날 수 있음.

- 이러한 연유로, 해외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당수 기업은 경쟁력 약화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음.

▶ (Issue 3) 간접외국납부세액의 공제 적용대상 조정안은 국내 시각에서만 바라본 공평과세 추진안

- 미국과 일본도 기업의 해외진출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해외진출 기업이 소재지국에서 발생시킨 소득에 대하여 이중으로 과세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세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 미국이나 일본도 우리나라와 공통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나 국외손자회사를 공제 적용대상으로 유지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제외토록 세법 개정을 추진([표 6-3] 참조)

- 게다가, 일본의 경우 배당소득에 대해서 과세 자체를 면제해 주고 있어 이중과세 방지 효과가 3국 중 가장 큰 상황([표 6-4] 참조)

- 국내 시각에선 국외손자회사의 공제 적용대상 제외가 내국법인의 국내투자와 해외 투자 간의 과세형평을 위한 공평과세 조치일 수 있지만, 국제적 시각에서 보면 공평과세가 성립되지 않아 도리어 우리 기업에게 불리한 환경을 초래

- 이는 결과적으로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큼.

[표 6-3] 한국·미국·일본의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대상 자회사 범위 비교

	한국	미국	일본
범위	자회사	자회사, 손자회사, 증손회사	자회사, 손자회사
적용 요건	• 자회사 요건: 25% 이상 지분율 • 손자회사 제외 (2015. 1. 1. 시행 예정)	• 자회사 요건: 10% 이상 지분율 • 손자회사 이하의 요건: 지분율 5% 이상을 간접 소유	• 자회사 요건: 25% 이상 지분율 • 손자회사 요건: ①, ② 중 택일 ① 국외자회사가 국외손자회사의 지분 25% 이상을 보유 ② 내국법인 모회사가 국외손자회사 지분의 25% 이상을 국외자회사를 통해 간접 소유

자료: 정재호·구자은·송은주(2009), 「미국·일본의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과세제도 현황 및 시사점」, 세법연구 09-06, 한국조세연구원

[표 6-4] 한국·미국·일본의 외국납부세액 이중과세 방지 방법 비교

	한국	미국	일본
사업소득	세액공제	세액공제	세액공제
배당소득	세액공제	세액공제	과세면제방식

자료: 정재호·구자은·송은주(2009), 「미국·일본의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과세제도 현황 및 시사점」, 세법연구 09-06, 한국조세연구원

4. 개선 방향

- ▶ 일몰이 도래할 경우 비과세·감면 제도를 과감히 종료하여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라는 세제개편의 기본 원칙을 충실히 지향해 나갈 필요
- ▶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 역시 일몰 도래 시 종료되는 것으로 이미 약속되어 있는 만큼, 일몰 전 이를 개정해 기업들의 해외시장 개척 및 진출 촉진요인을 도리어 위축시키고 기업전략에 혼선을 초래하는 우(愚)는 피해야 할 것임.
 - 일몰 도래 시 과감히 종료시킬 것을 전제로 현재의 해외 합작투자 촉진 환경을 유지토록 하여, 기업 투자 증진과 경제활성화의 또 다른 방편이 내수 진작을 이유로 도외시 되는 착오를 방지해야 함.
- ▶ 공제 규모를 줄이는 것이 해외투자를 감소시키고 그만큼 국내투자를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는 지에 대한 면밀한 분석은 세법개정 전 선행되어야 할 중요한 수순임.

- ▶ 또한 국외자회사에 대한 국내모회사의 지분율 기준이 25%로 강화된 데에 대한 충분한 근거 제시와 이에 대한 기업들과의 공감대 형성이 세법개정에 앞서 우선 시 되어야 할 것임.
- ▶ 외국정부의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 운영방식을 고려했을 때 이들 국가 기업들의 경쟁상대인 우리나라 기업들이 세법개정으로 인해 오히려 상대적으로 경쟁력을 잃게 되므로 이를 감안한 세법개정안 마련이 필요
 - 현재 미국 및 일본 등 외국정부에서는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대상으로 여전히 국외손자회사를 포함시키고 있음.
 - 미국은 국외증손회사까지 공제 대상임.
 - 일본의 경우, 외국납부세액에 따른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과세 자체를 면제해 주는 방식도 채택하고 있음.

[참고자료]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의 개정에 따른 예상 변화

(단위: 개사)

시가 총액 순위	국내모회사	현 황			세법개정 後 변화	
		국외자회사		국외 손자회사	국외자회사 (10%→25%)	국외손자회사 (전체 공제적용 제외)
		지분율 10% 이상	지분율 25% 이상			
1	삼성전자	56	56	49	0	49
2	현대자동차	28	28	0	0	0
4	현대모비스	23	21	0	2	0
7	네이버	3	3	4	0	4
8	기아자동차	9	9	0	0	0
11	삼성생명보험	7	7	0	0	0
12	LG화학	14	14	0	0	0
15	삼성화재해상보험	7	7	0	0	0
17	엘지디스플레이	19	18	1	1	1
19	하나금융지주	1	1	2	0	2
20	삼성물산	68	67	41	1	41
22	현대중공업	30	28	7	2	7
23	현대글로비스	11	11	8	0	8
24	삼성SDI	13	12	4	1	4
32	고려아연	6	6	2	0	2

시가 총액 순위	국내모회사	현 황			세법개정 後 변화	
		국외자회사		국외 손자회사	국외자회사 (10%→25%)	국외손자회사 (전체 공제적용 제외)
		지분율 10% 이상	지분율 25% 이상			
34	LG생활건강	9	9	0	0	0
39	한국타이어	17	17	10	0	10
41	KCC	10	10	6	0	6
42	삼성중공업	13	13	2	0	2
43	S-Oil	1	1	0	0	0
45	한화생명보험	3	3	0	0	0
46	오리온	7	7	7	0	7
48	한국가스공사	19	19	6	0	6
49	한라비스테온공조	33	33	0	0	0
52	CJ제일제당	33	33	21	0	21
53	CJ	1	1	0	0	0
54	호텔신라	7	7	1	0	1
55	삼성전기	16	16	2	0	2
59	대우인터내셔널	24	24	2	0	2
63	삼성증권	3	3	0	0	0
64	대우증권	3	3	0	0	0
66	한국항공우주산업	1	1	0	0	0
69	CJ대한통운	18	18	3	0	3
71	대림산업	6	6	0	0	0
74	한화케미칼	5	5	3	0	3
75	에스원	2	2	0	0	0
80	GS 건설	14	14	0	0	0
81	삼성엔지니어링	22	22	2	0	2
85	영풍	1	1	0	0	0
87	한국투자금융지주	3	3	0	0	0
89	제일기획	22	22	9	0	9
90	한샘	2	2	0	0	0
92	삼성테크윈	6	6	0	0	0
93	현대미포조선	1	1	0	0	0
95	만도	9	9	1	0	1
96	우리투자증권	11	11	0	0	0
98	DGB금융지주	0	0	0	0	0

시가 총액 순위	국내모회사	현 황			세법개정 後 변화	
		국외자회사		국외 손자회사	국외자회사 (10%→25%)	국외손자회사 (전체 공제적용 제외)
		지분율 10% 이상	지분율 25% 이상			
99	맥쿼리인프라	-	-	-	-	-
100	현대홈쇼핑	0	0	0	0	0
합계	총 49개 국내모회사	617	610	190 (193)	7	190 (193)

주: 1) 한국유가증권시장(KOSPI)에 상장된 2014 8. 7일 기준 시가총액 100대 기업을 대상. 국외자회사 및 국외손자회사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51개사)를 제외하고 남은 총 49개사를 조사한 예상 결과이며, 아래의 [주 2] 및 [주 3]에서와 같은 산정 기준을 따르고 있어 계측치들이 임의적일 수 있음에 유의

2) 국외자회사이면서 국외손자회사로 볼 수 있는 법인은 국외자회사로 산정하였음.

3) () 안은 모기업의 서로 다른 국외자회사들이 공동 출자하여 모기업 국외손자회사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 각각의 국외자회사들이 개별 보유 지분에 맞춰 외국정부에 세금납부를 하고 있음을 고려해 모기업 국외손자회사의 개수를 세법개정으로 영향 받게 될 국외자회사의 개수와 동일하게 중복 산정한 수치임.

4) 기업들의 활동영역이 글로벌화 되면서, 2012년 기준 650개 법인이 공제를 신청해 총 2조 4,415억 원의 간접외국납 부세액공제를 받은 것으로 집계되고 있음(조세일보, 2014. 8. 6일자).

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정기사업보고서(2013. 12. 31일)

제7장 세제 합리화

1. 배경설명

- ▶ 지난 8월 6일 기획재정부(2014a)가 발표한 ‘2014년 세법개정안’은 (1) 경제활성화, (2) 민생안정, (3) 공평과세, 그리고 (4) 세제합리화라는 네 가지 목표를 설정
 - 다수의 전문가들은 경제활성화를 위해 도입되는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를 핵심사항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따라서 대다수의 평가 또한 경제활성화에 집중(한국 재정학회, 2014)
 - 근로소득 증대세제, 배당소득 증대세제, 그리고 기업소득 환류세제로 구성되어 있는 가계소득 증대세제는 향후 3년간 한시적으로 도입되는 제도로 경제활성화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점이 제기
 - 소비 진작을 위한 가처분소득의 증대가 목적이거나 특정 가계층으로만 자금이 유입되어 유효수요, 즉 구매활동을 동반하는 실수요의 창출로 이어질지 의문
 - 가계소득 증대세제는 기본적으로 기업소득의 사용을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조치이며 기업이 당면한 경영환경 하에서 선택 가능한 옵션을 제한해 오히려 비효율적 경제활동을 유도할 가능성
 - 미래의 경제적 불확실성 해소라는 근본적 문제의 해결 없이 소득주체의 변경만으로 투자나 소비가 활성화되는 경제 선순환 효과는 무리한 기대로 평가
- ▶ 다른 세 가지 목표를 위해 발표된 개정안들은 지난해 발표된 세법개정안의 ‘원칙에 입각한 세제의 정상화’라는 방향성의 유지(기획재정부, 2013b)
 - 과세 기반의 확대를 통한 조세부담 및 조세구조의 정상화라는 박근혜 정부의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에 충실하려는 노력으로 평가(기획재정부, 2013a)
 - 박근혜 정부의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은 과세 사각지대 해소를 통해 세원확충의 폭을 넓히고 적정수준의 조세부담구조로 전환해 시장친화적 조세체계의 확립
 - 금번 발표된 세법개정안의 공평과세와 세제합리화가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과 일치

하는 목표이며 조세저항은 줄이고 조세 순응도는 높이는 구조적 개선 및 합리화 여부가 평가의 기준

2. 총평

▶ 공평과세와 더불어 원칙에 입각한 세제의 정상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세제합리화 부분은 총 5가지의 항목 및 83개의 세부개정안으로 구성(기획재정부, 2014a)

- 5가지 세부항목은 (1) 납세자 권익보호, (2) 납세 협력비용 감축, (3) 세부담 수준 합리화, (4) 제도 명확화, 그리고 (5) 지방세 개정(기획재정부, 2014b)

납세자 권익보호: 국선대리인의 법령화와 경정청구기간의 확대

- 국세청 지침으로 주선되던 무보수 세무대리인 제도를 법규화시켜 영세납세자가 불법 청구한 경우 무보수 세무대리인을 국세청장이 선정
- 경정청구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해 부과제척기간과 일치시키며 납부기한 연장사유(세무대리인의 재해사유)의 추가 및 근로장려금 신청기한(3→6개월)의 연장

납세 협력비용 감축: 신용카드 국세 납부한도 폐지 및 신고 납부절차의 간소화

- 신용카드의 1,000만 원 국세 및 관세 납부한도를 폐지하고 임대사업자의 과세특례 신청 시 임대조건신고와 주택임대신고를 통합
- 복식부기 의무자의 사업용 계좌 신고기간(5→6개월)과 감가상각방법 변경 제출기한(종료일 이전 3월→종료일)의 연장

세부담 수준 합리화: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및 납세협력 수준에 따른 가산세 차등화

- 비사업용 토지 양도 시 부과되는 10%의 추가과세를 1년간 유예하고 적격합병을 추가 과세 제외대상에 추가
- 미제출된 이자·배당소득의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 후 3개월 내 제출 시 2%의 가산세를 1%로 경감

제도 명확화: 양도소득 세액계산 특혜 보완 및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 적용대상 추가

- 둘 이상의 양도소득세율이 동시에 적용되는 자산의 양도에는 높은 세액을, 양도소득세율이 다른 둘 이상의 자산을 양도에는 비교과세를 통해 높은 세액을 적용
 $\max(\text{동일세율 자산별 소득금액 합산 후 세액 계산, 순 자산 양도소득 합계액에 기본세율})$

- 간접투자회사의 외국납부세액공제(외부납부세액을 법인세액에서 원천징수세율 한도내 공제) 특례 적용대상에 투자조합, 투자익명조합, 사모투자전문회사를 포함.

지방세: 각종 감면규정의 조정과 적용기간 연장 및 지방세 감면 상한제도 도입

- 합병·분할에 의한 등록면허세와 기업 재무구조에 의한 취득세에 대한 면제 및 창업기업의 재산세의 감면을 세목이 아닌 주제별로 조정하여 적용기한을 연장
- 부동산의 취득세와 재산세의 감면을 적용할 시 개별 조항의 면제 규정과 상관없이 해당 세목의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을 적용

▶ 2014년 세법개정안의 세제합리화 부분은 총론적으로 조세저항의 감소와 조세순응도의 확대를 위한 조세제도의 구조적 개선과 합리화에 대한 기여도가 불명확

- 박근혜 정부가 공표하였던 원칙에 입각한 세제의 도입보다는 일몰예정된 제도의 연장, 가산세 차등화, 그리고 감면제도의 축소에 집중
- 감면제도의 일몰기간 연장보다는 원칙적인 검토 하에 근본·항구적 감면의 추진과 환급을 위한 경정청구 등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키는 개정안 마련이 올바른 방향
- 납세자 권익보호의 경우 무보수 세무대리인제도는 법령화와 상관없이 국세청 내부 지침으로 이미 시행중이며 경정청구기간 등의 연장보다는 부실과세 자체에 대한 개정보수가 필요
 - 지난해 경정청구 등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이 3조 원, 환급가산금이 3천억 원이었으며 부실과세로 인한 납세자의 조세 불복이 최근 급격히 증가(박진석, 2014)
- 납세 협력비용의 경우 신용카드 납부한도의 폐지 등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가능하나 가계소득 증대세제와 같은 다른 목적을 위한 개정안은 납세 협력비용의 상승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
 - 기업소득 환류세제 등을 통한 과세방식이 어떻게 적용될지 너무나 복잡하게 구성이 되어있으며 체크카드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신설조항은 산식이 너무나 복잡
- 세부담 수준 합리화의 경우 비사업용 토지 및 법인보유 토지에 대한 추가과세 1년 유예는 원칙적 측면에서 재검토해 폐지의 추진이 필요
 - 계속된 유예 및 한시적 감면에 의한 시장의 불확실성 확산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시장의 확실성과 활성화를 동시에 보장하는 부동산 세제가 필요한 시점
- 지방세의 경우 감면규정을 세목이 아닌 주제별로 조정해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한 측면이 있으나 감면자체에 대한 재검토가 아닌 한시적 감면의 연장조치에 불과

- 등록허가세, 취득세 등 감면규정을 1년간 연장하였지만 지방세 감면 상한제도를 도입해 실제로는 개별 조항의 면제규정을 무효화
- ▶ 2014년 세제개정안은 총론적으로 세제합리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에 미흡하며 각론적으로 유예기간의 연장에 머문 토지에 대한 추가과세와 같은 개정안에 대한 근원적 재검토가 필요

3. 각평

부동산 세제 합리화: 세부담 수준 합리화의 일환으로 추진

- ▶ 총평에서 거론된 바와 같이 비사업용 토지, 법인보유 토지 등에 대한 10% 추가과세의 유예를 골자로 해 비사업용 토지 판정 기간기준 및 농지·임야의 재촌요건 완화
 - 비사업용 토지 양도와 법인(i.e., 중소기업)보유 토지의 양도 시 발생하는 추가과세를 1년간 유예하는 기업보유 부동산에 대한 구조조정의 기회를 부여(기획재정부, 2014c)
 - 기업보유 부동산에 대한 추가과세를 유지하며 유예적용의 일몰기간만 연장하기보다는 지난해 다주택 보유 중과세제의 폐지와 같이 원칙적인 제도의 재검토가 올바른 방향
 - 기업의 비사업용 토지 보유여부는 장기적 경영전략의 일부로 결정된 사안으로 추가과세 여부의 불확실성은 상시적 수정이 요구되는 장기적 계획설립의 걸림돌로 작용
 - 추가과세와 감면의 동시 유지는 폐지와 달리 조세압박의 가능성으로 인한 미래의 불확실성을 확장시켜 기업의 투자환경과 부동산 시장에 악영향
- ▶ 산업구조의 변화로 인해 사업용 및 비사업용이라는 기업보유 부동산의 경계가 모호해졌으며 장기적 관점에서 보유 부동산의 관리가 가능하도록 조세정책의 변화가 필요

임대사업자의 과세특례 신청서류 간소화: 납세 협력비용 감축을 위한 신고·납부절차의 간소화의 일환으로 추진

- ▶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세 감면과 준공공임대주택 장기보유 특제공제율 등 과세특례의 적용을 위한 중복 서류제출 문제를 해소해 납세자의 편의를 제공

-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정책과 더불어 임대사업자의 편의를 도모해 주택임대시장의 활성화 및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기획재정부, 2014a)
 - 기존 다세대주택 보유자의 임대사업자 전환을 통한 주택임대시장 활성화 및 양성화를 위해서는 임대소득 노출에 대한 거부감 해소정책도 동시에 추진할 필요
-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임대시장의 활성화 정책은 기업형보다는 개인형 임대사업모델에 치중되어 임대주택의 원활한 공급에 한계적 영향력 발휘
- ▶ 주택임대차시장의 실질적 선진화는 기존 주택 임대사업자를 통한 공급의 활성화만이 아닌 기업보유 주택의 임대시장 진출도 필요
 - 기업보유 비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추가과세가 서민 주거안정에 주는 영향 또한 고려되어야하며 추가과세의 폐지를 통한 기업보유 주택의 임대시장 활용도 정책적 고려 대상

참 고 문 헌

[국내문헌]

- 국세청 & 한국은행, 『국민계정상 개인영업잉여 및 피용자보수, 자영업자 및 근로자 소득 신고 금액』, 2011.
- 국세청 & 2011년도 국감 자료, 『고소득 자영업자 세무조사 결과』, 2011.
- 국회예산정책처, 『2014년 및 중기 경제전망』, 2013.
- 국회예산정책처, 『조세의 이해와 쟁점－통계편』, 국회예산정책처, 2014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 기획재정부, “2013년 세법개정안: 경쟁력을 갖춘 공평하고 원칙이 있는 세제(보도자료 2, 요약본)”,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 2013a.
- 기획재정부,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보도자료 5)”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 2013b.
- 기획재정부, 『2014년 세법개정안』 관련 언론보도 종합 참조.
- 기획재정부, 『2014년 세법개정안』(요약본, 상세본), 기획재정부, 2014.
- 기획재정부,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마감결과”, 보도자료, 기획재정부, 2014
- 기획재정부, “2014년 세법개정안: 경쟁력을 갖춘 공평하고 원칙이 있는 세제(보도자료 1, 요약본)”,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 2014a.
- 기획재정부, “2014년 세법개정안: 경쟁력을 갖춘 공평하고 원칙이 있는 세제(보도자료 2, 상세본)”,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 2014b.
- 기획재정부, “2014년 세법개정안: 문답자료(보도자료 3)”,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 2014c.
- 김승래, “법인세율 인하의 경제주체별 귀착효과 분석”, 2009. 3.
- 김우철, “2014년 세법개정안의 가계소득증대 세제에 대한 분석”, 국가재정연구포럼 주최 토론회, 2014.
- 김우철, “2014년 세법개정안의 가계소득증대 세제에 대한 분석”, 국가재정연구포럼 토론회 자료, 2014. 9.
- 김윤경, “사내유보금 과세제도 도입의 문제점과 정책방향”, 세미나자료, 한국경제연구원, 2014. 7.
- 김재진, “가업승계지원을 위한 상속·증여세 운영방향”, 가업승계지원을 위한 상속·증여세 운영 방향에 관한 공청회, 2014.
- 대한상공회의소, “중소·중견기업 가업승계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건의”, 대한상공회의소, 2014.
- 박진석, “국세청 무리한 징세? ... 작년 돌려준 세금 3조 사상 최고”, 중앙일보, 2014년 8월 20일.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송원근·유진성·허원제·김영신, 『주요국의 상속·증여세 최근 동향 및 시사점』, 정책연구 13-14, 한국경제연구원, 2013.

신영임·강민지, “자영업자의 소득 탈루율 및 탈세규모의 추정”, 『조세의 이해와 쟁점 I: 소득세』, 국회예산정책처, 2014.

원종욱·백혜연·김태은·최요한, 『기초연금 도입과 노후생활 안정 효과 분석』, 연구 2014-0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

임경묵·최용석, “기업의 현금보유 패턴 변화 및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 정책연구, 한국개발연구원, 2006. 12.

전경련, “2014년 세법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건의사항”, 2014. 08.

정승영, “주요국의 가업상속세제의 내용과 시사점”, KERI Brief, 2013.

정재호·구자은·송은주, 『미국·일본의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과세제도 현황 및 시사점』, 세법연구 09-06, 한국조세연구원, 2009.

조경엽, “상속세의 경제적 파급효과 : 세대중복형 모형을 이용한 분석”, 공공경제 제12권 제2호; pp.29-64, 2007.

조경엽·오테연, “경제성장과 법인세의 고용효과”, KERI Insight, KERI 정책제언 12-07, 한국경제연구원, 2012.

조세일보, “[세법개정안 요약] ②민생안정 지원책”, 2014년 8월 6일자.

중소기업중앙회, “가업승계 실태조사 보고서”, 중소기업중앙회, 2013

중소기업청, “2013년 중견기업 현황발표 - 중견기업수 대폭 증가, 경제적 위상도 한층 강화”, 보도자료, 중소기업청, 2013.

최명근, 『상속과세제도의 합리적 개편방안』, 연구 2006-11, 한국경제연구원, 2006.

한국재정학회, “경제활성화를 위한 2015년도 정부세법개정안 라운드테이블”, 한국재정학회, 한반도선진화재단, 2014.

황인태·강선민, “기업의 사내유보와 현금성 자산, 어떻게 볼 것인가”, 대외세미나 자료, 한국경제연구원, 2011. 12.

황인학, “인포그래픽 한국경제 100 - 반세기 한국경제 흐름을 한눈에”, 프리이코노미북스, 2014.

- Djankov, S., T. Ganser, C. McLiesh, R. Ramalho, A. Shleifer, “The Effect of Corporate Taxes on Investment and Entrepreneurship”, *American Economic Journal: Macroeconomics* 2: 31-64, 2010.07.
- Entin, Stephen J., “Economic Impact of the Estate Tax: Effects of Various Possible Reform Options”, *Institute for Research on the Economics of Taxation*, 2009.
- Laffer, Arthur B. and Wayne H. Winegarden, “The Economic Consequences of Tennessee’s Gift and Estate Tax”, The Laffer Center, Beacon Center of Tennessee, 2012.
- Lee, Young and Roger H. Gordon, “Tax Structure and Economic Growth”, *Journal of Public Economics* 89(5-6), 2005. 6, pp.1027-1043.
- OECD, Tax and Economic Growth, OECD, 2008.
- Opler, T., L. Pinkowitz, R. Stulz, and R. Williamson, “The Determinants and Implications of Corporate Cash Holdings”,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52: 3-46, 1999.
- Saxton, Jim, “Costs and Consequence of the Federal Estate Tax,” Joint Economic Committee, United States Congress, 2006.
- Tsoutsoura, Margarita, “The Effect of Succession Taxes on Family Firm Investment: Evidence from a Natural Experiment”, Columbia University, 2012.